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5년 겨울호
Vol. 45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4
(결산보고서(주석) 주요 개정 사항)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재정통계 동향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2025년 겨울호

Vol. 45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45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5년 겨울호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분석팀장(결산분석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440(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6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4
(결산보고서(주석) 주요 개정 사항)
- 20 2025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67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 74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82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83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84 2025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86 2025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재정통계 동향

- 88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96 OECD 사회보장기금 분석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 106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109 202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111 학술장학·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 124 해외 공익법인 사업유형 분류 현황

세미나

- 142 「IFRS 18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세미나
- 144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공지사항

- 165 구독안내
- 165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4(결산보고서(주식) 주요 개정 사항)
- 2025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01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4

(결산보고서(주식) 주요 개정 사항)

가. 시리즈의 구성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2025회계연도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를 맞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총 4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2025년 봄호, 여름호 및 가을호에서 각각 “시리즈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시리즈2: 재무제표 개정 사항” 및 “시리즈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 사항”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각 시리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리즈 1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시리즈 2 : 재무제표 개정 사항

시리즈 3 :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사항

시리즈 4 : 결산보고서(주식) 주요 개정사항

이 중 네 번째 시리즈인 “결산보고서(주식) 주요 개정 사항”에서는 결산보고서(주식) 개정의 핵심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주식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법령 개정 사항, 체계개편으로 인한 서류 통합 현황, 주식 세부 항목 및 신규 생성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개편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회계예규 전문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index.do>)의 발간자료 중 「2025 국가회계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주식체계 개편

국가결산 체계 개편을 통해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정보를 주식으로 통합 및 단일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그동안 재무제표의 설명자료로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이 작성되고 있었으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전체 계정에 대한 설명 또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세부 정보를 주식에 포함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

1) 법령 개정사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와 관련한 조문이 2024년 7월 31일 <표 1>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54조(필수보충정보) 및 제56조(부속명세서) 조문이 삭제되고 제55조(주식)의 조문 내용이 변경되었다.

구 조문상에서는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개정을 통해 주식으로 통합하면서 주식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포괄식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주식 공시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발간하는 ‘결산작성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구 조문>	<신 조문>
<p>제54조(필수보충정보)</p> <p>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p> <p>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2. 연금보고서3. 보험보고서4. 사회보험보고서5. 국세징수활동표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p>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4조 삭제 <2024. 7. 31.></p>

표 1 의 계속

〈구 조문〉	〈신 조문〉
<p>제55조(주식)</p> <p>①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p> <p>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 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주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p>제55조(주식)</p> <p>①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p> <p>② 주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24. 7.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p>③ 주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p>
<p>제56조(부속명세서)</p> <p>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6조 삭제 <2024. 7. 31.></p>

2) 주식, 부속명세서 및 필수보충정보의 통합 현황

체계 개편 이전 주식, 부속명세서 및 필수보충정보의 개수 및 종류, 그리고 해당 항목들의 체계 개편 이후 주식에의 통합 현황은 <표 2>와 같다. 기존에 공시하던 항목은 체계 개편 이후에도 모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편 전에 상대적으로 주식 공시가 되지 않고 있었던 재정운영표 항목도 다수 포함하였다.

표 2 주석, 부속명세서 및 필수보충정보의 통합 현황

개편 전	개편 후 항목	개편 후
[주석 8종]		[주석 24종]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5	2. 금융자산
3. 장기충당부채	6	3. 유·무형자산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0	4. 기타자산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1	5. 차입부채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19	6. 충당부채
7. 순자산조정명세	18	7. 기타부채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3, 4, 5, 6, 7, 23	8. 사회보장성기금
[부속명세서 13종]		9. 연금사업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10.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 금융상품명세서	2	11. 국세수익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2	12. 이전수익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2	13. 국가운영수익
5. 미수채권명세서	2	14. 이전비용
6. 대여금명세서	2	15. 국가운영비용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3	16. 프로그램별 재정운영 명세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3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9. 무형자산명세서	3	18. 순자산조정명세
10. 국채및공채명세서	5	19.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
11. 차입금명세서	5	20. 현금흐름
12. 출연비명세서	14	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2. 회계별 재무정보
[필수보충정보 8종]		2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3	24.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2. 연금보고서	24	
3. 보험보고서	24	
4. 사회보험보고서	24	
5. 국세징수활동표	11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삭제 ¹⁾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삭제 ²⁾	
8.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3	

주: 1) 발생주의 도입 당시 현금흐름표의 보완적 정보로 작성, 개편 후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결산담당자 작성 부담 예상되어 삭제

2) 재무제표 구성 서류 중 한 종류로 변경(성질별 재정운영표)

3) 주식 세부 항목

체계 개편에 따른 주식의 항목별 세부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식 세부 항목

항목	세부 항목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1-1. 국가회계실체
	1-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1-3. 재무제표 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2. 금융자산	2-1. 현금및현금성자산
	2-2. 금융상품
	2-3. 투자증권
	2-4. 정부출자금
	2-5. 대여금
	2-6. 미수채권
	2-7. 기타금융자산
3. 유·무형자산	3-1. 일반유형자산
	3-2. 사회기반시설
	3-3. 자산재평가
	3-4. 무형자산
	3-5. 유산자산
4. 기타자산	
5. 차입부채	5-1. 국채
	5-2. 차입금
	5-3. 국고채무부담행위액
	5-4. 기타차입부채
6. 총당부채	6-1. 연금총당부채
	6-2. 퇴직수당총당부채
	6-3. 보증총당부채
	6-4. 보험총당부채
	6-5. 기타총당부채
7. 기타부채	7-1. 사회보험부채
8. 사회보장성기금	
9. 연금사업	
10.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11. 국세수익	
12. 이전수익	12-1. 사회보험수익
	12-2. 부담금수익
	12-3. 제재금수익
	12-4. 기타이전수익

표 3 의 계속

항목	세부 항목
13. 국가운영수익	13-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2. 연금수익
	13-3. 이자수익
	13-4. 배당수익
	13-5. 자산처분이익
	13-6. 자산평가이익
	13-7. 기타국가운영수익
14. 이전비용	14-1. 국고보조사업비
	14-2. 출연사업비
	14-3. 사회보험비용
	14-4. 지방교부금
	14-5. 기타이전비용
15. 국가운영비용	15-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15-2. 연금비용
	15-3. 인건비
	15-4. 이자비용
	15-5. 운영비
	15-6. 감가상각비
	15-7. 자산평가손실
	15-8. 기타국가운영비용
16. 프로그램별 재정운영 명세	16-1. 프로그램순원가
	16-2. 관리운영비
	16-3.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18. 순자산조정명세	
19.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20. 현금흐름	20-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21-1. 지급보증
	21-2. 중요한 계약사항
	21-3.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21-4.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21-5.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21-6.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21-7. 담보제공자산
	21-8. 계류 중인 소송사건

표 3 의 계속

항목	세부 항목
22. 회계별 재무정보	22-1. 회계별 재무정보
	22-2.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22-3. 내부거래
2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3-1. 정부조직개편
	23-2. 세입세출외거래
	23-3. 기타사항
24. 연금·보험·사회보험보고서	24-1. 연금보고서
	24-2. 보험보고서
	24-3. 사회보험보고서

4) 주요 신규 생성 항목

기재된 주석의 세부 항목 중 체계개편 이후 새로 생성된 주석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1. 국가회계실체

기본 정보로 해당 중앙부처의 국가회계실체 구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1-1. 국가회계실체

예) 00부의 국가회계실체는 일반회계, xx특별회계, xx기금, 00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1-3. 재무제표 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국가결산 체계 개편에 따른 재무제표 및 구성서류의 변화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3. 재무제표 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

예) 발생주의 도입 이후 결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 등으로 일반국민 등 수요자의 이해가능성이 떨어졌으며,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국가재정운용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의 분석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단계로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차입부채, 총당부채로 신설하고,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적은 유동성분류 방식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수익·비용의 각각의 세부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추가하고 복잡한 수익·비용 분류를 간소화하면서 유용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세입·세출결산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였던 현금에 대한 정보 중 활동별 현금흐름을 볼 수 있는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금흐름표는 국가활동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각 활동별 상세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로 재정활동별 현금흐름의 질(質)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다원화되어 있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기존 결산보고서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계정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담아 이해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③ 16. 프로그램별 재정운영 명세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그리고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16-1.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분류 체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단위사업)의 중간 단계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반영하여 원가 정보를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원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순원가(원)	주요 내역

〈주요내역〉

1. 회계실체의 프로그램 중 금액,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표를 작성하고 주요내역 서술
2. 프로그램순원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

16-2.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프로그램의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합니다. 관리운영비의 성질별 상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운영비 명세〉

(단위: 원)

구분	회계과목	금액		증감	
		당기	전기	금액	증감률(%)
	합계				
관리운영비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기타이전비용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기타국가운영비용				

16-3.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을 말합니다. 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의 성질별 상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배분비용 명세〉

(단위: 원)

구분	회계과목	금액		증감	
		당기	전기	금액	증감률(%)
	합계				
비배분비용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기타이전비용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기타국가운영비용				

〈비배분수익 명세〉

(단위: 원)

구분	회계과목	금액		증감	
		당기	전기	금액	증감률(%)
	합계				
비배분수익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					

④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주석에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의 성질별 구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7.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

(단위: 원)

	당기		전기	
		XXX		XXX
I. 프로그램총원가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사회보험비용	XXX		XXX	
4. ...				
II. 프로그램수익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XXX		XXX	
2. 연금수익	XXX		XXX	
3. 이자수익	XXX		XXX	
4. ...	XXX		XXX	
III. 관리운영비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	XXX		XXX	
IV. 비배분비용		XXX		XXX
1. 국고보조사업비	XXX		XXX	
2. 출연사업비	XXX		XXX	
3. ...	XXX		XXX	
V. 비배분수익		XXX		XXX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XXX		XXX	
2. 연금수익	XXX		XXX	
3. ...	XXX		XXX	
VI.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V)		XXX		XXX
VII. 비교환수익 등		XXX		XXX
1. 국세수익				
2. 사회보험수익	XXX		XXX	
3. 부담금수익	XXX		XXX	
4. ...	XXX		XXX	
VIII. 재정운영결과 (VI - VII)		XXX		XXX

< 주요내역 >

1.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는 해당 결산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원가의 성질별 구분에 따른 금액정보를 보여줌
2. 프로그램별 세부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총원가와 프로그램수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을 성질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각 항목(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의 합계액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동일

⑤ 20. 현금흐름

결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재무제표 구성 서류 중 현금흐름표가 도입됨에 따라 주석에 현금흐름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⑥ 22. 회계별 재무정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에서 국가회계실체에 대해 각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주석을 신설하였다. 또한 통합 시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석도 추가하였다.

22-1. 회계별 재무정보

국가를 구성하는 회계실체는 「국가재정법」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정부관리기금)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공공기관관리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국고금회계로 이전하지 않고 각각의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와 국고금회계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회계를 구분한 회계별 재무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별 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공공기관관리기금	
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비용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						
자산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부채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순자산						

〈 주요내역 〉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금액은 기업특별회계 열에 기재
2.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으로 기재
3. 합계 금액은 재정운영표 및 재정상태표의 각 항목과 동일

22-3. 내부거래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 시 소관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비용 및 상호 보유한 채권·채무를 제거함으로써 수익·비용의 중복 표시 및 자산·부채의 과대 표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내부거래 제거의 경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상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의 거래는 내부거래 제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산, 부채 내부거래 제거내역〉

(단위: 원)

자산	금액	부채	금액
합계		합계	
정부내예탁금		정부내예수금	
미수대여금이자수익		미지급이자비용	
기타의선급비용		기타의선수수익	
미수기타이자수익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수금		기타의미지급비용	
기타		연금미지급금	
		기타	

수익·비용의 내부거래 제거의 경우 중앙관서 내 국가회계실체 간 거래를 통해 수익·비용을 인식한 경우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합니다.

〈수익, 비용 내부거래 제거내역〉

(단위: 원)

비용	금액	수익	금액
합계		합계	
정부내자산기부		정부내자산수증	
기타의기타이전비용		기타의기타이전수익	
공무원연금부담비		공무원연금수익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입금	
출연금의감소		출연금의증가	
기타		기타	

02 2025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5. 9. 6.(토) ~ 2025. 9. 14.(일) (7박 9일)

출 장 지: 리스본, 포르투갈

출 장 자: 임정혁 특수전문직2급, 안지현 특수전문직3급



2025년 IPSASB 정례회의(2025. 9., 리스본)

나. 주요 내용

1)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는 공공부문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이하 GPFS)를 작성할 때 적용할 명확한 중요성 판단 기준이 부재하여 불충분한 정보가 공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IPSASB는 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을 목표로,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프로젝트를 다음 3단계 접근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단계별 접근방식

단계	접근방식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성 판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IPSAS 재무보고 지침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정(ED 93)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에서의 중요성: "IFRS 실무 지침서 2, 중요성 판단"과 부합하는 비강제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의 개발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 IPSASB SRS(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지침 개발

IPSASB는 프로젝트 제1단계의 추진 결과로 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개발하고 2025년 3월에 이를 승인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해서 2025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60일간의 공개 자문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으며, IPSAS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30개의 의견서를 받았다.

이번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Staff는 ED 93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동의(Agree), 부분 동의(Partially agree), 반대(Disagree)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IPSASB에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2 ED 93 파트별 Staff 제안사항

ED 93 제안사항	Staff 제안사항 및 근거
① Part 1: 개념체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이용자(users)'와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는 대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지만,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개념체계의 관련 각주 및 결론도출근거를 수정할 것을 제안 (근거) 대다수 응답자가 개념체계 문단 2.4에 대한 각주 추가에 찬성하였으며,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모든 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두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판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② Part 2: IPSAS 1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개념체계와 정합시키는 개정안 제안 (근거) 해당 제안은 중요성 정의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프로젝트 목적과 일치함
③ Part 3: IPSAS 3의 중요성 설명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유도하는 문구로, IPSAS 3의 중요성 설명을 대체하는 개정안을 제안 (근거) 해당 제안은 IPSAS 기준 내 중요성 정의의 정합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일치함

표 2 의 계속

ED 93 제안사항	Staff 제안사항 및 근거
<p>④ Part 4: IPSAS 20의 중요성 정의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의 문단 22의 중요성 정의를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 (근거) 상기 ②번 Part 2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 개정(consequential amendments)이며, 해당 제안은 IPSAS 기준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일치함

회의 결과 IPSASB는 최종 공표문,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승인하고, 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였다. 또한 최종 공표문의 Part 1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체계 개정사항은 2025년 4분기로 예정된 당해 공표문의 발행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표 3 중요성 정의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ED 93 응답 검토를 위한 Staff 절차(논의 목적)
	<p>[목적] Staff가 공개초안(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의 요약을 IPSASB에 제공하기 위함임</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2025년 5월 15일 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발행하였음. ED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의 주요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함 (b) 중요성 지침을 IPSAS 기준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실체의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정합되도록 함 본 문서는 ED 93에서 제안된 IPSAS 1 - 재무제표 표시, IPSAS 3 -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그에 따른 기타 IPSAS 기준 개정(ED 93 Part 4), 그리고 개념체계 개정안에 대한 피드백을 Staff가 분석하기 위해 따랐던 절차의 요약을 IPSASB에 제공함
	<p>[Staff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¹⁾를 사용하여 각 의견서를 검토·분석하였음. Staff는 각 의견서에서 ED 93의 각 부분과 관련된 의견과 이슈를 식별하였음. 의견들은 그 자체의 타당성(own merit)에 따라 고려하였음 Staff는 응답을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논리를 적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동의(Agree) — 응답이 ED 93 제안에 명확히 동의하는 경우로, 추가 제안 없이 동의하거나 ED 93 제안을 지지하는 추가 근거를 제공한 경우임. 또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사소한 편집상의 변경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됨 (b) 부분 동의(Partially agree) — 응답이 ED 93 제안에 동의하면서 제안된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경우임. 이는 설명 명확화, 초안 변경, 제안된 원칙을 지원하는 추가 지침 제시, 또는 제안된 원칙의 맥락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침의 삭제 제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c) 반대(Disagree) — 응답이 ED 93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임. 응답자가 개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는 부분 동의 응답과 함께 고려됨. 또한 제안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제안된 원칙에 실질적인 변경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됨 (d) 의견 없음(No comment) — 응답이 단순 편집상의 의견만 제시하거나 ED 93 특정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경우임 검토의 두 번째 단계는 응답에서 주요 주제와 이슈를 식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IPSASB가 응답자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Staff 제안을 마련함 ED 93에 대한 세부 응답 정보는 안건 5.3.1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부록 A: 지역, 기능, 언어별 응답자 분석 (b) 부록 B: 응답자 목록 (c) 부록 C: ED 93 응답 요약
5.2.1	

1) 상세한 NVivo 보고서는 IPSASB 위원이 요청할 경우 제공됨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응답서 모음은 IPSAS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p>응답 요약 및 향후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ED 93에 대한 응답을 요약하고, IPSASB가 응답자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제안하였음(안건 5.2.2부터 안건 5.2.6 참조). Staff가 요약한 사항 외에도 IPSASB 위원에게 응답자가 제기한 그 밖의 사안 중 IPSASB가 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함 • 안건 5.2.7은 최종 공표문 초안인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개발 과정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 준수를 위한 IPSASB의 활동을 요약한 것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요구사항 없음
	ED 93 Part 1에 대한 응답 검토
	<p>[목적]</p> <p>IPSASB가 Staff가 제안한 수정된 각주의 내용을 전제로 ED 93 Part 1에서 제안하는 개념체계 개정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지?</p> <hr/>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93 Part 1에서 제안하는 대로 개념체계 문단 3.32에서 ‘이용자(users)’ 앞에 ‘주요(primary)’를 추가할 것 (b) 개념체계 문단 2.4에 대한 각주의 내용을 ‘이용자’와 ‘주요 이용자’가 주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지만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 <p>[배경]</p> <p>5.2.2 • ED 93 Part 1에서는 다음을 제안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에 관한 결정은 모든 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것. 이를 위해 IPSASB는 개념체계 문단 3.32에서 ‘이용자(users)’ 앞에 ‘주요(primary)’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음 (b) 개념체계 문단 2.4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추가할 것: <p>“개념체계 전반에서 ‘주요 이용자’ 및 ‘이용자’라는 용어는 필요한 재무정보의 상당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서비스 수혜자 및 그 대표자, 그리고 자원 제공자 및 그 대표자를 의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3에서는 별도의 의견 요청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음 <p>[분석]</p> <p>응답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았음:²⁾

2) 다음 응답자가 제안을 지지하였음: R01, R02, R05, R06, R10, R13, R15, R19, R20, R21, R22, R23, R24, R26, R27, R28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의 분석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b) 별도의 세부 설명 없이 동의함 (c) 추가 지침을 요청함(안건 5.2.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았음: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 설명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중요성 설명에 '조작(manipulating)'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R03) (ii) IPSASB가 한정 범위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 이용자'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개념체계 문단 2.3~2.6을 재작성할 것을 제안함(R04) (iii) 중요성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실체의 회계책임 이행(discharging accountability by entities)'의 초점을 좁혀, 그 뒤에 '주요 이용자에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R07, R11) (iv) 중요성 기준의 완화("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는 주관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함(R16) (v)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의 초점을 특정 집단의 정보 요구에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모든 이용자의 공통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함(R25) (b) 각주의 추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각주의 핵심 메시지를 개념체계 문단 2.4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함(R08) (ii) 개념체계 문단 2.4에 각주를 삽입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라는 용어마다 '주요'를 수식어로 붙일 것을 제안함(R07, R09, R14, R29, R30). (c) 추가 지침 개발을 요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주요 이용자' 관련 새로운 명확화는 현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IPSASB가 프로젝트 2단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R12) (ii) GPFRs의 '주요 이용자'는 상황과 관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우려를 제기함(R17) • 일부 응답자는 제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GPFRs의 주요 이용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R18)(안건 5.2.6 참조) • Staff는 ED 93 Part 1 제안에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한 응답자를 고려 및 평가하였음(부록 A, 부록 B 참조). 이 과정에서 다음을 언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 설명의 수정: IPSASB가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⁴⁾를 시작할 때, 중요성 설명이 ED 81(개념체계 개정 제안)에서 이미 자문되었고, 해당 제안⁵⁾은 강력하게 지지되어 2023년 10월에 개정된 개념체계가 발간되었음. 또한 IPSASB는 중요성 설명에 대한 제한적 수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ED 93 Part 1 제안의 목적은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모든 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수정이나 개념체계의 다른 문단 개정은 본 프로젝트의 범위 밖임

- 3) 이들 대부분의 응답자는 개념체계 문단 3.32의 중요성 정의에서 '이용자(users)' 앞에 '주요(primary)'를 추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음
- 4) 프로젝트 개요의 문단 5.1은 프로젝트의 작업 범위를 설명함
- 5) 제안: '정보의 누락 혹은 오기재' 외에 '불분명한 정보의 기재'를 추가하고, 실체가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p>(b) 각주 추가에 대한 우려: 개념체계 문단 2.4에 각주를 삽입하지는 제안은 응답자들로부터 상반된 의견을 받았음. 해당 각주는 개념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용자' 용어를 모두 수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음. 두 명의 Staff가 개념체계 내 '이용자' 용어(총 189회 등장)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Staff 모두 문단의 맥락에 따라 독자가 해당 용어를 좁은 의미(즉, 주요 이용자) 또는 넓은 의미(즉, 모든 이용자)로 적절히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음(부록 B 및 부록 C 참조). 대다수 응답자가 개념체계 단락 2.4의 각주 추가에 찬성하였으므로, Staff는 '이용자'와 '주요 이용자'가 주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지만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각주와 결론도출근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안건 5.3.2 참조)</p> <p>(c) 추가 지침: 중요성과 관련된 의결사항이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GPFR의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의 초기 산출물 중 하나임. 2025년 3월에 IPSASB는 IFRS 실무지침서 2: 중요성 판단 (PS2)과 정합된 지침을 개발하기에 앞서 개념체계와 IPSAS 기준 간 중요성 개념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수행되고 있음(프로젝트 개요서 문단 5.1 참조). Staff는 재무제표 작성 시 특정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판단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된 PS2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2단계 범위에 포함됨. 2단계 관련 논의는 2025년 12월 뉴욕 IPSASB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임</p>
향후 절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ED 93 Part 1에 대한 응답을 고려하여,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모든 이용자가 아닌 주요 이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 판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Staff는 IPSASB가 Part 1의 개념체계 개정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 Staff는 또한 개념체계 문단 2.4에 대한 각주의 내용을 '이용자'와 '주요 이용자'가 주로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지만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것을 IPSASB에 제안함
[IPSASB 의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부록 B - 개념체계 문단 2.4에 각주 추가 관련 응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개념체계 전체에서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로 모두 수정할 필요를 피하기 위해 각주 추가를 제안하였음. ED 93에서 제안된 각주는 다음과 같음: "개념체계 전체에서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는 GPFR에 의존하여 대부분의 재무 정보를 얻는 서비스 수혜자 및 그 대표자, 자원 제공자 및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 • 문단 2.4에 각주를 추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부분 응답자는 각주 추가를 지지하며, 일부는 결론도출근거를 수정하여 두 용어가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님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b) 다른 응답자는 개념체계 전체에서 '이용자'를 모두 '주요 이용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Staff는 개념체계 전체에서 '이용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각 문단의 문맥에 따라 독자가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음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요 이용자(주요 이용자) — 서비스 수혜자 및 그 대표자, 자원 제공자 및 그 대표자⁶⁾ — (용어의 좁은 의미) (b) 주요 이용자의 하위 그룹(c) 모든 이용자(용어의 넓은 의미) (d) 주요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p>• 응답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옵션이 고려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각주 제거: 두 명의 Staff가 독립적으로 개념체계 전반에서 '이용자'라는 용어가 나타나 는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의미를 분석하였음. 두 Staff는 해당 용어가 주요 이용자를 지 칭하는지, 기타 이용자를 지칭하는지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 독립적 검토 는 관련 문단과 문장의 기존 맥락만으로도 독자가 해당 용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줌 (b) 명확화를 위한 각주 유지 및 결론도출근거 수정: 한 응답자는 결론도출근거에 각주가 '이 용자'와 '주요 이용자'가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 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는 2025년 3월 IPSASB 논의와 일치함. 당시 논의에서는 '이용 자'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주요 이용자가 아닌 GPFRs에 대한 모든 잠재적 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 였음(2025년 3월 IPSASB 회의 안건 5.2.2 참조) (c) 개념체계 전체에서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로 수정: '주요 이용자'로 수정할 '이용자'라는 용어는 개념체계 서문과 6개 장의 총 91개 문단에 등장함(부록 C 참조). 이러한 수정 제 안은 최종 공표문(안)인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의 목표 승인 및 발행 일정을 지연시키고, IFRS 실무지침서 2, 중요성 판단(PS2)과의 정합성을 고려 한 개발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음. PS2 개발은 공공부문실체가 IPSAS 기준에 따라 GPFS 작성 시 중요성 판단의 원칙을 이해하도록 하는 비강제 지침의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하 며, 2021년 중기 업무 프로그램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 또한 ED 93에 대한 응답 자들도 1단계만으로는 현재 실무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 지침 개발을 조속히 착수할 것 을 촉구하였음 (d) 각주 유지 및 특정 상황에 따라 '이용자'를 '기타 이용자'로 수정: 개념체계 내 5개 문단 에서 '이용자'는 모든 이용자 또는 주요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를 의미함(부록 C 참조). IPSASB는 이 경우 '이용자'를 '기타 이용자'로 수정할 수 있음. 상기 문단 (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단 3.32에서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개정은 최종 공표문 초안 및 PS2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것임 (e) 각주 수정: 각주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주요 이용자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문 맥에 따라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해당 용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용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개념체계 BC1.3 참조). 이들은 회계책임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공개를 공공부문실체에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가 아님 <p>• 본 프로젝트는 실체가 GPFR 작성 시 중요성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프로젝트 범위와 부합하고 대부분 응답자가 개념체계 2.4문단에 각주 추가 를 지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Staff는 각주와 결론도출근거를 수정하여 '이용자'와 '주요 이 용자'가 완전히 상호 호환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안건 5.3.2 참조)</p>

6) 개념체계 2.4문단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대표자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ED 93 Part 2에 대한 응답 검토
	[목적] IPSASB는 ED 93 Part 2에서 제안된 IPS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지?
	[제안] • Staff는 IPSASB가 ED 93 Part 2에서 제안된 IPSAS 1 개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배경] • ED 93 Part 2에서는 다음을 제안하였음: (a) IPSAS 기준 전반의 중요성 관련 지침을 개념체계와 정합되도록 조정할 것 (b) 실체가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있도록 IASB가 2018년 10월에 발행한 중요성 정의(IAS 1 및 IAS 8 개정)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할 것 • ED 93에서는 Part 2와 관련된 별도의 의견요청사항을 요청하지 않았음
	[분석]
	응답 분석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았음: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의 분석과 일치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동의 의견을 제시함 (b) 별도의 세부 설명 없이 동의함 (c)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2단계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성 적용에 관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였음 •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 정의 혹은 지침과 관련하여 수정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조작(manipulating)'을 정의의 기준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R03) (ii) IPSAS 기준에 개념체계에서 규정된 '주요 이용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공공부문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간의 불일치(divergence)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R04) (iii) IFRS와 정합된 문단의 구조 또는 수정을 제안함(R05) (iv)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R13, R16) (v) '불분명한 기재(obscuring)' '잘못 기재(misstating)'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요성 판단은 모든 이용자의 공통된 정보 요구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됨(R25) (b) IPSAS 기준 전반의 '이용자' 용어 수정을 제안: 모든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로 개정할 것을 요청함(R07) (c) 추가 지침 제안: '이용자' 앞에 '주요'를 추가하는 것이 현행 실무를 변화시킬지는 불확실하므로, 주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원칙을 요청함(R12, R17)

7) 다음 응답자가 제안을 지지하였음: R01, R02, R06, R08, R10, R11, R14, R15, R19, R20, R21, R22, R23, R24, R26, R27, R28, R29, R30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응답자들은 제안 자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R09), 중요성 적용과 관련한 명확성을 요구하였음(R18) (안건 5.2.6 참조) • Staff는 ED 93 Part 2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을 검토·평가하였음(부록 A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중요성 정의 수정: 중요성 설명은 최근 ED 81(개념체계 개정안)에서 이미 자문되었으며, 강한 지지를 받았음. ED 93 Part 2 개정의 범위는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개념체계와 정합시키고 일관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도입하는 것으로 한정됨 (b) '이용자' 용어 개정: ED 93 Part 2의 목적은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개념체계의 중요성 설명과 정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프로젝트 개요서 문단 5.1 참조), IPSAS 기준 전반에 걸쳐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로 일괄 수정하는 것은 PS 2: 중요성 판단 지침 개발을 지연시킬 것임. PS 2는 ED 93에 대한 응답자들이 IPSASB에 개발을 촉구한 지침으로 2021년 중기 업무 프로그램 요약에서의 응답 내용과 일치하며,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IPSASB가 업무계획에 사전 반영하기로 한 바 있음 (c) 추가지침: 프로젝트 2단계에서 IPSASB는 PS 2를 공공부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개발할 예정임. 이는 공공부문실체가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Part 2에 대한 편집상의 의견은 안건 5.2.6에서 검토됨
	<p>향후 절차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ED 93 Part 2에 대해 받은 응답을 고려할 때, Staff는 IPSASB가 ED 93 Part 2에서 제안된 IPSAS 1 개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개념체계와 정합시키는 것은 프로젝트 목적과 일치함 (b) IPSAS 1에 도입되는 새로운 중요성 지침은 중요성 정의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할 것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p>ED 93 Part 3에 대한 응답 검토</p> <p>[목적]</p> <p>IPSASB는 ED 93 Part 3에서 제안된 개정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는지?</p>
5.2.4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에서 중요성 설명을 삭제하고,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대체하는 방안의 진행을 제안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3 Part 3에서는 IPSAS 3의 중요성 설명을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음 • ED 93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요청사항을 요구하지 않았음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p>[분석]</p> <p>응답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을 지지한 응답자⁸⁾는 IPSASB의 분석과 일치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별도 세부 설명 없이 동의하였음 • 제안에 반대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93 Part 1 및 Part 2와 동일하게 개념체계에서 설명된 ‘주요 이용자’를 IPSAS 기준에 도입하는 것은 공공부문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R04) (b) IPSAS 3의 중요성 설명은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함(R28) • 일부 응답자는 본 제안에 대해 명시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⁹⁾ Part 3에 대한 편집상의 의견은 안건 5.2.6에서 검토됨 • Staff는 반대 의견을 검토한 결과(부록 A 참조), 다음을 확인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중요성 개념에 관한 관련 지침은 IPSAS 1에 이미 통합되어 있음 (b) Part 3에서 제안된 개정은 안건 5.2.3에서 논의된 Part 2의 개정에 따른 후속(consequential) 변경사항임 <p>향후 절차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ED 93 Part 3의 응답을 고려할 때 Staff는 IPSAS 3 개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이는 IPSAS 기준 내 중요성 정의의 정합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본 프로젝트의 목적과 일치함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p>ED 93 Part 4에 대한 응답 검토</p>
5.2.5	<p>[목적]</p> <p>IPSASB가 ED 93 Part 4에서 제안된 개정안과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의 문단 22에 대한 수정안 진행에 동의하는지?</p>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8) 다음 응답자가 제안을 지지하였음: R01, R02, R03, R06, R08, R10, R11, R14, R15, R19, R20, R21, R22, R23, R24, R26, R27, R28, R29, and R30
- 9) 다음 응답자들은 ED 93 Part 3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R05, R06, R07, R09, R10, R17, R18. R14는 편집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안건 5.2.6에서 검토됨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a) ED 93 Part 4에서 제안된 후속 개정(consequential amendments)을 진행할 것 (b)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지침과 일치하도록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의 문단 22를 수정할 것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3 Part 4는 ED 93 Part 2의 제안대로 개정될 경우 IPSAS 1의 중요성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특정 IPSAS 기준서들에 대한 후속 개정을 제안하였음(안건 5.2.3 참조) • ED 93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요청사항을 요청하지 않았음
	[분석] <p>응답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을 지지한 응답자¹⁰⁾는 IPSASB의 분석과 일치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별도 세부 설명 없이 동의하였음 •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추가 지침 요청(R13) 또는 안건 5.2.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PSAS 1 개정과 일치하도록 IPSAS 20에 대한 후속 개정 제안(R19) (b)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 문구가 해석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R16) • 반대 응답자는 편집상의 이유(R25, R27) 또는 ED 93 Part 1 및 Part 2에 대한 기존 입장(R04, R25, 각각 안건 5.2.2, 5.2.3 참조)을 반복함 • 일부 응답자는 제안에 대해 명시적 언급 없음.¹¹⁾ Staff는 ED 93 Part 4에서 제시된 편집상의 의견을 안건 5.2.6에서 검토함 Staff는 ED 93 Part 4 제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들을 검토하고 평가함(부록 A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 기준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ED 93 Part 4는 중요성 정의가 인용된 다른 IPSAS 기준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음. 예를 들어 IPSAS 14, 보고일 이후 사건의 문단 30은 중요성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IPSAS 1의 문단 7과 일치하도록 문단 30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could influence)' 문구를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음(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fluence)'으로 수정하는 것이 제안됨. 이러한 개정사항은 ED 93 Part 2에서 논의된 개정의 후속 개정임(안건 5.2.3 참조) (b) IPSAS 20, 특수관계자 공시의 문단 22는 IPSAS 1의 중요성 지침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ED 93은 이를 개정할 것을 제안함. 구체적으로 IPSAS 22 문단 20에서는 '규모(siz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IPSAS 1의 문단 12 개정안에서는 '금액(amount)'으로 변경됨. IPSAS 기준 전반에서 중요성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PSAS 20 문단 22의 '규모(size)'를 IPSAS 1 문단 12A와 일치하도록 '금액(amount)'으로 수정해야 함 • Staff는 ED 93 Part 4에서 제시된 편집상의 의견을 안건 5.2.6에서 검토함

10) 다음 응답자가 제안을 지지하였음: R01, R02, R03, R06, R08, R10, R11, R12, R15, R20, R21, R22, R23, R24, R26, R29, and R30

11) 다음 응답자들은 ED 93 Part 4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R05, R07, R09, R14, R17, R18, and R28

표 3 의 계속

안건 항목	내용
	<p>향후 절차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3 Part 4에 대한 IPSASB 응답과 프로젝트 목표를 고려할 때 Staff는 IPSASB가 ED 93 Part 4에서 제안된 개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 이는 IPSAS 기준 전반에서 중요성 정의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 또한 Staff는 IPSASB가 IPSAS 20 문단 22에 대한 개정안에도 동의할 것을 제안함. 이는 IPSAS 기준 전반에서 중요성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5.2.6	<p>ED 93, 중요성 정의검토</p> <p>[목적] IPSASB가 부록 A.1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부록 A.2에서 확인된 응답자 제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p>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93의 제안을 업데이트하여 부록 A.1에 요약된 응답자 제안사항을 최종 공표문에 반영할 것 (b) 부록 A.2에 요약된 응답자 제안사항은 최종 공표문에 포함하지 않을 것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은 안건 5.2.2~5.2.5에서 언급되지 않은 ED 93에 대한 기타 응답을 다룸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응답자는 ED 93 제안에 대한 편집상의 의견을 제공하거나 명확화를 요청함 • Staff는 이러한 의견을 상세히 분석하였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부록 A.1은 최종 공표문의 개정을 제안하는 응답자 제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Staff 분석 (응답자 제안사항 수용)을 포함함 (b) 부록 A.2는 최종 공표문의 개정을 제안하는 응답자 제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Staff 분석 (응답자 제안사항 불수용)을 포함함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p>[부록 A.1 – Staff가 최종 공표문 개정을 제안하는 이해관계자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표는 응답자 의견에 대한 세부 분석을 제시하며, Staff는 IPSASB가 최종 공표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표 3 의 계속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Staff 분석
응답자들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IPSAS 45.IG12(a)에서 '주요 이용자' 대신 '외부 주요 이용자'를 사용한 이유를 질문함(R02)	편집상의 수정이 제안됨. ED 93에는 '외부의'가 취소선 처리되어 표시되고, '주요'가 추가로 표시되었어야 함(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의 IPSAS 45.IG12(a) Part 4 참조)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편집상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IPSAS 1.BC42를 다시 작성하여, IPSAS 1의 중요성 정의가 '회계책임 이행(discharge of accountability)'을 포함하기 때문에 IAS 1 또는 IFRS 18의 중요성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R05)	IPSAS 1과 IFRS 18 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응답자의 제안에 따라 진행 (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의 IPSAS 1.BC42 Part 2 참조)
IPSAS 19.AG18에서 IPSAS 1의 제목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R08, R30)	응답자의 제안에 따라 진행. 적용지침은 새로운 문서이므로 IPSAS 1의 제목은 유지되어야 함(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의 IPSAS 19.AG18 Part 4 참조)
R11은 주요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하위 그룹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문구가 '이용자'와 '주요 이용자'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IPSAS 1.BC46의 재작성을 제안함	응답자의 제안에 따라 진행 (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의 IPSAS 1.BC46 Part 2 참조)
IPSAS 14의 문단 30에서 '해당 보고 실체를 위해 작성됨(prepared for that reporting entity)'을 삭제하여 IPSAS 19 문단 87과의 문구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R07, R14)	응답자의 제안에 따라 진행 (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의 IPSAS 14.30 Part 4 참조)
R14는 ED 93의 Part 3에 있는 시행일 문단을 Part 4와 일치시키기 위해, '실체가 이 개정을 조기 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실체는 IPSAS 1 문단 7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을 적용할 때 이 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PSAS 3에 대한 개정이 IPSAS 1에 대한 제안된 개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제안에 따라 진행. 또한 해당 수정 사항은 ED 93 Part 4에 있는 시행일 문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이 또한 IPSAS 1에 대한 제안된 개정의 결과임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p>최종 공표문, 중요성 정의 승인</p> <p>[질문] IPSASB는 최종 공표문 초안,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승인하기 위한 표결에 동의하는지?</p>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다음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개발 과정에서 적절하게 실무절차가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중요성 정의를 승인하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것 (b)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설정할 것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이해관계자들의 응답 검토와 최종 공표문 초안,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검토를 완료하였음 • 본 문서는 IPSASB가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요약하고, 승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후속 단계를 설명하며, IPSASB가 최종 공표문을 승인하도록 요청함 <p>[분석]</p> <p>적법절차(Due Process)</p> <p>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본 프로젝트 전반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 관련 제안 및 확인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부록 A에 제시됨. 주요 활동과 최종 절차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음 • IPSASB는 2025년 5월에 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발행하였음. ED 93에 대해서는 3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음 • Staff가 최종 공표문 승인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IPSASB의 적법절차 및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절차가 진행됨(굵은 글씨로 표시된 절차는 IPSASB의 조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ff가 개정된 공개초안의 국제기준 내용을 IPSASB에 제시함 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참조 (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IPSASB에 보고함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중요성 정의 초안(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개발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음을 확인함 (c) IPSASB는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IPSASB 의장은 IPSASB에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함 • Staff가 최종 공표문 승인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IPSASB의 적법절차 및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절차가 진행됨(굵은 글씨로 표시된 절차는 IPSASB의 조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ff가 개정된 공개초안의 국제기준 내용을 IPSASB에 제시함 • Staff가 최종 공표문 승인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IPSASB의 적법절차 및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절차가 진행됨(굵은 글씨로 표시된 절차는 IPSASB의 조치를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ff가 개정된 공개초안의 국제기준 내용을 IPSASB에 제시함 안건 5.3.2 최종 공표문 초안,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참조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IPSASB에 보고함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중요성 정의 초안(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개발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음을 확인함
(c) IPSASB는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IPSASB 의장은 IPSASB에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함
(d) IPSASB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승인 여부를 IPSASB 규정(Terms of Reference)에 따라 표결함	Staff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승인을 제안함
(e) IPSASB는 공개초안에 실질적인(substantial) 변경이 있어 재공개(re-expose)를 위한 표결이 필요한지 검토함	Staff는 IPSASB가 재공개 표결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실질적 변경이 없음을 확인함(근거: 부록 A 문단3(e))
(f) IPSASB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적용의 시행일을 설정함	Staff는 IPSASB가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Part 2~4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최종 공표문의 Part 1 개념체계 개정은 승인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을 제안함(근거: 부록 A, 문단3(f))
(g)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결론도출근거를 발행함	안건 5.3.2의 중요성 정의 초안(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의 결론도출근거 참조
[IPSASB 의결사항]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부록 A - 중요성 정의 승인 관련 상세 적법절차]	
• IPSASB는 본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적법절차의 최종 단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음	
• IPSASB는 2025년 5월에 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를 발행하였음. IPSASB는 총 30건의 의견서를 받았음. 2025년 3분기 동안 수행한 작업은 아래와 같음:	
(a) Staff는 접수된 30건의 의견서를 검토·분석하였음(IPSASB 웹사이트 참조)	
(b) 안건 5.3.2에는 ED 93과 비교한 모든 변경 사항(markup)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안건 5.2.2~5.2.6의 Staff 제안과 일치하고, 아래와 같은 편집상의 수정 사항도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예상 발행일 및 시행일 추가 (ii) 초안에 대한 참조 삭제 	
(c) IPSASB는 ED 93 응답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안건 5.2.2~5.2.6에서 논의하였음	
• Staff가 새로운 최종 국제 공표문이 승인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IPSASB의 적법절차 및 운영지침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ff는 수정된 국제기준 초안 내용을 IPSASB에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5.3.2에는 ED 93과 비교한 모든 변경 사항(markup)이 포함됨. ED 변경 사항은 의견서에서 제기된 사안, 제안된 지침 명확화, 또는 기존 지침과의 일관성을 위해 반영됨. 지침에 실질적인 변경은 없음(문단 (e) 참조)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p>(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IPSASB에 조인함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적법절차가 효과적으로 준수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i) ED 93가 자문을 위해 발행됨 (ii) ED 응답이 접수되어 IPSASB 웹사이트에 공개됨 (iii) IPSASB가 2025년 9월 회의에서 의견서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을 논의하였으며, 결정 사항이 회의록에 기록될 것임 (iv) Staff가 요약한 사안 외에 응답자가 제기한 기타 논의 사안이 있는지 IPSASB가 검토하며, 논의할 추가 사안은 없음을 확인함</p> <p>(c) IPSASB는 적법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IPSASB 의장이 IPSASB에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함</p> <p>(d) IPSASB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승인 여부를 IPSASB 규정(Terms of Reference)에 따라 표결함 Staff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승인을 제안함</p> <p>(e) IPSASB는 ED에 실질적 변경이 있어 재공개(re-exposure)를 위한 표결이 필요한지 검토함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IPSASB 의장과 협의하여 ED 93에 재공개 표결이 필요할 정도의 실질적 변경은 없음을 조인함. ED 93의 변경 사항은 의견서에서 제기된 사안 반영 또는 편집상의 항목임</p> <p>(f) IPSASB는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 적용의 시행일을 설정함 IPSASB는 최종 공표문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의 시행일을 검토해야 함. IPSASB 적법절차 및 운영지침의 문단 A44는 효과적 시행을 위한 최소 합리적 기간과 국가별 언어 번역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Staff는 시행일 설정과 관련한 IPSASB의 통상 관행이 신규 IPSAS 승인인지, 기존 IPSAS 개선(Improvements)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언급함 2025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ED 93을 60일 공개 기간(exposure period)으로 발행했으며, 이는 IPSAS 개선 관련 ED와 일치함. IPSASB는 ED 93의 개정 성격이 개선 프로젝트와 일치함에 동의함(2025년 3월 회의 안건 5.2.4 참조) Staff에 따르면 IPSAS 개선과 관련하여 IPSASB는 통상 발행 연도 다음 해 1월 1일을 시행일로 설정하며, 특정 개선 사항에 대해 추가 시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는 2025년 10월 발행 예정임. 2026년 1월 1일 시행은 IPSASB의 기존 관행과 일치하지만, 실체가 개정 사항을 시행할 기간이 단 2개월에 불과함. 이는 2024년 Q2 초 발행된 Improvements to IPSAS, 2023 및 2022년 Q1 발행된 Improvements to IPSAS, 2021보다 짧음. 따라서 Staff는 최종 공표문 Part 2~4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제안함 Part 1에는 개념체계의 2장과 3장 개정 사항이 포함됨. 개념체계는 IPSASB가 IPSASB 기준 개발 시 적용하는 비강제적 지침임.¹²⁾ 2023년 6월 개념체계 3장:질적 특성 승인과 일치하게,¹³⁾ Part 1의 개정 사항은 승인 즉시 적용되도록 하고, 2026 IPSASB Handbook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p>

12) 개념체계 문단 1.1 및 1.2 참조

13) 2023년 6월 IPSASB 회의 안건 5.2.1 참조

표 3 의 계속

■ 안건 5: 중요성 정의(Definition of Material - Narrow Scope Amendments)	
안건 항목	내용
	(g)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를 발행함 Staff는 최종 공표문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3 및 개념체계 개정)에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함(안건 5.3.2 참조)

2)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프로젝트는 천연자원의 인식과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한 IPSASB의 재무보고 프로젝트이다.

많은 국가에서 천연자원은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부와 유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IPSAS 문헌에는 ‘천연자원’이라는 용어조차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IPSASB는 천연자원 프로젝트를 2019~2023 업무계획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뒤, 2019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Public Sector Standard Setters Forum)과 자문위원회(Consultative Advisory Group)의 지지를 얻어 지난 202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IPSASB는 2022년 5월에 발간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에 ED 92, 유형의 천연자원(Tangible Natural Resources)을 발표하고, 이후 120일에 걸친 공개 자문을 진행하였다. ED 92는 천연자원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항목으로서 서비스 잠재력 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능력, 또는 둘 다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실체가 의도한 천연자원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기준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2025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tangible natural resources held for conservation)’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으로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정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는 삭제하고, ‘훼손(degradation)’, ‘보전(conservation)’ 및 ‘보존(preservation)’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적용지침에 추가하였다. 또한 IPSASB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과 ‘유산자산(heritage asset)’은 자산의 주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 천연자원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Proposed Definition of Tangible Natural Resource Held for Conservation)</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을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에서 보고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5년 6월 회의에서 Staff는 ED(공개초안) 92, '유형 천연자원'에 제시된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를 유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Staff는 보전(conservation)에 중점을 두어 더 명확한 적용범위를 설정하자는 제안에 맞게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tangible natural resources held for conservation)'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음. 제시된 정의는 재화-용역 제공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하여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을 ED 92의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에 결합시킨 것임 • 이에 대해 IPSASB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Staff가 제시한 '보전'의 정의는 더 간결하여야 하며, '훼손(degradation)'의 개념은 별도로 정의하기보다 적용지침(AG)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천연자원의 훼손은 앞서 언급된 재화 및 용역 제공 과정에서의 적극적 사용이나 소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또는 인간에 의한 파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현은 정의에서 삭제되어야 함 (b)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수정된 정의가 본 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핵심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는 없음. 또한 향후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할 때 이러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c) 일부 위원은 '보전'이 '보존'과 같은 개념인지, 그리고 각각의 정의에서 올바른 용어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위 내용에 더하여 한 위원은 유형 천연자원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원이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용 목적에 근거하여야 함을 주장함. 이러한 의견은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과 IPSAS 45,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유산자산(heritage assets) 간의 구분에 대한 지난 7월의 논의 결과와도 일치함
6.2.2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최종 IPSAS 기준서에서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으로서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것을 말함” (b)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 삭제 (c) 적용지침(AG)을 아래와 같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훼손(degradation)'의 개념을 설명 (ii) '보존(preservation)'과 비교하여 '보전(con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ii) 유형 천연자원이 보전 목적으로 보유되는지 여부는 실체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주요 목적에 따라 판단됨을 설명

표 4 의 계속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분석]</p> <p>정의에 대한 개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2에서의 정의와 지난 6월 IPSASB 논의에 근거하여 최종 IPSA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자산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연적으로 발생함(naturally occurring) (b) 서비스 잠재력을 내포함(embodies service potential) (c) 물리적 실체가 있음(has physical substance) (d)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됨을 의미함 •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Staff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p>“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으로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p> • 이러한 정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해당 정의는 자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강조함(Staff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의 의미를 설명하는 적용지침(AG)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는 ED 92에 대한 응답에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은 사항임) (b) 정의에서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항목들이 서비스 잠재력 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역량을 내포한 자원임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접근은 IPSAS 12, 재고자산 및 IPSAS 45,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을 정의하는 방식과 일관됨 (c)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항목들을 ‘유형자산(tangible assets)’으로 지칭함에 따라 이러한 자산들이 물리적 실체가 있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접근 역시 IPSAS 45에서 유형자산을 정의하는 방식과 일관됨 (d) 해당 정의는 보전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어로 명백히 설명하며, 본 안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핵심 문헌의 정의 부분에 ‘훼손’의 개념을 설명하는 적용지침(AG) 문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것임 •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가 적용 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모든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Staff는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를 최종 IPSAS 기준서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함 <p>‘훼손(degradation)’에 대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IPSASB 위원들은 ‘훼손(degradation)’이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이나 소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임을 강조하였으며, ‘훼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순 정의가 아닌 적용지침(AG)을 통하여 설명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Staff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을 보다 간략하게 재정의함 • 기준서의 핵심 문헌에 적용지침(AG)에 대한 참조 표시를 기재할 것이며, 당해 적용지침(AG)이 설명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본 기준서의 맥락에서 훼손이란 일반적으로 자산에 내재한 서비스 잠재력의 감소를 의미함 (b) 훼손은 천연자원의 양과 질의 하락을 초래하는 사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함

표 4 의 계속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자산의 고갈(depletion): 보고실체 또는 제3자에 의한 자산의 적극적 사용이나 소비로 인한 고갈 (ii) 자산의 파괴(destruction): 인위적 행위 또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자산의 파괴 (iii) 자원의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사건들(예: 질병, 오염 등) <p>(c) 보고실체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이 훼손되었는지 판단할 때 자연적 과정(natural process)을 고려하여야 함</p> <p>보전(Conservation) 혹은 보존(Preserv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보전과 보존 용어에 대한 논의 결과를 검토하였음. 해당 이슈는 지난 2024년 3월 ED 92의 '보전' 정의가 IPSASB에 제출될 때 천연자원 T/F에서 논의되었는데, T/F는 국제기구(예: UNESCO), 정부 기관(예: 미국 농무부), 사전 및 위키피디아 등에서 사용되는 '보전'의 정의를 분석함 • 정의 검토 결과, T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보전의 정의 중 일부는 보존 개념을 포함하거나 이를 참조함(UNEP, 미국 농무부, 미리엄-웹스터 사전, 위키피디아 등을 참고) (b) 미국 국립공원관리청(US National Park Service)의 정의에 따르면, 보전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련되며, 보존은 구체적으로 건축물, 물체, 경관의 보호와 관련됨 • Staff는 위와 같은 분석을 재검토하였으나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음. 다만 두 용어가 혼용·중복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기준서의 맥락에서 보전과 보존은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라는 동일한 개념을 지칭함을 설명할 것을 제안함 <p>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주된 사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천연자원을 그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Staff는 이러한 설명이 다른 IPSAS 기준서에서도 통상 정의가 아닌 적용지침(AG)에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함. 이러한 접근과의 일관성을 위해 Staff는 유형 천연자원을 복수의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보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고실체가 그 자산의 주된 보유의도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함 • Staff는 이러한 분류 판단 기준이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과 IPSAS 45에 따른 유산자산 간의 구분에도 도움이 됨을 지적함. 실체는 특정 유형 천연자산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가 보전 목적인지, 혹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행정 목적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후자에 해당하면 그 자산은 IPSAS 45의 적용범위에 속함. 이와 같은 설명은 본 기준서의 적용지침(AG)에 포함될 것임
	<p>IPSAS 기준서(안)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개정사항 (Revisions to [draft] IPSAS [X], Tangible Natural Resources Held for Conservation)</p>
6.2.3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관한 최종 IPSAS 기준서(안)을 본 안건 6.2.3의 [분석]에 따라 개정할 것을 권고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 및 7월 IPSASB 회의에서의 결정과 지시사항 및 안건 6.2.2의 제안에 근거하여, Staff는 IPSAS 기준서의 초안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을 마련함

표 4 의 계속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안건 6.2.3은 ED 92, '유형 천연자원'에서 IPSAS 기준서 초안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한 것임(안건 6.3.1 참고)
	<p>[분석]</p> <p>주요 개정사항</p> <p><u>적용범위(제목, 문단 3-6, AG2-AG5, IG1-IG3)</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 IPSASB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IPSAS 기준서(안)의 적용범위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보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적용지침(AG)이 추가되었으며, 지침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AG2의 순서도가 수정됨 • 범위와 보전의 개념에 대해 다루던 기존의 실무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ance)은 통합되었으며,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자원'과 '다른 IPSA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원'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개정됨 • 적용범위 재설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전반에 걸쳐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이라는 문구가 적절하게 추가됨 - 문서 전반에 걸쳐 '재무적 역량(financial capacity)' 및 '공정가치(fair value)'에 관한 언급이 적절히 삭제됨 <p><u>용어의 정의(문단 7, AG6-AG1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6.2.2의 개정사항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새로운 정의 도입 - '유형 천연자원'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정의 각각 삭제 <p><u>회계단위(문단 12, AG21-AG2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Staff는 회계단위(unit of account)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한 위원들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의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회계단위 관련 지침을 추가함 - 적용지침(AG) 내의 지침과 예시를 보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정함 • 회계단위에 대해 다루던 기존의 실무적용지침(IG)은 개정되는 적용지침(AG) 내 지침과의 중복 문제로 삭제되었음 <p><u>측정(문단16-20, AG33-AG34)</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원가결정(determination of cost) 관련 IPSAS 45, 유형 자산에 대한 상호 참조는 IPSAS 45를 기반으로 하되 보전에 맞게 조정된 지침으로 대체함 회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자원(문단 55, 문단 65, AG44-AG45) • 2024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회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자원에 대한 공시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됨:

표 4 의 계속

■ 안건 6: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공시가 추가적인 멸종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체는 해당 자원의 위치, 수량 및 장부가액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인식하지 않은 자원에도 공시 면제 사항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원의 판단에 관한 적용지침(AG)을 제 공함
	<p><u>현행가치의 공시(문단58-63)</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현행가치(current value) 공시 관련 IPSAS 45, 유형자산에 대한 상호 참조는 IPSAS 45를 기반으로 하되 보전에 맞게 조정된 지침으로 대체함 <p>경과규정(문단 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원을 신빙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만 요구하도록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개정됨
	<p><u>내용연수의 평가(AG38-AG4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자원이 무한 내용연수를 가지는지 혹은 유한 내용연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적용지침(AG)이 추가됨
	<p><u>IPSAS 33의 개정 - 2025년 발행(Appendix B)</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9월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IPSAS 33 개정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추가됨 <p>* IPSAS 33, 발생주의 IPSAS 최초 채택 - First-time Adoption of Accrual Basis IPSASs</p>
	<p><u>결론도출근거(BC2,4,5, BC8,11, BC19-BC20, BC22-BC23, BC29,36,38, BC40-BC4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도출근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서의 목적을 명확히 함 -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함을 설명함 • 위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최종 IPSAS 기준서에 반영된 개정사항을 설명함
	<p><u>관리책임제도(IG26-IG28)</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에 결정된 바와 같이 관리책임제도(stewardship arrangements)에 관한 지침이 추가됨
	<p><u>현행운영가치(COV)의 산정(IE11-IE18)</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7월에 결정된 바에 따라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과 원가접근법(cost approach)을 사용하여 현행운영가치를 산정하는 예시가 추가됨. 감정평가의 활용에 관한 예시는 IPSASB 위원 및 TA(Technical Advisor)로부터 제공받은 실제 사례에 기반함

3)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PSASB의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현행의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난 2023년 6월에 프로젝트 개요서(Project Brief)가 승인된 이후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다.

IPSASB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IPSASB 개념체계(2014년 발표)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됨에 따라 IFRS 18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해졌다는 데에 있다.

IPSASB는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를 다음의 3단계에 걸쳐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를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IPSAS 기준서(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5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단계별 목표

추진 단계	단계별 개정 사항
1단계	• 자문보고서(CP) 발표 및 의견수렴
2단계	• 신규 기준서 및 관련 기준서 개정 사항이 반영된 공개초안(ED) 발표
3단계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최종안 발표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일반 표시 요구사항 중에서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계속실체(going concern)’ 및 ‘중요성(materiality)’ 관련 규정에 더하여, 순자산/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할 항목에 대한 규정의 유효성과 IFRIC 17 지침의 IPSAS 반영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Staff와 T/F는 현행 IPSAS 1의 계속실체 규정의 경우 계속실체 유지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시의 필요성을 식별하기 위한 지침이 공공부문실체에게 여전히 필요하므로 이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요성 규정의 경우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프로젝트에서 도출하게 될 관련 개정사항을 새로운

IPSAS에 통합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순자산/자본변동표 표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IPSAS 1의 관련 규정을 유지하되, IFRS 18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순자산/자본변동표 본문에 조정내역(reconciliation)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Distribution of Non-cash Assets to Owner)에 기반하는 지침은 전 세계 공공부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IPSAS 기준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논의 결과, IPSASB는 Staff 및 T/F의 권고를 받아들여 계속실체 및 중요성과 관련된 현행 IPSAS 1의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IPSASB의 예비견해(preliminary view)로 확정하였으며, 조정내역(reconciliation)의 본문 표시를 위한 개정 외에는 현행의 순자산/자본변동표 표시 요구사항을 유지할 것과 IPSAS 기준서에 IFRIC 17 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

표 6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일반 표시 요구사항 - 계속실체
	<p>[Staff 권고사항] 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 (a) IFRS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IPSAS 1의 계속실체 관련 요구사항을 유지하되,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할 것 (b) 그 이유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2에 제시할 것</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은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제표를 실체가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표시 원칙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침은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보고빈도, 상계, 비교정보, 통합 및 세분화 등 재무제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표현됨 IPSASB는 이러한 일반 표시 요구사항 중 대부분에 대해 2024년 3월·6월·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 및 견해 형성을 완료하였으며, 두 가지의 잔여 이슈(계속실체, 중요성)에 대해 이번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p>[분석]</p> <p>현행 IPSAS 기준서의 요구사항</p>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은 실체의 공공부문에서의 계속실체 유지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IPSAS 1의 지침은 공공부문 적용을 위해 일부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지침을 추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일관성을 갖고 있음 계속실체 가정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실체가 운영을 지속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의 근거가 되며, 실체의 계속실체 능력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서 비롯되는 중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실체가 특정 보고일 이후 사건이 계속실체 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이 IPSAS 14, 보고일 이후의 사건에도 포함되어 있음
	<p>국제 공공부문에서의 계속실체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실체 평가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공부문의 계속실체 평가는 차별성을 갖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의 장수명: 많은 공공부문실체는 장기성의 약정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며, 그에 따라 공공부문실체는 종종 예측가능한 미래에 운영을 지속하고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됨 실체의 장수명에 관한 정보의 다양한 원천: 공공부문실체의 장수명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일반목적재무제표와 그밖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들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공함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팬데믹, 시장 불안정성 등 최근의 국제적 사건은 계속실체의 평가 및 공공부문실체의 장수명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실체가 유지되도록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상위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의 장수명에 대한 높은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적 권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운영을 지속하려면 외부 자금을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 국제원조기구와 같은 다른 공공부문실체에게는 사건 및 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이 계속실체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음
	<p>IPSAS 1 요구사항의 개정 여부</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은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제표를 실체가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표시 원칙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침은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보고빈도, 상계, 비교정보, 통합 및 세분화 등 재무제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표현됨 • IPSASB는 이러한 일반 표시 요구사항 중 대부분에 대해 2024년 3월·6월·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 및 견해 형성을 완료하였으며, 두 가지의 잔여 이슈(계속실체, 중요성)에 대해 이번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p>[분석]</p> <p>현행 IPSAS 기준서의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은 실체의 공공부문에서의 계속실체 유지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IPSAS 1의 지침은 공공부문 적용을 위해 일부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지침을 추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일관성을 갖고 있음 • 계속실체 가정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실체가 운영을 지속하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의 근거가 되며, 실체의 계속실체 능력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서 비롯되는 중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실체가 특정 보고일 이후 사건이 계속실체 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이 IPSAS 14, 보고일 이후의 사건에도 포함되어 있음 <p>국제 공공부문에서의 계속실체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실체 평가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공부문의 계속실체 평가는 차별성을 갖고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의 장수명: 많은 공공부문실체는 장기성의 약정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며, 그에 따라 공공부문실체는 종종 예측가능한 미래에 운영을 지속하고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됨 (b) 실체의 장수명에 관한 정보의 다양한 원천: 공공부문실체의 장수명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일반목적재무제표와 그밖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들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공함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팬데믹, 시장 불안정성 등 최근의 국제적 사건은 계속실체의 평가 및 공공부문실체의 장수명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실체가 유지되도록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상위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신의 장수명에 대한 높은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적 권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운영을 지속하려면 외부 자금을 상당히 의존해야 하는 국제원조기구와 같은 다른 공공부문실체에게는 사건 및 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이 계속실체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음

IPSAS 1 요구사항의 개정 여부

- Staff와 T/F는 계속실체와 관련된 현행 요구사항들이 목적에 부합한지와 그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 공공부문에서 지침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 이슈가 제기된 바 없음
 - 현재까지 전략 및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또는 일반적인 질의 과정을 통해 현행 IPSAS 1의 지침의 재검토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IPSASB 및 Staff에게 접수된 바 없음. 이는 현행 관련 지침이 계속실체 유지 능력의 평가 측면에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를 적절히 지원하면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함
 - (b) 동등한 지위의 민간부문 지침이 개정되지 않음
 -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를 개발하면서 IASB는 계속기업에 관한 IAS 1의 지침과 관련된 이슈를 식별하지 않았으며 당해 지침을 개정 없이 이관하였음
-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Staff 및 T/F는 IPSAS 1의 계속실체 요구사항을 개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음. 이 지침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들이 실체의 계속실체 유지 능력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공시의 필요성을 식별하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실체가 운영을 지속하고 자신의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할 것인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상됨. 이 지침을 유지하는 것은 IAS 1을 개정 없이 이관하였던 IASB의 의사결정에도 부합함

향후 계획

- Staff 및 T/F는 IPSASB가 현행 IPSAS 1 지침 유지에 동의한다면, 중요한 변경 없이 IAS 1로부터 이관될 예정인 다른 일반 표시 요구사항의 관련 논의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2에 수록할 것을 제안함. IPSASB의 결정에 따라 Staff는 예시공개초안(IED)에 포함될 지침(안)을 개발할 예정임
- 계속실체 유지 능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부문실체의 장수명에 관한 정보 중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나 유일한 것은 아님. 현행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회계책임 평가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계속실체 지속 능력의 평가에 관한 정보(IPSAS 1에서 요구) 및 실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RPG 1, 실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 적용 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Staff는 IPSASB가 지속적으로 국제적 보고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준 제정 영역에서의 새로운 피드백이나 개발사항이 향후 계속실체 지침의 재검토 또는 보강 필요성을 시사하는 지 검토할 것을 권고함

[IPSASB 의결사항]

- 상기 Staff 및 T/F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부록 1: IPSAS와 IFRS의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의 계속실체 관련 규정은 IAS 8의 계속기업 관련 규정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계속실체 지속 능력 평가에 필요한 미래 정보의 고려 대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 최소한 재무제표 승인 시점으로부터 12개월 IAS 8: 최소한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b) IPSAS 1의 경우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 제공(계속실체 가정의 적정성 판단은 개별 실체보다는 정부 전체 관점에서 더 목적적합함) • IPSAS 14의 다음 규정들도 보고일 이후 사건 판단뿐 아니라 계속실체 판단에도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문단 20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으로 조달받는 실체의 경우 계속실체 이슈는 정부가 당해 실체에 자금 제공을 중단할 의사를 발표하는 때에만 발생한다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유형의 실체의 계속실체 판단에 유용함 (b) 문단22~문단23은 계속실체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산정하고 새로운 부채 인식 혹은 부채의 유동성의 재분류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실체 가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유형 제시 • 결과적으로 Staff 및 T/F는 IPSAS 1 및 IPSAS 14의 계속실체 관련 규정을 하나의 기준서에 통합하여 얻는 유용성보다 IFRS와의 정합성 결여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함

일반 표시 요구사항 - 중요성

[Staff 권고사항]

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최종 공표문,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3, 개념체계의 개정)의 개정된 중요성 지침을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새로운 IPSAS에 통합시킬 것을 권고함

[배경]

- IPSAS 1은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지원하면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제표를 실체가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표시 원칙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침은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보고빈도, 상계, 비교정보, 통합 및 세분화 등 재무제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표현됨
- IPSASB는 이러한 일반 표시 요구사항 중 대부분에 대해 2024년 3월·6월·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 및 견해 형성을 완료하였으며, 두 가지의 잔여 이슈(계속실체, 중요성)에 대해 이번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분석]

IPSASB의 중요성 지침 검토 방법

- IPSASB는 2024년 12월에 실체가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제한 범위 프로젝트로서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IPSASB는 현행 IPSAS 1의 중요성 지침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가 아닌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이 접근법은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단계를 밟기 전에 IPSASB 개념체계와 IPSAS 기준서들 사이에 중요성의 정의를 일치시키는 데 의미가 있음

표 6 의 계속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의 1단계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D 93,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3, 개념체계의 개정) 발표(202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를 개념체계 및 IFRS 18에 따른 정의와 일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b) ED 93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 검토 진행(2025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 1의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 수정없이 진행 권고
	<p>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위한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중요성 지침을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ED 93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근거할 때 IPSAS 1의 개정사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Staff는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1단계 추진 결과인 IPSAS 1 개정사항을 IPSAS 1을 대체할 새로운 IPSAS에 통합시킬 것을 권고함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자문보고서 챕터 2에 그 이유를 제시하고 최종 공표문,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3, 개념체계의 개정)에 따른 중요성 지침을 예시공개초안 (IED)에 반영할 예정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 및 T/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p>순자산/자본변동표 표시 요구사항</p>
	<p>[Staff 권고사항]</p> <p>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행 IPSAS 1의 순자산/자본변동표의 표시 요구사항을 유지할 것 (b) 순자산/자본변동표 본문에 조정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IPSAS 1의 요구사항을 수정할 것 (b) IPSASB의 예비견해와 그 이유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5에 제시할 것
8.2.3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자본변동표는 주요 재무제표 중 하나이며, 두 보고일 사이에 실체의 순자산/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함. 실체의 순자산/자본의 변동액은 기간 중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며, 재무성과표 및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정보와 연결됨 • 동 안건은 순자산/자본변동표상에 이러한 변동액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당기손익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의 표시와 관련된 IPSASB의 잠정적 견해를 검토하고 있음
	<p>[분석]</p> <p>현행 IPSAS 1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 재무제표 표시는 순자산/자본변동표의 본문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당기손익(재무성과표에서 가져옴)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다른 IPSAS 기준서의 요구대로 당기의 순자산/자본으로 직접 인식한 수익 및 비용의 개별 항목과 그 합계 (c) 지배실체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즉 (a)와 (b)의 합계) (d) 순자산/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인식된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 및 오류수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은 또한 순자산/자본변동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 금액(소유주 배분을 별도로 표시) (b) 당기초와 당기말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잔액과 각 기간 중의 변동액 (c) 순자산/자본의 각 구성요소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각 구성요소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그리고 각 변동내역을 조정내역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 변동금액을 별도로 공시 • IPSAS 1은 실체가 다른 양식을 사용(예: 보고서 본문에 컬럼 양식 사용, 또는 특정 정보만 본문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공시)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부록 2 참조) • 또한 IPSAS 1은 순자산/자본변동표상의 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IPSAS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요구사항도 명시하고 있음(예: 재분류조정, 회계정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소급수정, 오류수정의 소급재작성)

IPSAS 1 요구사항의 개정 필요성 - 공공부문 맥락

- Staff와 T/F는 다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IPSAS 1 요구사항이 공공부문에 여전히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a) 순자산/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기간 내 실체의 순자산/자본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개괄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변동내역을 하나의 표에 보여주어 투명성을 제 공하므로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이 됨. 순자산/자본변동표와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연결됨
 - (i) 당기순이익(재무성과표의 본문에 표시됨)
 - : 2025년 6월 기준으로 IPSASB는 모든 재무성과표 표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를 마쳤으며, 여기에는 순자산/자본의 변동으로 직접 인식하는(즉 당기순이익의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ii) 순자산/자본의 구성요소
 - : 2024년 9월 기준으로 IPSASB는 모든 재무상태표의 표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를 마쳤음
 - (b) IPSAS 1의 순자산/자본변동표의 표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중요 이슈가 제기된 바 없으며, 이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공공부문에 효과적이고 여전히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함
- 당기초와 당기말 사이의 조정내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IPSAS 1의 현행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로서 하여금 보고기간에 걸쳐 순자산/자본의 구성요소의 잔액이 어떻게 변동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간략한 개요를 제공함

IPSAS 1 요구사항의 개정 필요성 - 민간부문의 개선사항

- Staff는 공공부문에서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IFRS의 신규 발간물들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당해 발간물들은 다음으로 구성됨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07년에 발표된 IAS 1의 개정판 : 기타포괄손익(소위 OCI)을 도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변경하고 특정 재무정보의 위치를 변경하였음 (b) 2024년에 발표된 IFRS 18 : IAS 1(2007)을 대체하지만 상기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Staff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는 당초 IAS 1(2007)이 도입한 개정사항(즉 OCI 관련 개정)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자문보고서(CP)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였음. 2024년 12월 및 2025년 3월 회의에서의 심층 논의 결과, 당기손익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의 표시와 관련된 예비견해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IPSASB 위원들은 IFRS와 일치시키지 않고 현행의 IPSAS 1 요구사항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IPSAS 1 요구사항이 이미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 측면에서의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b) 이는 당기손익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에 대한 지침이 IPSAS와 IFRS의 차이점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됨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그 밖의 다른 차이점을 식별하기 위해 순자산/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정보와 관련된 IPSAS 1 및 IFRS 18의 지침 간 상세 비교를 수행하였음. 그 결과 지침은 사실상 일치되어 있으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간 조정내역의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파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FRS 18은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그 조정내역을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할 것을 요구함 (b) 이에 비해 IPSAS 1은 당해 조정내역을 순자산/자본변동표 또는 주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 및 T/F는 IPSAS 1의 조정내역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IFRS 18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IPSASB 상기 선택지를 제거할 경우 순자산/자본변동표의 본문에 순자산/자본의 모든 변동내역을 보여주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개괄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공공부문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과 순자산/자본변동표의 본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p>전반적 평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Staff 및 T/F는 다음의 사항을 IPSASB에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순자산/자본변동표에 대한 현행 IPSAS 1 표시 요구사항을 유지할 것 (b) 순자산/자본변동표 본문에 조정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IPSAS 1의 관련 요구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재무제표에 표시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을 제고할 것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권고사항에 동의한다면 Staff 및 T/F는 IPSASB의 예비견해 및 관련 논거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5에 수록하고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예시공개초안(IED)에 반영할 예정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 및 T/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표 6 의 계속

■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IFRIC 17의 적용 가능성</p> <p>[Staff 권고사항] Staff와 Task Force는 IPSASB에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Distribution of Non-cash Assets to Owner)에 기반하는 지침은 전 세계 공공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IPSAS 기준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기준 제정 과정의 일환으로 IFRS 해석위원회가 발표하는 IFRS 기준서에 대한 해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공부문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있음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서(Project Brief)는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IPSAS 기준서에 IFRIC 17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p>[분석]</p> <p>IFRIC 17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IC 17은 2008년 11월에 발표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석서로,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산을 비상호적 조건으로 분배할 경우 그 인식 및 측정, 표시 및 공시에 관한 지침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한정된 적용범위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의 분배 거래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비현금자산의 분배(예: 유형자산, IFRS 3에 따른 사업(business), IFRS 5에 따른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이나 처분자산집단(disposal group)) (ii) 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대체하여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배 (b)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현금자산의 분배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구체적으로 분배 전후에 동일한 당사자가 분배된 자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또는 기업이 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배분하되 여전히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 • IFRIC 17은 소유주가 아닌 분배를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루며, 다음의 측면에서 현행 IFRS 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미지급배당의 인식: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 (b) 미지급배당의 측정: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선택 가능한 대안과 그 선택 가능성을 고려함. 측정치의 변동은 자본에서 조정함 (c) 미지급배당 결제 시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 간 차액의 회계처리: 별도 항목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분배될 자산의 성격과 장부금액, 그 증감을 주석으로 공시 <p>IPSAS 기준서와의 정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IC 17이 다루는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지침들은 다음과 같은 IFRS 기준서 모음 내에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비현금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기준서(IAS 2, 재고자산, IAS 16, 유형자산, IFRS 9, 금융상품,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 (b) 부채의 측정기준을 다루는 기준서(IAS 37, 총당부채·우발자산·우발부채,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등)

8.2.4

표 6 의 계속

안건 8: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IPSAS 기준서 모음은 기본적으로 IFRS 기준서 모음과 정합성을 갖고 있으며, 비현금 자산 또는 관련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IPSAS 기준서는 대체로 IFRS 기준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양자의 차이점은 수정 또는 보완된 공공부문 특유 지침 또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부문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됨 • Staff 및 T/F는 IPSAS 1과 IFRS 18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IFRIC 17과 관련된 표시 지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p>IFRIC 17의 지침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 및 T/F는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 거래가 공공부문에서도 보편적인지 여부와 IFRIC 17 지침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 개념체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실체 간에 비현금자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종종 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거래 중 일부는 소유주 분배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소유주 분배는 당해 실체가 폐지되거나 개편됨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잔여 자원의 회수에 해당할 수 있음 (b) 위와 같은 자산의 이전은 소유주 분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으나 IFRIC 17의 적용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상기 거래의 경우 대개 모든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분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분배 전후에 동일한 당사자가 여전히 당해 비현금자산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예: 중앙관서 간 조직개편 후에도 국가가 이를 통제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특성상 민간부문의 배당과 같은 형태로 공공부문실체가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분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결과적으로 Staff 및 T/F는 다음을 근거로 IFRIC 17의 지침을 IPSAS 기준서에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에서는 IFRIC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보편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b) 만약 그러한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IASB의 지침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권고사항에 동의한다면 Staff 및 T/F는 관련 논거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5에 수록할 것을 권고함 • IPSASB가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Staff 및 T/F는 IPSASB Application Group(IAG)을 통해 IFRIC 17의 IPSAS 기준서 적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AG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 결과와 논의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현행 IPSAS의 적용 관련 질의의 대응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음 (b) IFRIC 17은 주로 분배될 비현금자산 및 관련 부채의 '인식 및 측정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표시' 요구사항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남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 및 T/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4)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 프로젝트는 ‘IPSAS 기준과 정부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하 GFSM) 간의 불필요한 차이점을 해소한다’는 IPSASB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추진된 IPSASB의 새로운 과제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 12월에 발표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의 재무정보 공시’가 거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준에서부터 감사받은 재무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실무적용지침(IG)이 제공되지 않아 실무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준서 이용자들은 현행 IPSAS 기준서에 따라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 중에서 GFSM 2014에 부합하는 것을 식별하거나, GFSM 2014에 따른 통계 작성에도 활용되는 재무정보를 제공 가능한 IPSAS 기준서상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IPSASB는 ‘IPSAS 기준과 GFSM 간의 연계 강화’를 본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IPSAS 기준과 GFSM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IPSAS 22에 비강제적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부문실체가 통계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IPSAS 기준에 따른 회계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2025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IPSAS 22에 추가될 비강제적 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Task Force의 역할과 프로젝트의 수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해 지침의 예시로 제안된 공개초안인 ED, IPSAS 기준과 GFSM 2014의 연계(IPSAS 22 개정)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표 7 GFSM 연계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9: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안건 항목	내용
	프로젝트 관리 업데이트(Project Management Update)

[배경]

- 2025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프로젝트 개요서, 'IPSAS 기준과 GFSM 2014의 연계 강화'를 승인함. 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실체가 의사결정 및 회계책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정보를 작성할 때, IPSAS 기준에 기반한 회계 데이터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프로젝트는 IPSAS 기준과 통계 지침 간 정합성에 관한 20여 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며, 2012년 10월 발간된 자문보고서 'IPSAS 기준서와 정부재정통계지침(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의 작업을 포괄함.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IPSAS 22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비강제적 지침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임. 따라서 IPSAS 기준서의 강제적 지침에는 어떠한 변경 사항도 없을 것임
- 본 안건은 이러한 추가적인 비강제적 지침의 개발을 뒷받침해 온 주요 프로젝트 관리 사항들을 다룰 것임

[분석]

비강제적 지침 개발을 위한 T/F(Task Force) 활용

9.2.1

- 본 프로젝트는 IPSAS의 기존 원칙을 바탕으로 비강제적 지침을 개발할 예정임. 제안된 지침은 회계 및 통계 담당자가 IPSAS 기반 회계 데이터를 통계 작성 목적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또한 두 체계 간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이 정할 경우, 거시경제 관리에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의 품질이 높아짐
- 프로젝트 수행에는 IPSAS 기준 및 관련 GFSM 2014 조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위원회 논의보다는 주로 T/F(두 체계에 대한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를 활용하여 지침 개발이 진행될 것임.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다는 예외적 이슈가 있을 때에만 해당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법은 IPSAS 41, '금융상품'의 개발에도 적용된 바 있으며,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고 대규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대면 회의가 병행되었음. T/F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방대한 세부 작업을 수행하고 T/F 의장은 IPSASB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였음. 위원회는 비규정적 자료를 페이지 단위로 상세하게 검토하는 대신 T/F가 제시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공개초안을 승인하기 위한 추가 논점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 자료의 방대함과 기술적인 성격, 비강제적 지침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본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됨

T/F의 구성

- IPSASB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의 설립을 승인한 바 있음. T/F는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인사로 구성됨
 - (a) IPSASB
 - (b)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부
 - (c)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 (d)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위스에서 IPSAS 기준 재무제표와 GFSM 2014 재무제표의 작성을 모두 담당하는 실무자

표 7 의 계속

■ 안건 9: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안건 항목	내용
-------	----

- 연속성의 확보를 위해 IPSASB의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T/F 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 IPSASB 의장은 영국 전체 정부회계 경험과 IPSASB 설립 초기부터 20년 이상 IPSAS 기준과 통계 지침의 정합성을 조정하는 작업에 참여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제기구 출신의 다른 T/F 구성원들 또한 해당 분야에서 IPSASB와 협력해 왔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스위스 출신의 T/F 구성원들은 전 IPSASB 위원들이며, IPSAS 기준 및 기준 제정 과정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IPSAS 기준의 실제 적용과 GFSM 2014 보고서 작성에 회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실무 경험도 갖추었음

현재까지의 T/F 활동

- T/F는 5월 말 경에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스위스 연방재무행정청 (Swiss Federal Finance Administration)의 주최로 스위스 베른에서 2일간 회의를 열어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비강제적 지침의 초안을 마련함:
 - (a) 파트 1 - IPSAS 기준 - GFSM 정합성 대시보드 표
 - (b) 파트 2 - 공개초안(ED), 'IPSAS 기준과 GFSM 2014의 연계'의 초안(IPSAS 22, '일반 정부부문의 재무정보 공시'에 추가될 실무적용지침의 초안을 포함)
 - (c) 파트 3 - IPSAS 1~IPSAS 41 범위에 대한 GFSM 2014와의 비교표, IPSAS 42~IPSAS 50 범위에 대한 개정된 표(최종 공개초안을 위한 비강제적 보충 자료로 포함될 예정임)

비강제적 지침(안)(Proposed Non-Authoritative Guidance)

[Staff 권고사항]

- 부록(Appendix) A에서 제시된 하기 그룹 B의 비강제적 지침 예시에 대한 IPSASB의 의견을 요청함

[분석]

9.2.2

- 안건 9.3.1에는 T/F가 개발한 비강제적 지침(안)이 포함된 공개초안, 'IPSAS 기준과 GFSM 2014의 연계(IPSAS 22 개정)'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지침은 IPSAS 33, 'IPSAS 기준의 최초 채택'의 개정 시와 같이 여덟 개 그룹의 IPSAS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 (a) 그룹 A: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b) 그룹 B: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 (c) 그룹 C: 회계적 범위(Accounting Boundaries)
 - (d) 그룹 D: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 (e) 그룹 E: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 (f) 그룹 F: 수익 및 이전지출(Revenue and Transfer Expenses)
 - (g) 그룹 G: 기타비용 및 비금융부채(Other Expenses and Non-financial Liabilities)
 - (h) 그룹 H: 공시 및 기타 기준(Disclosures and Other Standards)
- 부록 A에는 T/F가 그룹 B와 관련하여 개발한 비강제적 지침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세 가지의 작업 흐름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의 계속

■ 안건 9: IPSAS 기준과 GFSM의 연계 강화(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PSAS Standards and the GFSM)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1. - 'IPSAS 기준 - GFSM 정합성 대비보드' 표 (b) A.2. - 공개초안(ED), 'IPSAS 기준과 GFSM 2014의 연계'의 초안(IPSAS 22, '일반정부 부문의 재무정보 공시'에 추가될 실무적용지침의 초안을 포함) (c) A.3. - 'GFSM 2014와의 비교' 표(기존의 'GFS와의 비교' 표를 대체하여 각 기준서의 말미에 추가될 예정이며, 이는 IPSAS 42, '사회보장급여'가 공표된 이후 지속되어 온 관례에 따른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22에 추가될 예정인 비강제적 지침의 목적은 공공부문 회계 및 통계 담당자들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 기준의 인식 및 측정 요건이 이미 GFSM 2014와 정합하여 IPSAS 회계 데이터와 정보를 통계 산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카테고리 A) (b) GFSM 2014 목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거나(카테고리 B), 양 지침 간 표시의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 IPSAS 22에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제안된 예시 지침(Illustrative Guidance)의 초안은 모든 통계 작성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지는 않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통계 커뮤니티에서 적절한 작성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 • 부록 A.3.에 포함된 'GFSM 2014와의 비교' 표의 목적은 IPSAS 기준과 GFSM 2014 간의 정합 및 비정합 영역을 큰 틀에서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임. IPSAS 42 이후 채택된 접근법은 IPSAS 22에 추가될 실무적용지침에 맞추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이는 IPSAS 46, '측정' 표의 개정 초안에서 예시로 확인할 수 있음 • 2025년 9월 회의에서 IPSASB가 제시한 의견은 T/F 논의 및 2025년 4분기 작업에 반영되며, 2025년 12월 회의에서 공개초안이 IPSASB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투명성 제고 및 회계책임 이행 강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을 둘러싼 공공부문의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IPSASB는 2022년에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착수하였다.

2024년 9월에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가 공개 자문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0일 간의 자문기간 동안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IPSAS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96개의 의견서를 받았는데, 분석 결과 자체사업(own operations) 관련 기준과 공공정책 프로그램(public policy program) 관련 기준을 별도의 기준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25년 6월 정례회의에서 두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자체사업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최종 공표문 (final pronouncement) 초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SRS ED 1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사항과 함께 공공정책 프로그램과의 구별을 위해 도입했던 ‘자체사업’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IFRS S2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RS ED 1에서 삭제되었던 ‘자본 배치 (capital deployment)’ 관련 공시를 지표 범주에 재도입하는 방안과 스코프 3 공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IPSASB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적용할 중요성 판단 지침이 적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에 조기 착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IPSASB는 중요성 판단 지침 마련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3단계의 조기 착수에 동의하였으며, 2025년 12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공표문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표 8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IPSASB SRS X 초안 검토 - 기준서 분리
	<p>[질문] IPSASB는 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분리하기로 한 결정의 결과로 필요한 지침이 최종 공표문 초안에 유지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p>
	<p>[제안] • IPSASB가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지침을 삭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을 승인할 것을 제안함</p>
	<p>[배경] •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은 2024년 10월 자문을 위해 발행되었으며, 자문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120일이었음. 이 공개초안은 10개의 의견요청사항(SMCs)과 하나의 소수 의견(Alternative View)을 포함하였음. IPSASB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기능을 대표하는 96건의 의견서를 수령하였음 • IPSASB는 2025년 4월 체크인 회의에서 Staff가 작성한 응답 요약을 검토하고, 범분야적(cross-cutting) 쟁점, 원칙 관련 쟁점(issues of principle), 이행 관련 쟁점(implementation issues) 등 주제별 범주(thematic categories)를 식별하였음 • IPSASB는 2025년 6월 회의에서 이러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였고, 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개별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음 (a) 1단계: 자체사업(Own Operations) (b) 2단계: 공공정책 프로그램(Public Policy Programs)</p>
7.2.1	<p>[변경사항 요약] • IPSASB SRS ED 1의 추적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체 초안(안건 7.3.1 참조)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기준을 분리한 결과로 이루어진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임 • 최종 공표문 초안 전반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삭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a) 본문 (i) 목적, 범위, 정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전반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언급을 삭제하였음 (ii)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지표(Metrics)와 의도된 결과 달성을 위한 목표(Targets) 부분을 삭제하였음 (iii)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경과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음 (b) 부록 A • 최종 공표문 초안 전반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삭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p>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a) 본문 (i) 목적, 범위, 정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전반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언급을 삭제하였음 (ii)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지표(Metrics)와 의도된 결과 달성을 위한 목표(Targets) 부분을 삭제하였음 (iii)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규정 조항을 삭제하였음 (b) 부록 A (i) 부록 A2의 삭제에 따라 부록 A1을 부록 A로 명칭 변경하였음 (ii) 두 가지 보고 관점을 범위로 삼기 위해 사용된 안내 문단과 설명 문구를 삭제하였음 (iii) 거버넌스와 지표 및 목표에서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언급을 삭제하였음 (c) 부록 A2 (i) 공공정책 프로그램만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부록 A2를 삭제하였음 (d) 부록 B, 부록 B.AG, 부록 C (i)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언급을 삭제하였음 (e) 결론도출근거 (i)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결론도출근거 부분을 삭제하였음 (ii)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방식과 두 개의 별도 기준서를 개발하기로 한 IPSASB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론도출근거를 추가하였음 (f)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 (i)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무적용지침과 예시사례를 삭제하였음

[IPSASB 의결사항]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IPSASB SRS X 초안 검토 - 민간부문과의 정합성 유지

[질문]

IPSASB는 민간부문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공표문 초안에 제안된 변경사항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는가?

[제안]

7.2.2

- IPSASB가 필수적인 공공부문 특화 조정(public sector-specific adaptations)을 유지하면서도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민간부문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안을 승인할 것을 제안함

[배경]

- 안건 7.2.1은 IPSASB가 기준서를 분리하여 개발하기로 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 공표문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IPSASB는 2025년 6월 회의에서 개별 기준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 외에도 민간부문 지침과 계속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음
 - (a) 자체사업(1단계) 기준서의 경우 IFRS S2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안건 5.2.3 참조)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b) 부록 B: 일반 요구사항의 경우 IFRS S1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안건 5.2.6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었음. 일부 응답자는 다음을 언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FRS S2와의 편집상 불일치가 있음: IPSASB가 이러한 기준을 활용할 때 민간부문 지침과의 더 긴밀한 정합성을 우선하여야 하며, 공공부문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둘 수 있음 (b) '자체사업'이라는 용어 사용이 우려됨: 이는 GHG 프로토콜에서 스코프 1 및 2 배출과 비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2025년 7월 회의에서 Staff는 최종 공표문 초안 개발 시 해당 용어 삭제의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음(안건 3.2.4 참조)
	<p>[변경사항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렴된 의견을 고려할 때 Staff는 별도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민간부문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필요한 공공부문 특화 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이전에 두 가지 보고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재구성되었던 부분을 민간부문 지침에 맞추어 원래 위치로 되돌렸음. 재구성 변경 외에도 두 개의 별도 기준서로 분리함에 따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자체사업' 용어를 삭제하였음 • IPSASB SRS ED 1에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체 초안(안건 7.3.1 참조)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민간부문 지침과의 더 긴밀한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요 변경사항을 강조한 것임 • 최종 공표문 초안에 대한 주요 제안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본문 및 부록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전략과 위험관리 부분을 IFRS S2 본문에 맞추어 부록 A1에서 본문으로 다시 이동하였음 (ii) '자체사업'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음 (iii) 자본 배치(capital deployment)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S2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 지표 범주로 다시 도입하였음(안건 7.3.1 참조). 이는 IPSASB가 공개초안에서 '자본 배치'를 삭제한 것에 대해 공공부문실체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자금을 얼마나 배분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의견에 대응한 것임 (b) 부록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자체사업'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음 (c) 부록 B.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한 응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한 기후 상황 사례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였음 (d) 결론도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자체사업' 용어 삭제에 관한 결론도출근거를 추가하였음 (ii) 공공부문에서 자본 배치 공시 요구사항의 적절성에 관한 결론도출근거를 추가하였음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IPSASB SRS X 초안 검토 - 2025년 6월 및 7월의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
	<p>[질문] IPSASB는 2025년 6월 및 7월 회의에서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 조치 (proposed action)에 동의하는가?</p>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2025년 6월 및 7월 회의에서의 결정과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사항을 승인할 것을 제안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준서 개발(안건 7.2.1) 및 민간부문 지침과의 정합성 제고(안건 7.2.2)를 반영하여 최종 공표문 초안을 수정한 것 외에도 IPSASB는 2025년 6월 및 7월 회의에서 논의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변경사항을 제안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HG 프로토콜 - GHG 프로토콜 사용에 대한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 유지 (b) Scope 3 온실가스 배출 - Scope 3 공시 요구사항 유지 (c) 중요성 - IPSASB 개념체계(CF)상 정의 유지 (d) 경과규정 - 제안된 경과규정 유지 및 Scope 3 공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e) 일반 요구사항 - 보고 시기 및 공시 위치에 대한 제안된 경과규정 유지 (f) SMC 10 - 기후재정 메커니즘과 관련한 예시지침 개발
7.2.3	<p>[변경사항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 SRS ED 1 대비 변경 추적본에서 IPSASB의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 이루어진 주요 변경사항은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 최종 공표문 초안에 대한 주요 수정 제안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목적에 중요성에 관한 문단 참조 추가 (ii) 경과규정을 수정하여 3년의 전환기간 허용 (b) 결론도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비례성 메커니즘, GHG 프로토콜, 전환, 중요성 논의, 보고 시기와 위치, 그리고 응답자가 제기한 추가 이슈에 관한 결론도출근거 추가 (c) 실무적용지침 및 예시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후 자금조달 메커니즘 관련 실무적용지침 추가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중요성(Materiality) 지침 접근법
	<p>[질문] IPSASB는 중요성 지침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p> <hr/>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ments) 프로젝트의 3단계 개발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기존 민간부문의 중요성 교육자료를 공공부문 맥락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제안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2025년 6월 회의에서 IPSASB 개념체계에 근거한 현행 중요성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음(안건 5.2.7 참조). 또한 제안된 중요성 정의에 대해 응답자들로부터 다양한 해석이 제시됨에 따라 중요성 정의의 적용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2025년 6월 회의의 안건 5.2.7 문단 9는 Staff가 응답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제안된 중요성 정의의 다양한 해석 사례를 포함함. 이러한 해석은 지속가능성 보고 영역에서의 중요성 관련 광범위한 논의와 IPSASB 지침 외부에서 존재하는 용어(예: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를 반영함 •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본 문서는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중요성 정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작성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이 논의는 2025년 8월 28일 개최된 지속가능성 이행포럼(SIF)의 논의를 토대로 하며,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 이 Q3 SIF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 9월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될 예정임 •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의 전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IPSASB는 2025년 5월에 ED 93, 중요성 정의(IPSAS 1, IPSAS 4, 개념체계 개정)를 발행하였음. 이는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 단계로 추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1단계 -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 강화 (b) 2단계 - IPSAS 기준서에서의 중요성 (c) 3단계 - IPSASB SRS에서의 중요성: IPSASB SRS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적용할 중요성 판단 지침을 개발하는 것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 SRS ED 1의 경우 목적, 부록 B, 적용지침, 부록 C 및 결론도출근거에 중요성 지침이 포함되었음. 제안된 지침은 중요성 정의 설명뿐 아니라 중요 정보한 판별, 정성적 판단 수행, 중요한 정보 공시에 관한 추가 지침을 담고 있음. 2025년 6월 논의에서 IPSASB는 ED와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1단계에서 제안된 정의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공공부문 맥락에서 적용상의 잠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p>민간부문 지침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의 결론도출근거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중요성 정의가 IASB의 '중요한 정보' 및 '중요성' 정의와 IFRS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라 정합됨을 확인함.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와 재무보고 간 개념적으로 일관된 정의 사용은 실제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전반에서 연결성을 촉진한다고 언급함. 이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및 '중요한 정보'의 판단 등 공공부문 개념의 기반으로서 IPSASB 개념체계에 의존하기로 한 IPSASB의 의결사항과 일관성을 가짐
7.2.4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B는 2023년 6월 최초 기준서¹⁴⁾를 발행한 이후 이해관계자의 기준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을 우선시해 왔음.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및 중요 정보 공시”라는 62쪽 분량의 교육자료를 발행함(안건 7.3.2 참조). 이 자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중요한 정보 식별 및 공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 <p>[명확성(clarity) 제고를 위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에 중요성 정의를 명시하는 것(안건 7.2.3 참조) 외에도 Staff는 2025년 6월 IPSASB 논의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하여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중요성 정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검토하였음 <p>방안 1: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3단계의 조기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방안에 따르면 IPSASB는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3단계를 조기에 시작하여 기존 민간 부문 교육자료를 공공부문 맥락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최종 공표문 초안에서 중요성 정의 적용을 지원할 수 있음(관련 ISSB 교육자료는 안건 7.3.2 참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방안 1의 장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방안 1의 단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ED 응답자들과 SIF 이행 리더들이 강조한 긴급한 기후 공시 최종 지침 수요에 대응하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 추가 중요성 지침을 확정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함 기존 자원의 활용: 민간부문에서 IFRS S2 이행 시 활용된 기존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를 통해 지침 제공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원칙이 일치하는 영역에서는 중요성 개념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특수 차이를 반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 불필요한 공공부문 차이 방지: 제안된 접근법은 ISSB의 접근법과 정합성을 이루며, IPSASB가 공공부문에서 확장이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판단할 때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2단계 지연 가능성: 3단계 조기 착수는 2단계 시작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Staff는 실제적으로 이 지연이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2단계는 IPSAS 기준 간 중요성 지침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작성자들은 오랜 기간 추가 지침 없이도 보고해 왔음 </td> </tr> </tbody> </table> <p>방안 2: 최종 공표문 초안 내 추가 지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방안은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 추가 지침(예시지침 및 예시사례)을 개발하는 것임 	방안 1의 장점	방안 1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ED 응답자들과 SIF 이행 리더들이 강조한 긴급한 기후 공시 최종 지침 수요에 대응하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 추가 중요성 지침을 확정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함 기존 자원의 활용: 민간부문에서 IFRS S2 이행 시 활용된 기존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를 통해 지침 제공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원칙이 일치하는 영역에서는 중요성 개념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특수 차이를 반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 불필요한 공공부문 차이 방지: 제안된 접근법은 ISSB의 접근법과 정합성을 이루며, IPSASB가 공공부문에서 확장이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판단할 때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2단계 지연 가능성: 3단계 조기 착수는 2단계 시작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Staff는 실제적으로 이 지연이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2단계는 IPSAS 기준 간 중요성 지침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작성자들은 오랜 기간 추가 지침 없이도 보고해 왔음
방안 1의 장점	방안 1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ED 응답자들과 SIF 이행 리더들이 강조한 긴급한 기후 공시 최종 지침 수요에 대응하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 추가 중요성 지침을 확정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함 기존 자원의 활용: 민간부문에서 IFRS S2 이행 시 활용된 기존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를 통해 지침 제공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원칙이 일치하는 영역에서는 중요성 개념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특수 차이를 반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음 불필요한 공공부문 차이 방지: 제안된 접근법은 ISSB의 접근법과 정합성을 이루며, IPSASB가 공공부문에서 확장이나 조정이 필요한 영역을 판단할 때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 2단계 지연 가능성: 3단계 조기 착수는 2단계 시작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Staff는 실제적으로 이 지연이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2단계는 IPSAS 기준 간 중요성 지침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작성자들은 오랜 기간 추가 지침 없이도 보고해 왔음 				

14)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표 8 의 계속

■ 안건 7: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방안 2의 장점</th> <th>방안 2의 단점</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지원: 이용자가 원칙과 실무적인 적용지침을 단일 문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자료를 참조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공표문 초안 확정 지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서 추가 지침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발행을 지연시키며, 공공부문 기 후 관련 공시 기준의 시급한 필요성을 우선 시하라는 이해관계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새로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는 아직 초기 단계의 실무로, IPSASB가 이 시점에서 중요성에 관한 추가적인 비공식 지침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원 집약성: 추가 지침을 개발, 검토, 승인하는 과정에서 IPSASB와 Staff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며, ISSB 지침과의 의도치 않은 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td> </tr> </tbody> </table>	방안 2의 장점	방안 2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지원: 이용자가 원칙과 실무적인 적용지침을 단일 문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자료를 참조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공표문 초안 확정 지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서 추가 지침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발행을 지연시키며, 공공부문 기 후 관련 공시 기준의 시급한 필요성을 우선 시하라는 이해관계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새로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는 아직 초기 단계의 실무로, IPSASB가 이 시점에서 중요성에 관한 추가적인 비공식 지침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원 집약성: 추가 지침을 개발, 검토, 승인하는 과정에서 IPSASB와 Staff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며, ISSB 지침과의 의도치 않은 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방안 2의 장점	방안 2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인 지원: 이용자가 원칙과 실무적인 적용지침을 단일 문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자료를 참조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공표문 초안 확정 지연: 최종 공표문 초안 내에서 추가 지침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발행을 지연시키며, 공공부문 기 후 관련 공시 기준의 시급한 필요성을 우선 시하라는 이해관계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새로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는 아직 초기 단계의 실무로, IPSASB가 이 시점에서 중요성에 관한 추가적인 비공식 지침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자원 집약성: 추가 지침을 개발, 검토, 승인하는 과정에서 IPSASB와 Staff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며, ISSB 지침과의 의도치 않은 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p>•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taff는 IPSASB가 방안 1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방안 1은 적시성 있는 최종 공표문 발행 필요성과 작성자가 중요성 정의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무 지원자료 개발 착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충족시킴. 이는 IFRS S1과 S2와 원칙적으로 정합성을 이루며, IPSASB가 ISSB의 기존 포괄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 부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p>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표 9 (2025년) IPSASB 업무계획(2025년 9월 기준)

프로젝트	2025년 9월	2025년 12월	2026년 3월	2026년 6월	2026년 9월	2026년 12월
기준 제정 프로젝트						
기후 관련 공시: 자체사업 [Phase 1]	RR/DI	IP				
기후 관련 공시: 공공정책 프로그램 [Phase 2]			RR/DI	RR/DI	DI/IP	IP
천연자원	RR/DI	IP				
재무제표 표시	DI	DI	CP			RR/DI
IPSAS와 GFSM 2014 연계 강화	DI/ED	DI/ED		RR/IP		
IPSAS 33 - 제한된 범위 업데이트	IP					
측정 - 적용 단계: IPSAS 31의 COV - 한정범위 개정			RR/DI	RR/DI	IP	
개선과제(Improvements)	DI/ED	DI/ED	DI/ED		RR/IP	
중요성 판단 기준 - Phase 2		DI	DI/ED			RR/IP
중요성의 정의 - 한정범위 개정	RR/IP					
업무계획 자문	CP			RR/DI/ WP	WP	
유지보수 및 연구 활동						
IPSAS 적용 패널	DI	DI	DI	DI	DI	DI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	DI	DI/RFI	RFI		
학술 자문 그룹 - 공공부문 연구	RES					
기타 프로젝트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i) 일반 요구사항 ii) 천연자원 - 비재무적 정보 공시	IG	IG	IG	IG	IG	IG
IPSASB 핸드북 발간				발간		

주: 1. DI = Discussion of Issues, RR = Review Responses
 2. PB = Project Brief
 3. SWP = Approval of Strategy and Work Program
 4. CP = Approval of Consultation Paper
 5. 빗금 = 계획된 자문 기간
 6. ED = Approval of Exposure Draft
 7. RES = Research Activities
 8. IP = Approval of Final Standard or Amendments to IPSAS
 9. RFI = Request for Information

프로젝트 관리 - 결과물

- 최근 자문결과
- ED 93,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3, 개념체계 2장 및 3장 개정사항)
 - 2025년 5월 15일 발간, 2025년 7월 14일 자문기간 종료

03 해외 재무결산 동향(영국)



영국 정부의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통합산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이하 'WGA')는 2024년 11월에, 2023-24회계연도 WGA는 2025년 7월에 발간되었다.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3-24회계연도 WGA를 요약한 것으로, 두 회계연도 결산서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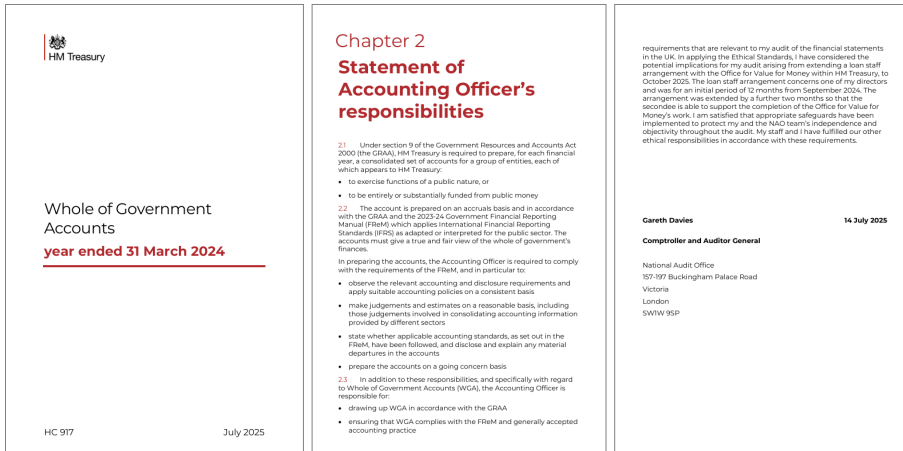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3-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2-23>

가. 결산서의 구성

WGA는 성과보고서(결산 요약 및 결산 개요 포함),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거버넌스 확인서(Governance Statement), 재무제표 및 주석, 감사원장 메시지, 부록인 국민계정과와의 비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재정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5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결산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감사원장 성명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4년 3월 31일 현재 영국 정부의 총자산은 2조 6,513억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970억파운드(3.8%)가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5조 245억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811억파운드(1.6%)가 증가하였다.

정부가 소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유형자산, 기타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미수금이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공공부문이 보유한 유형자산은 1조 5,391억파운드로 총자산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전기 기준으로 유형자산은 1조 4,353억파운드로 총자산의 57%를 차지하며, 유형자산 중 58%가 사회기반시설이었다.

사회기반시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도망은 4,719억파운드(2022-23년 4,114억파운드)로 확대되었으며, 기타자산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역시 521억파운드(2022-23년 479억파운드)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자산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무형자산의 광범위한 정의에서는 지식, 기술 및 노하우를 포괄하며 공공가치를 더 폭넓게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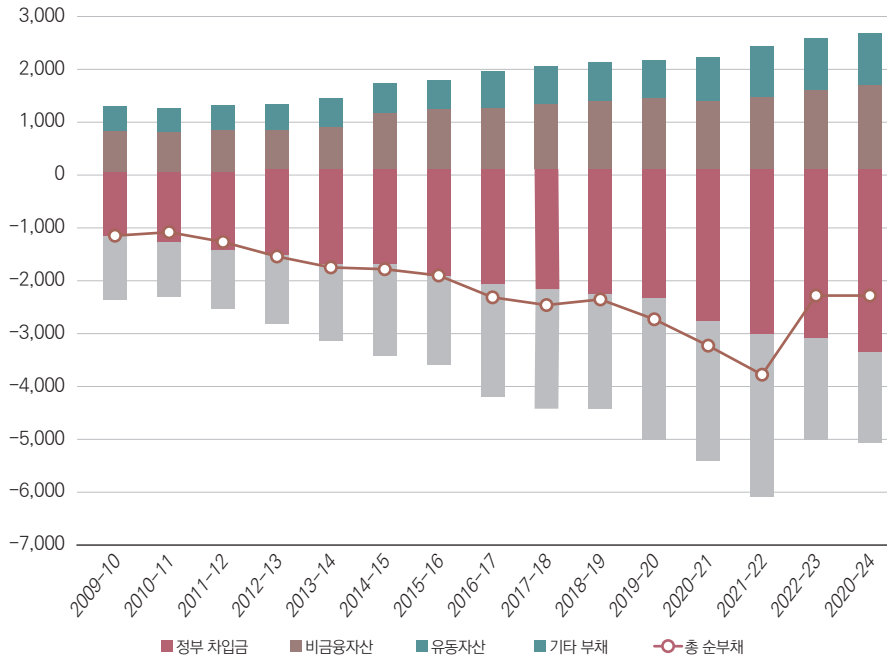
영국 정부는 정부차입, 공공부문 연금부채, 기타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미지급금, 총당부채와 같은 여러 주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부문 연금부채(순액)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1조 3,119억파운드, 2022-23년 1조 4,150억파운드 대비 감소하였다. 기타 금융부채는 1조 2,021억파운드(2022-23회계연도 1조 2,512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채무 및 기타 미지급금은 2,283억파운드, 2022-23년 2,163억파운드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총당부채는 2,622억파운드(2022-23회계연도 3,069억파운드)로 감소하였다. 2023-24회계연도에는 항목별 증감이 혼재하는 가운데 총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부채는 장기 및 단기부채로 구성된다. 단기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미지급금, 단기국채 및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등이다. 비유동부채에는 민간투자개발사업(PFI) 계약, 연금보호기금 총당부채, 금융리스 부채 등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의무가 포함된다. 2023-24회계연도에는 일부 PFI 계약의 회계처리 범위가 개정되어 IFRS 16 원칙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림 1]에 따르면 2009-10회계연도부터 2023-24회계연도까지 15년 동안 총자산은 1조 2,075억파운드에서 2조 6,513억파운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증가분은 같은 기간 총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쇄되었다. 총부채는 2009-10회계연도의 2조 4,193억파운드에서 2023-24회계연도에는 5조 245억파운드까지 늘어나 15년 동안 두 배 내외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는 기간자금제도(term funding scheme)와 학자금 대출 등 공공부문의 꾸준한 투자 증가와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으로 인한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한다.

그림 1 15년간 자산 및 부채 변동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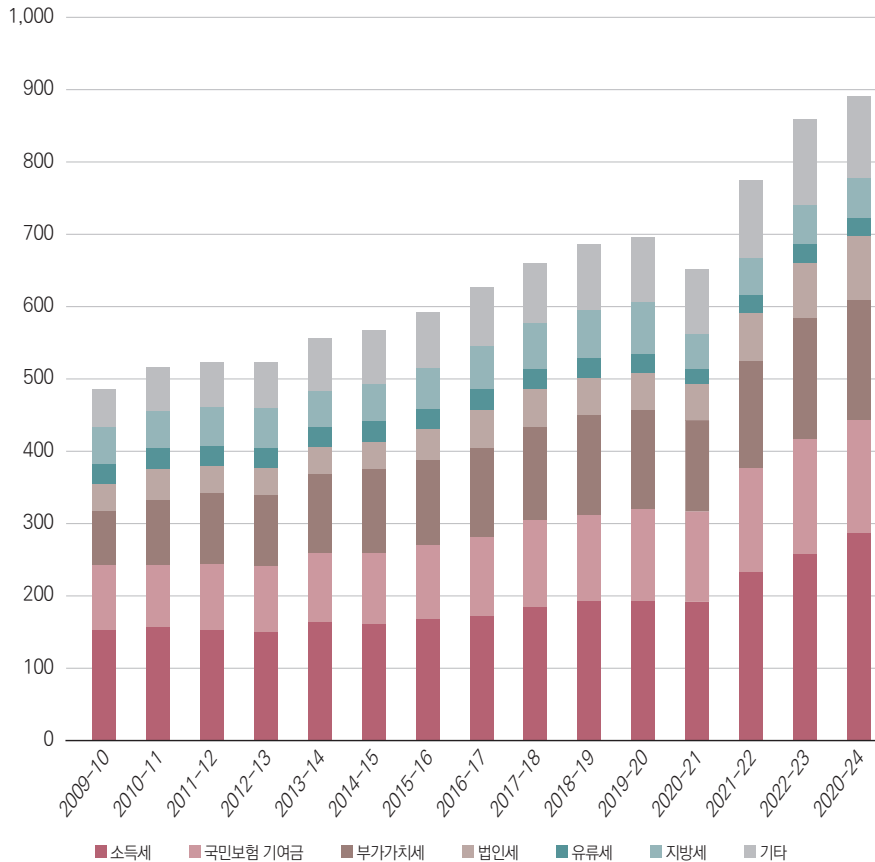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4」, 2025.

2) 수익 및 비용

2022-23회계연도 기준 조세수익은 총 수익의 약 88.0%(8,577억파운드)를 차지하였으며, 2023-24회계연도 기준 조세수익은 총 수익의 87%(8,888억파운드)를 차지하였다. 2023-24회계연도 기준 조세수익의 94%는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에서 징수한 것이다. 조세수익은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수준, 세율,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에 영향을 받으며, 주요 세목은 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이다. 정부는 조세수익 외에도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2023-24회계연도 기준 기타 수익은 1,311억파운드로 총 수익의 약 12.9%(2022-23회계연도 1,168억파운드, 12.0%)를 차지하며, 계약수익 622억파운드, 국민건강서비스(NHS) 수익 102억파운드 및 기타수익 587억파운드로 구성된다. 2023-24회계연도 기준 상품 및 서비스 판매수익이 계약수익의 50.8%(316억파운드)를 차지한다(2022-23회계연도 325억파운드). NHS 수익은 NHS 요금 및 부담금(20억파운드)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조세 수익의 유형별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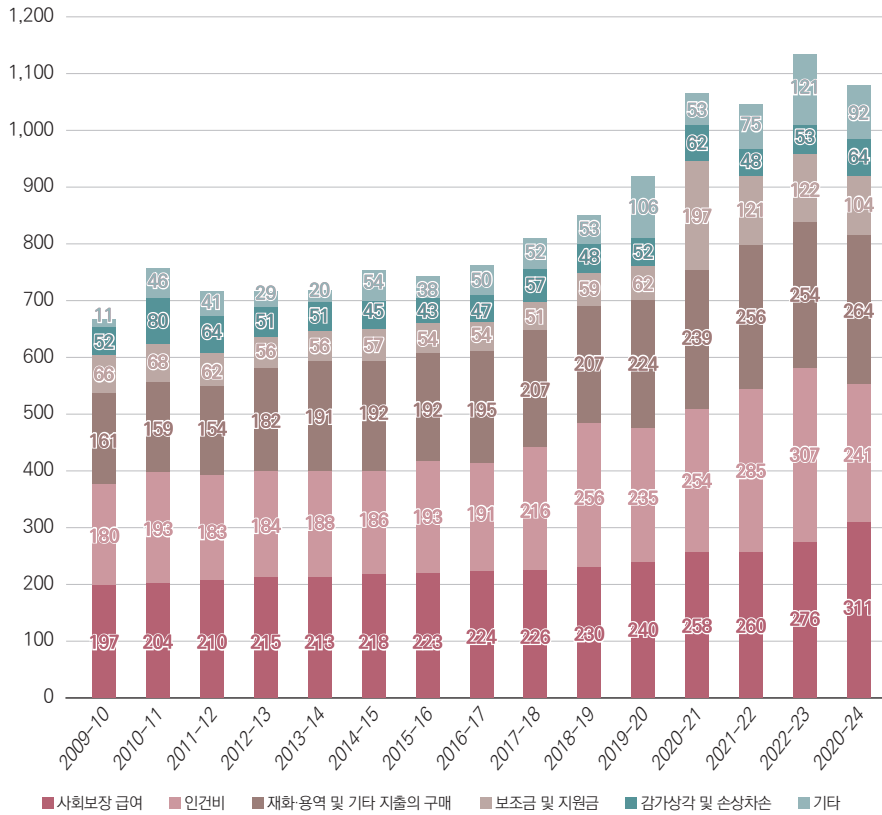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4」, 2025.

2023-24회계연도 기준 비용(공공서비스 원가)은 총 1조 763억파운드(2022-23 회계연도 1조 1,336억파운드)로 집계되었다.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보장급여 3,114억파운드(2022-23회계연도 2,761억파운드), 인건비 2,405억파운드(2022-23회계연도 3,067억파운드) 및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2,637억파운드(2022-23회계연도 2,543억파운드)이다. 비용(공공서비스 원가)은 지난 15년간 61% 증가하였다. 2023-24회계연도 기준 보조금 및 장려금 지급은 1,041억파운드 로 전년(1,224억파운드) 대비(15.0%) 감소하였으며, 이번 감소는 주로 경상보조금 이 축소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전년도에 확대되었던 일부 지원성 지출이 정상화되면서 정부의 현금성 이전지출이 조정된 결과로 제시된다.

그림 3 공공서비스 원가 15년 변동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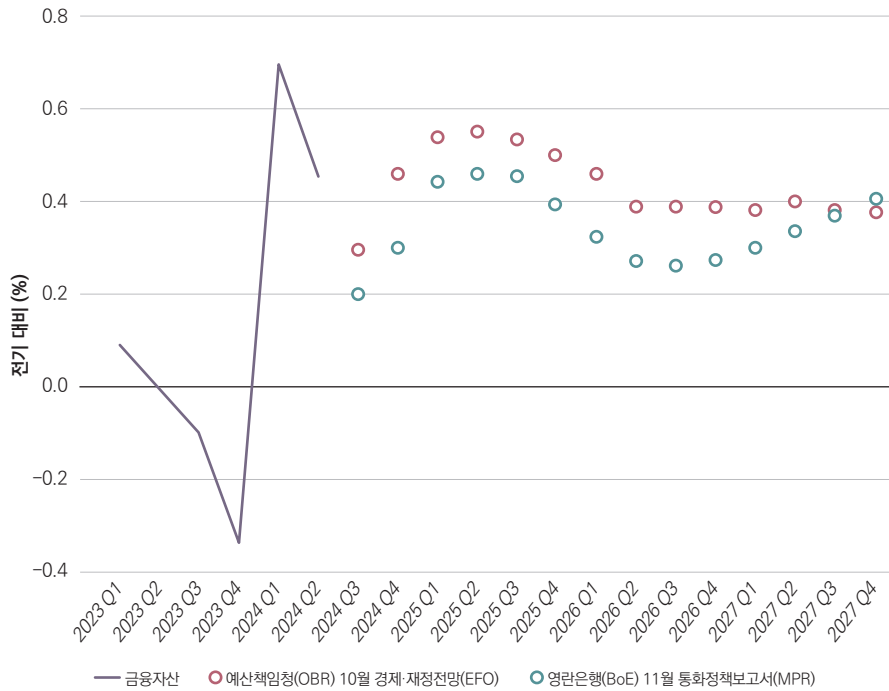
다. 경제 전망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위원회(MPC)는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8월 이후 은행 금리(Bank Rate)를 네 차례 인하하였다. 예산책임청(OBR)은 인플레이션이 2025년 7월 3.8%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6년 2분기부터 전망 기간 말까지 2%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MPC의 조치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국 경제는 2024년 초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둔화되었으며, 예산책임청(OBR)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 2026년부터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경로는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4」, 2025.

04 해외 재무결산 동향(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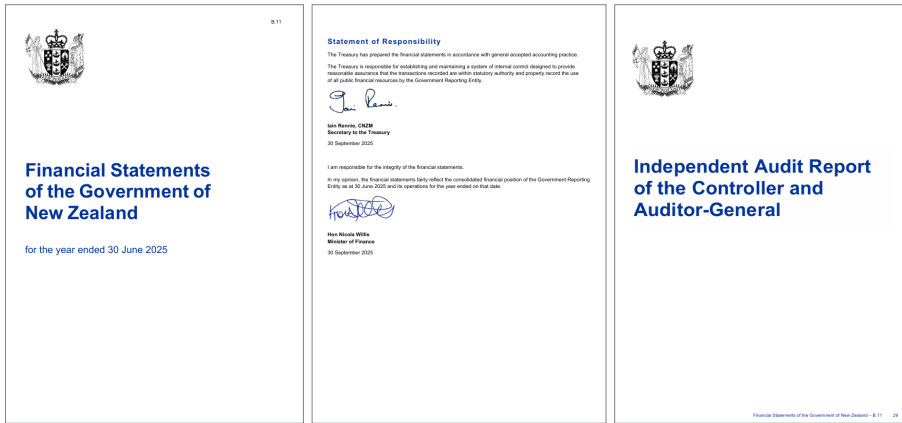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5년 10월에 발간된 뉴질랜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5"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year-end/financial-statements-2025>

가. 결산서의 구성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는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Responsibility),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감사관 등의 독립감사보고서, 뉴질랜드 정부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에는 2024회계연도와 다르게 재무부장관 메시지가 생략되었다.

재무제표는 총 6종으로 재무성과표, 포괄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재정상태표, 부문별 명세서를 제공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0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충설명(미감사)과 추가재무정보(미감사)를 결산보고서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독립감사보고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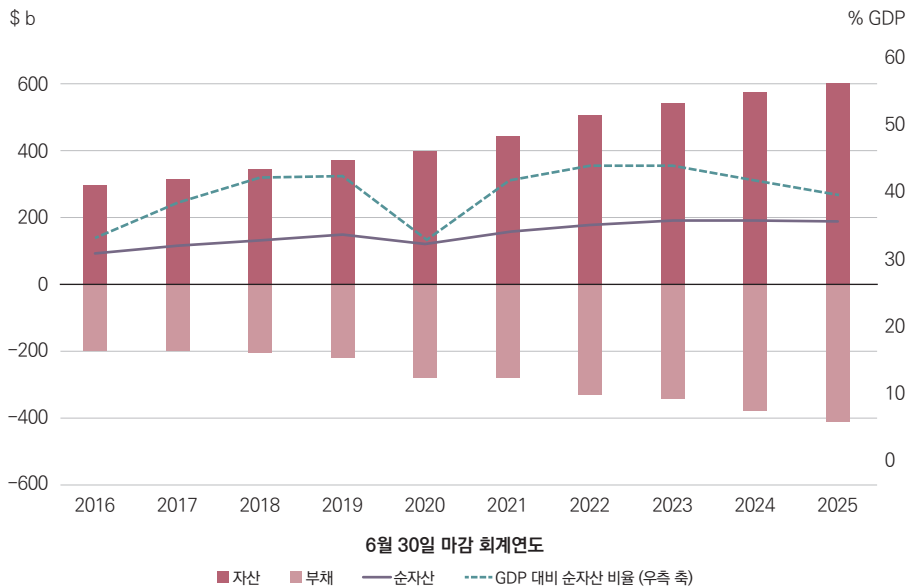
2025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자산은 5,980억뉴질랜드달러이며, 총부채는 4,088억뉴질랜드달러이다. 뉴질랜드 정부의 순자산은 1,89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9억 뉴질랜드달러 감소하여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자산은 전년 대비 271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금융자산과 유형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금융자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 기준 2,735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64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중앙은행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91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이는 작년에는 보유자산이 정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자산 증가로 반영되지 않은 반면, 올해는 중앙은행이 정부 보고실체 외부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 기준 2,926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88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150억뉴질랜드달러의 유형자산 추가와 31억뉴질랜드달러의 순재평가에 따른 것이며, 83억뉴질랜드달러의 감가상각이 이를 일부 상쇄하였다.

부채는 전년 대비 290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차입금과 보험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차입금의 경우 2025회계연도 기준 2,72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211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주로 국채 잔액이 전년 대비 263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유동성 요구를 관리하기 위한 유럽 기업어음(ECP)과 재무부 단기증권은 각각 전년 대비 32억 및 6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다. 결제예금도 전년 대비 55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다. 보험부채는 703억 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38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계리손익의 증가로 인한 ACC의 미지급보험금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그림 1 자산·부채 및 순자산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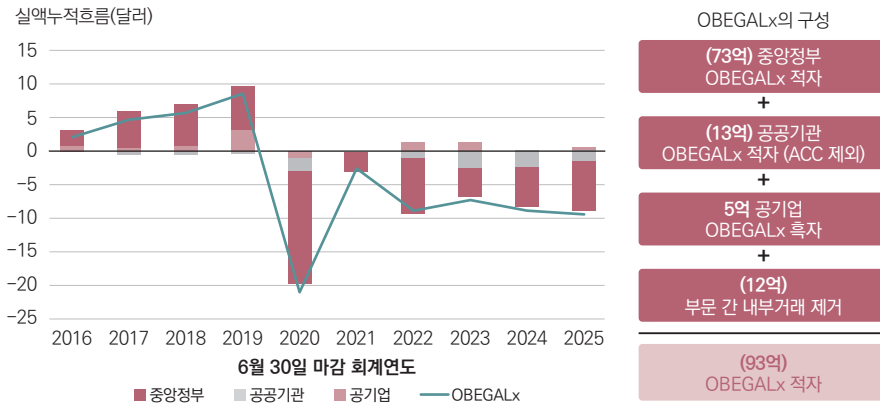
2) 수익 및 비용

2025회계연도의 OBEGALx(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excluding ACC)¹⁵⁾는 93억뉴질랜드달러 적자로, 전년(88억뉴질랜드달러 적자) 대비 5억뉴질랜드달러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부문은 OBEGALx 적자에 73억뉴질랜드달러를 기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억뉴질랜드달러 악화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 지출 증가가 중앙정부 세수 증가를 초과한 데 기인한다. 공공기관

15) OBEGALx는 중앙정부 OBEGAL, ACC를 제외한 공공기관 OBEGAL, 공기업 OBEGAL을 합산한 후,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한 사고보상공사(ACC) 제외 차손익반영전운영수지이다.

은 13억뉴질랜드달러 적자로 전년(20억뉴질랜드달러 적자)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는 뉴질랜드 교통청의 보조금·보조금 관련 지출이 약 3억뉴질랜드달러 감소한 영향이 컸다(복합 기상 재해 관련 사업 집행이 2025/26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사고보상공사(ACC)를 제외한 차손익반영전운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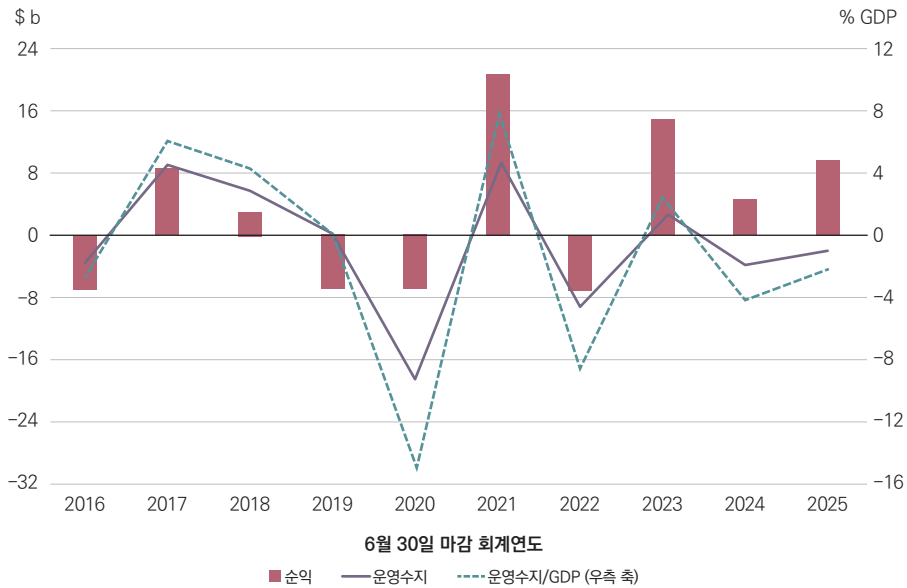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5」, 2025.

2025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총수익은 1,698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의 약 절반은 국세수익 증가에서 발생하였다. 국세수익은 1,211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12억뉴질랜드달러(1.0%)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익의 증가는 대부분 세목에서 경제활동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정책 변화와 전년도 원천징수세 일회성 증가 요인이 2024/25년에는 지속되지 않은 점이 일부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도 전년 대비 10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기업(SOE) 부문, 특히 전력 섹터의 수익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25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 총비용은 1,835억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34억뉴질랜드달러 증가하였다. 증가분은 주로 중앙정부 부문에서 발생(27억뉴질랜드달러)하였고, 공공기관(17억뉴질랜드달러)에서 증가한 반면 공기업(SOE)은 3억 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다(내부거래 제거 포함). 지출의 증가는 주로 인건비 증가와 물가 연동 조정으로 인한 주요 복지급여 유형의 지급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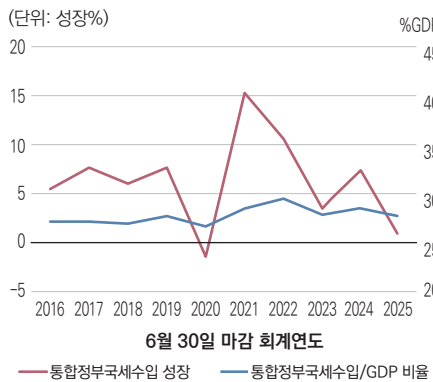
그림 3 운영수지(비지배지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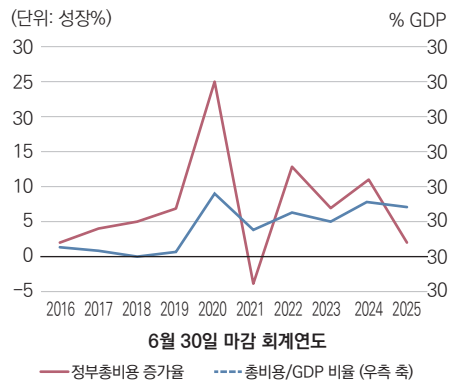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5」, 2025.

그림 4 총 국세수입 및 총비용 증가율

총 국세수입 증가율 및 GDP 대비 총 국세수입 비율



총비용 증가율 및 GDP 대비 총비용 비율



출처: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5」, 2025.

다. 파리협정과 뉴질랜드의 NDC 이행 및 회계처리

파리협정이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C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내 조치와 추가적인 국제 협력을 조합해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 목표로서 국가별 자발적 기여(NDC)를 설정해야 한다.

2025년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는 「공공재정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른 부채 인식 요건을 기준으로 NDC 관련 부채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NDC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파리협정상 NDC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법적 집행 가능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해외 감축 구매에 관한 충분히 구체화된 계획이 부재하여 의제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에 관련 부채를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5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5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01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 (Ⅳ)」을 발간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 (Ⅳ)」은 국가결산 개설, 결산 보고서 작성양식, dBrain+를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2025. 12. 5.(금),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209명의 중앙관서 결산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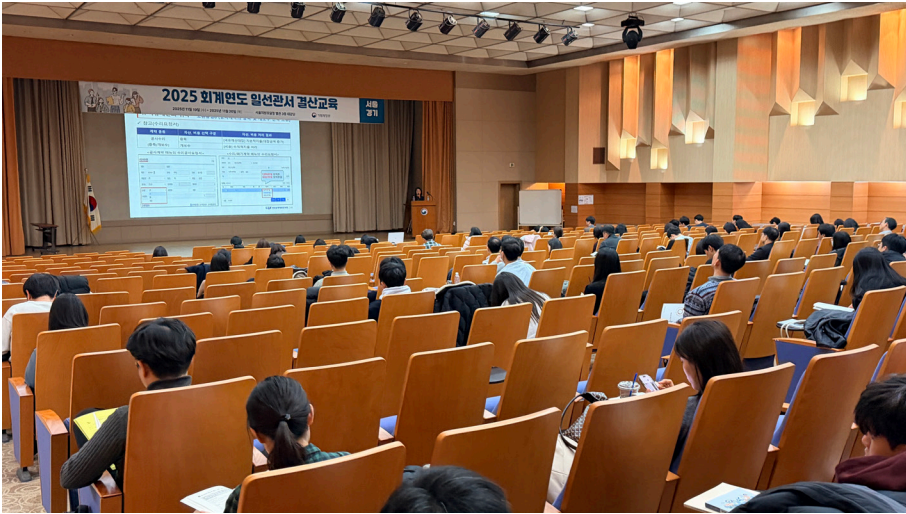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 및 2024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중앙관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였고, 이를 통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1개 도시(제주, 광주, 전북,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세종, 서울)에서 실시되었고, 총 3,157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1차시(2025. 11. 20(목), 서울지방조달청)

03 2025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2025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지난 6월 18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제11차 재무결산실무 교육(2025. 10.16.(목),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주피터홀)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의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을 국가회계 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직접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의 이해,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5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가회계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849명(전년도 996명)의 교육

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전년 대비 교육생 수는 감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69), 강사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70), 교육 환경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69점(전년도 4.76)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족도와 강사 만족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교육 환경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2026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6년 5월 중순부터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2025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포레스트리솜에서 '2025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에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이 결산 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한국재정정보원 김진호 차장이 dBrain+의 2025회계연도 결산 절차 및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윤성호 팀장이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1일차 교류활동을 통해서 각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기반이 구축되어 실질적인 업무 역량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2일차 특강에서는 청렴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행충돌방지법」 관련 주요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2025. 11. 28.(금), 포레스트리솜)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일곱 번째 해로, 충실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지원 등으로 매우 높은 행사 만족도(4.95/5.0만점)를 달성하였다.



재정통계 동향



-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OECD 사회보장기금 분석

01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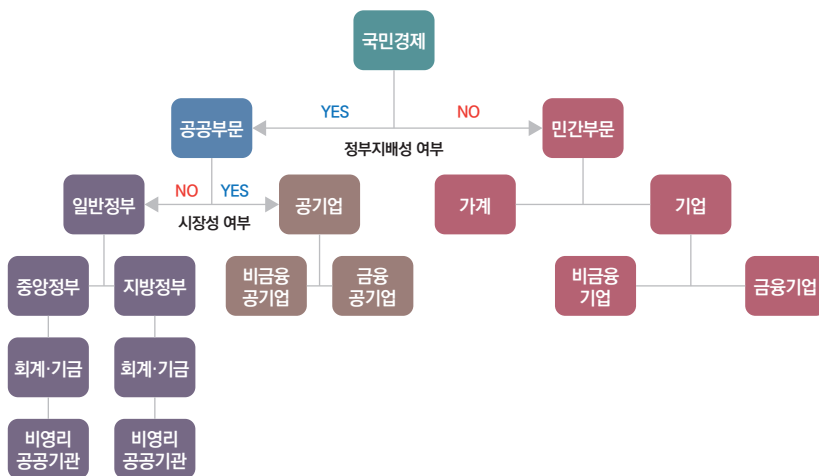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11일(목)에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분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 매비율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알기 쉬운 재정통계』, 2025, p. 33, [그림 2-3].

2024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등을 포함하여 총 516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57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59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2024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6조원(GDP 대비 68.0%)으로 전년(1,673.3조원) 대비 65.3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로는 1.5%p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5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로는 0.8%p 감소하였다. 또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2.1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로는 0.4%p 감소하였으며, 두 부문 간의 내부거래는 10.2조원(GDP 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1 공공부문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673.3	69.5	1,738.6	68.0	65.3	△1.5
• 일반정부(①)	1,217.3	50.5	1,270.8	49.7	53.5	△0.8
• 비금융공기업(②)	545.4	22.6	567.5	22.2	22.1	△0.4
- 중앙 비금융공기업	504.0	20.9	518.4	20.3	14.4	△0.7
- 지방 비금융공기업	54.6	2.3	59.0	2.3	4.4	0.0
- 내부거래	△13.2	△0.5	△9.9	△0.4	3.3	0.2
• 내부거래(③)	△89.5	△3.7	△99.6	△3.9	△10.2	△0.2

주: 이하 모든 표의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 12. 11.(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이하 재정통계 동향 모든 표 동일)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가 52.1조원 증가하였고 지방정부 부채는 3.9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2.5조원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53.5조원 증가한 1,270.8조원(GDP 대비 49.7%)이고 GDP 대비로는 0.8%p 감소하였다.

표 2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1,217.3	50.5	1,270.8	49.7	53.5	△0.8
• 중앙정부(①)	1,167.6	48.5	1,219.7	47.7	52.1	△0.8
- 회계·기금	1,128.3	46.8	1,182.9	46.3	54.6	△0.6
- 비영리공공기관	59.0	2.5	62.0	2.4	2.9	△0.0

표 2 의 계속

구 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내부거래	△19.7	△0.8	△25.1	△1.0	△5.4	△0.2
• 지방정부(②)	70.7	2.9	74.6	2.9	3.9	△0.0
- 지방회계·기금	67.5	2.8	70.9	2.8	3.4	△0.0
· 지방자치단체	64.1	2.7	67.3	2.7	3.2	△0.0
· 교육자치단체	3.4	0.1	3.5	0.1	0.1	△0.0
- 지방비영리공공기관	4.3	0.2	4.5	0.2	0.3	0.0
- 내부거래	△1.0	△0.0	△0.8	△0.0	0.2	0.0
• 내부거래(③)	△21.0	△0.9	△23.5	△0.9	△2.5	△0.0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 12. 11.을 참고하여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가) 중앙정부 부채

2024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1,167.6조원(GDP 대비 48.5%) 대비 52.1조원이 증가한 1,219.7조원(GDP 대비 47.7%)으로 산출되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중앙 회계·기금,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52.1조원 증가한 것은 주로 중앙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1) 중앙 회계·기금

2024회계연도의 중앙 회계·기금은 전년 1,128.3조원(GDP 대비 46.8%) 대비 54.6조원이 증가한 1,182.9조원(GDP 대비 46.3%)으로 산출되었으며, 채무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중앙 회계·기금 채무상품 유형별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2024년 부채 구성 내용
합계	1,128.3	1,182.9	54.6	
▪ 채무증권	965.1	1,013.6	48.5	국채(1,127.5), 공채(24.4), 연기금 등 보유 국·공채(△138.3)
▪ 차입금	108.5	110.9	2.3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97.5), 민자사업 부채(9.7) 등
▪ 기타 미지급	54.7	58.4	3.7	미지급비용(22.1), 미지급금(7.6) 등

(채무증권) 채무증권이 48.5조원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국고채 52.4조원 증가, 외평채 1.3조원 증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채 1.2조원 증가, 자기 국·공채 3.9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표 4 중앙 회계·기금 채무증권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합계(=①+②+③)	965.1	1,013.6	48.5
◆ 국채(①)	1,076.3	1,127.5	51.2
▪ 국고채	983.3	1,035.7	52.4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4	12.7	1.3
▪ 국민주택채권	81.6	79.1	△2.5
◆ 공채(②)	23.1	24.4	1.2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3.1	24.4	1.2
◆ 자기 국·공채(③)	△134.4	△138.3	△3.9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4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4.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2.2조원 증가, 민자사업(BTL) 부채 0.2조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차입금이 전년 대비 2.3조원 증가하였다.

(2)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2024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9.0조원(GDP 대비 2.5%) 대비

2.9조원이 증가한 62.0조원(GDP 대비 2.4%)으로 산출되었다. 2.9조원 증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 등 증가(2.2조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장기차입금 및 사채 발행 등 증가(1.2조원),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 발행채권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1.4조원)에 기인한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24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70.7조원(GDP 대비 2.9%) 대비 3.9조원이 증가한 74.6조원(GDP 대비 2.9%)으로 산출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 회계·기금,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둘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3.9조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 회계·기금 3.4조원 증가,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0.3조원 증가와 내부거래 0.2조원 감소에 기인한다.

표 5 지방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70.7	2.9	74.6	2.9	3.9	△0.0
▪ 회계·기금	67.5	2.8	70.9	2.8	3.4	△0.0
- 지방자치단체	64.1	2.7	67.3	2.7	3.2	△0.0
- 교육자치단체	3.4	0.1	3.5	0.1	0.1	△0.0
▪ 비영리공공기관	4.3	0.2	4.5	0.2	0.3	0.0
▪ 내부거래	△1.0	△0.0	△0.8	△0.0	0.2	0.0

(1) 지방 회계·기금

2024회계연도의 지방 회계·기금은 전년 67.5조원(GDP 대비 2.8%) 대비 3.4조원이 증가한 70.9조원(GDP 대비 2.8%)으로 산출되었다. 지방 회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회계·기금의 부채가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3.2조원 증가 및 교육자치단체 0.1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전년 64.1조원 대비 3.2조원 증가한 67.3조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등의 확대로 증가하였고, 자치단체별 증가액이 큰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1.7조원), 부산(0.5조원), 서울(0.4조원), 충남(0.3조원), 전북(0.2조원) 등이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3.4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한 3.5조원으로, 민자사업(BTL) 등 부채가 0.1조원 감소하였으나 장기미지급금 및 기타미지급비용이 0.1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2)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4.3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한 4.5조원으로, 부산교통공사(0.2조원), 부천도시공사(0.1조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545.4조원(GDP 대비 22.6%) 대비 22.1조원 증가한 567.5조원(GDP 대비 22.2%)으로 집계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전년 대비 22.1조원 증가한 것은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14.4조원 증가,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4.4조원 증가, 공기업 간 내부거래가 3.3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14.4조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7조원 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외화차입금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4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원 증가하였고,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사채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감소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공사채 및 차입금 증가 등으로 4.4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이 큰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2.3조원), 경기주택도시공사(1.4조원) 등이다.

라. 부채 유형별(D1, D2, D3) 추세 분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 유형별 증감(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증가 규모가 2021년에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지만, 2022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국제연료가 상승의 영향으로 한전·발전자회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기업의 부채 증가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D1, D2, D3 모두 1%p 내외로 증가하여 과거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2024년의 경우 D1, D2, D3 모두 전년 대비 GDP 대비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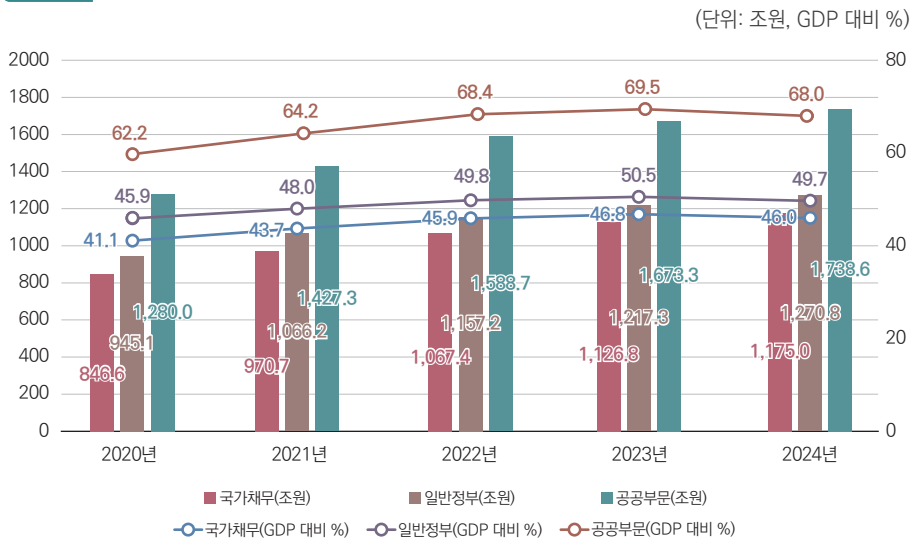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2021년) 2.6%p → (2022년) 2.2%p → (2023년) 0.9%p → (2024년) △0.8%p

일반정부부채(D2): (2021년) 2.1%p → (2022년) 1.8%p → (2023년) 0.7%p → (2024년) △0.8%p

공공부문부채(D3): (2021년) 2.1%p → (2022년) 4.1%p → (2023년) 1.1%p → (2024년) △1.5%p

그림 2 부채 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 12. 1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년 11월호, 2025. 11.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02 OECD 사회보장기금 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5년 가을호에 이어 IMF 데이터 포털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금 재무현황을 분석하였다.¹⁾

가. 사회보장기금 재정상태표 공시 현황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상태표는 202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8개) 중 총 25개국이 공시하였다.

표 1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재정상태표 공시 현황

(단위: 국가 수)

사회보장기금	공시	비공시	합계
재정상태표	25	13	38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나. OECD 회원국별 사회보장기금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현황

2023년도 OECD 25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기금의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및 순금융자산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비금융자산	금융자산(A)	부채(B)	순금융자산(A-B)
오스트리아		3.4	2.1	1.2
캐나다		30.9	5.9	25.0
콜롬비아	0.1	1.8	0.2	1.6
덴마크		0.1	0.1	0.1

1) IMF Data Portal(<https://www.imf.org/en/Data>)에서 2025년 12월 2일 조회

표 2 의 계속

국가명	비금융자산	금융자산(A)	부채(B)	순금융자산(A-B)
에스토니아		3.8	0.7	3.1
핀란드		94.7	2.8	91.9
프랑스		13.9	12.8	1.1
독일		4.5	1.4	3.1
그리스		16.5	1.1	15.4
아이슬란드		1.7	0.4	1.3
이탈리아		6.6	1.1	5.5
일본		63.7	2.9	60.8
라트비아		6.2	1.2	4.9
리투아니아		6.7	0.8	5.9
룩셈부르크		39.2	2.7	36.5
멕시코	0.6	2.0	0.8	1.2
네덜란드		5.5	2.2	3.3
폴란드		4.0	6.8	-2.8
포르투갈		15.8	0.1	15.6
슬로바키아		2.6	0.7	1.9
슬로베니아		4.2	2.4	1.8
스페인		3.2	9.1	-5.9
스웨덴		33.4	1.6	31.7
스위스	0.2	6.6	0.1	6.5
튀르키예	0.2	1.7	0.1	1.6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사회보장기금의 비금융자산은 총 4개국(콜롬비아, 멕시코, 스위스, 튀르키예)에서 공시하였으며, 모두 1% 미만의 작은 수치를 보였다. 금융자산은 핀란드(94.7%), 일본(63.7%), 룩셈부르크(39.2%)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프랑스(12.8%), 스페인(9.1%), 폴란드(6.8%)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은 핀란드(91.9%), 일본(60.8%), 룩셈부르크(36.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폴란드와 스페인의 경우 금융자산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큼에 따라 부(-)의 순금융자산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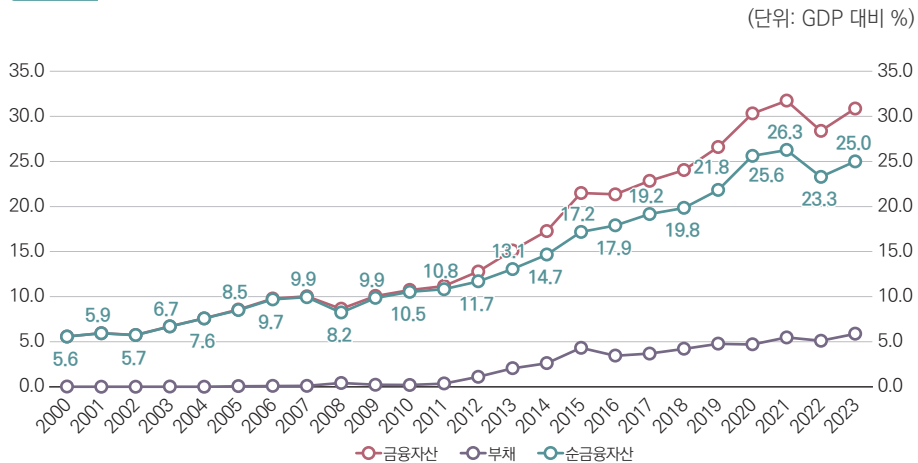
다.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기금 재무 추이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일본, 스페인을 대상으로 2000~2023년 사회보장기금 금융자산, 부채, 순금융자산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캐나다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금융자산의 증가폭이 매우 큰 편이다.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처음으로 20%를 초과한 후 2023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캐나다의 재무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캐나다의 금융자산은 주식이 가장 큰 비중(2023년 63%)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6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채무증권으로 2023년 기준으로 22%를 기록하였고, 매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용자와 기타미수금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채무증권(36%), 용자(36%), 기타미지급계정(29%)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연도별 구성요소의 변동폭이 큰 편이다.

그림 2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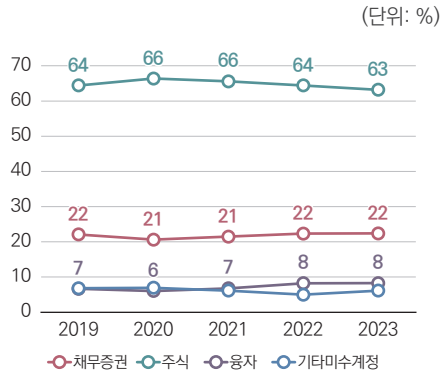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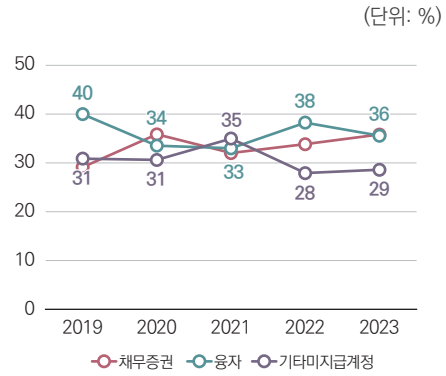


그림 3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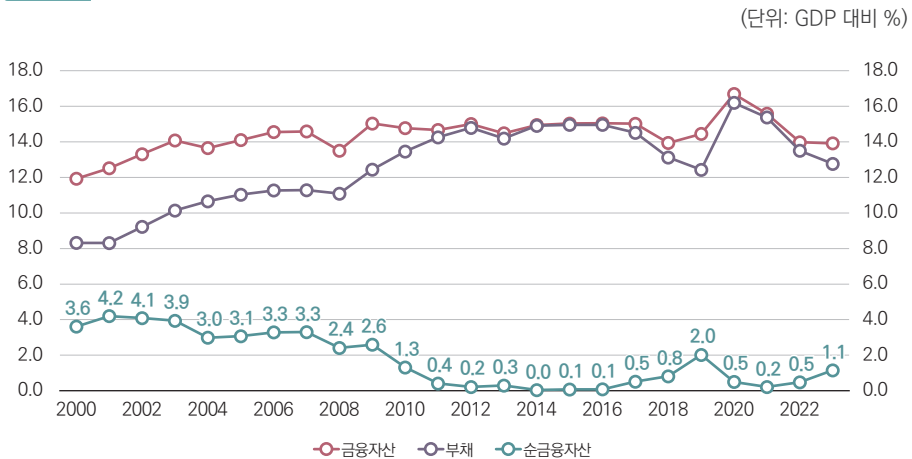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12.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2) 프랑스

프랑스의 금융자산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부채의 경우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0년 3.6%에서 2023년 1.1%로 2.5%p 감소하였다.

그림 4 프랑스의 재무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프랑스의 금융자산은 기타미수계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38%),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4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주식으로 2023년 기준으로 38%를 기록하였고, 매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채무증권과 현금및예금이 2023년 기준으로 모두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채무증권(63%), 기타미지급계정(28%), 용자(9%)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채무증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타미지급계정과 용자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5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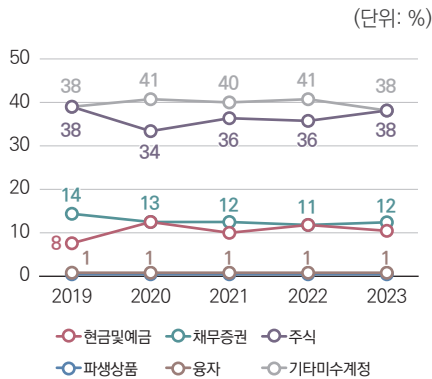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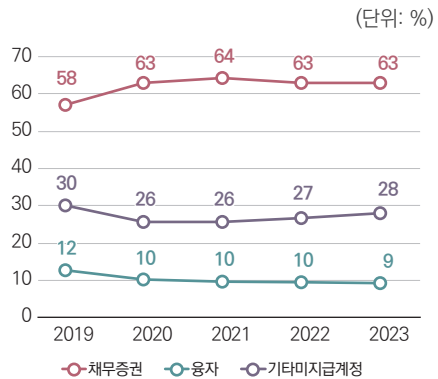


그림 6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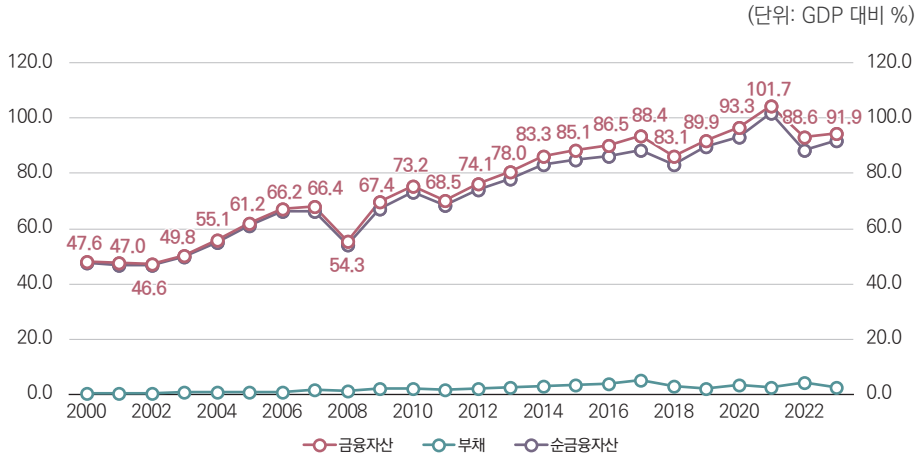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3) 핀란드

핀란드의 금융자산은 매우 큰 증가(2000년 48.2% → 2023년 94.7%, 46.5%p ↑)를 보인 반면, 부채는 소폭 증가(2000년 0.6% → 2023년 2.8%, 2.2%p ↑)에 그침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크게 증가(2000년 47.6% → 2023년 91.9%, 44.3%p ↑)하였고, 이는 공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7 핀란드의 재무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핀란드의 금융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주식(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증권(12%), 현금및예금(4%), 기타미수계정(3%), 용자(2%), 파생상품(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기타미지급계정(39%), 용자(28%), 파생상품(25%), 채무증권(8%)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구성요소의 변동폭이 큰 편이다.

그림 8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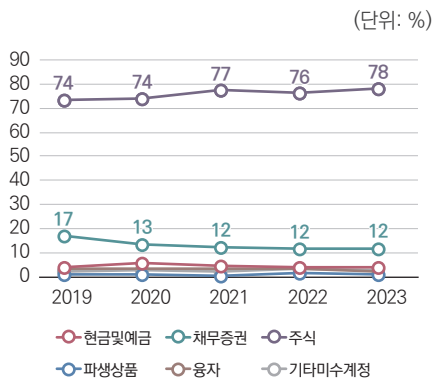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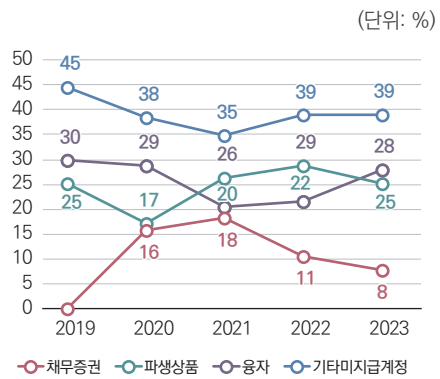


그림 9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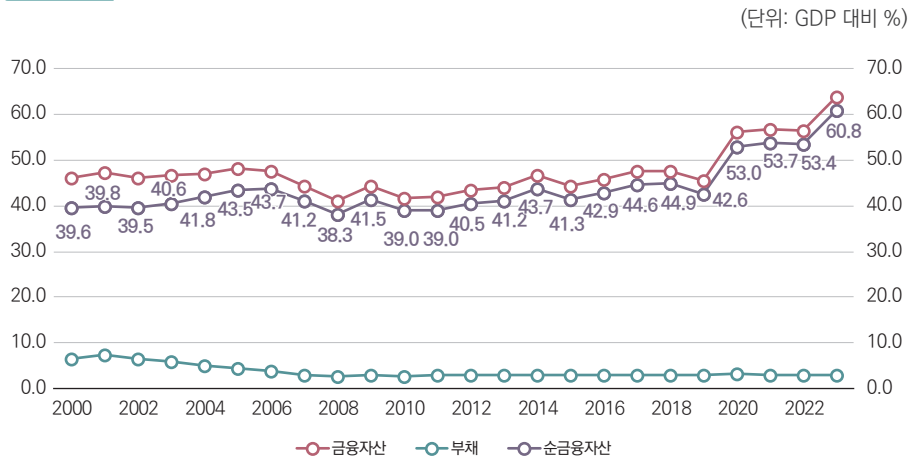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4) 일본

일본의 금융자산은 증가(2000년 46.2% → 2023년 63.7%, 17.5%p ↑) 추세를 보인 반면, 부채는 감소(2000년 6.6% → 2023년 2.9%, 3.7%p ↓) 추세임에 따라 순금융 자산은 점차 확대(2000년 39.6% → 2023년 60.8%, 21.2%p ↑)되어 공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10 일본의 재무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일본의 금융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기타미수계정이 가장 큰 비중(47%)을 차지하였고, 최근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21%)과 채무증권(21%)의 경우 매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및예금(11%)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일본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기타미지급계정(60%), 현금및예금(31%), 용자(10%)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국가 중 기타미지급계정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림 11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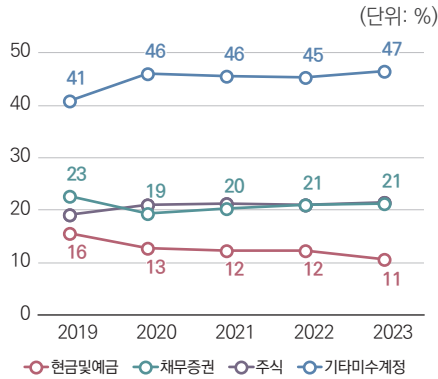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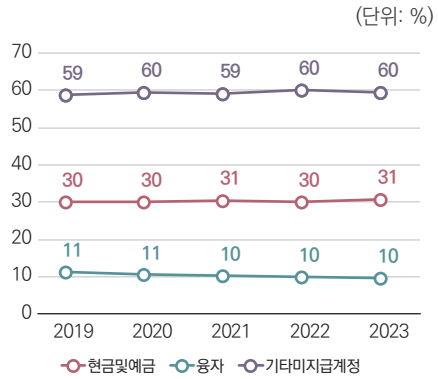


그림 12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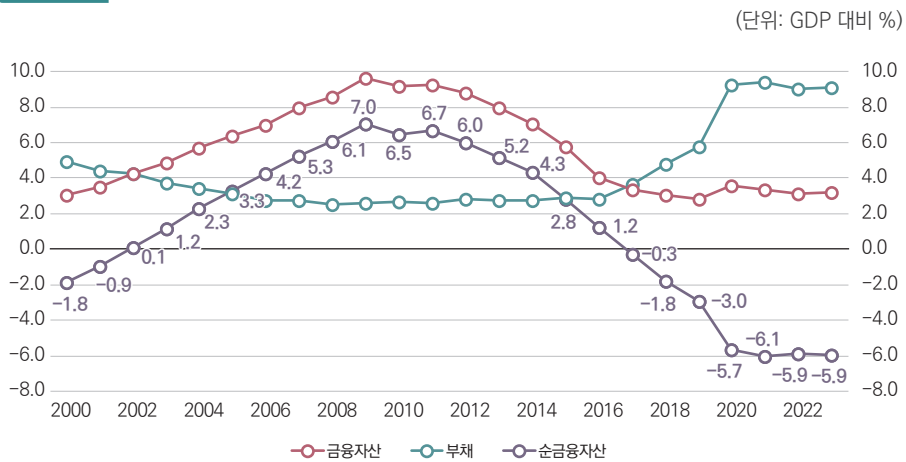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5) 스페인

스페인의 금융자산은 2009년(9.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3.2%를 기록하였다. 반면 부채는 2016년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9.1%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5.9%를 기록하였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13 스페인의 재무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스페인의 금융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현금및예금(5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미수계정(41%), 채무증권(7%)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용자(85%), 기타미지급계정(15%)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 국가 중 용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림 14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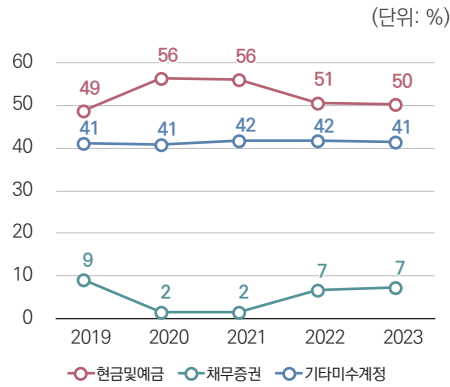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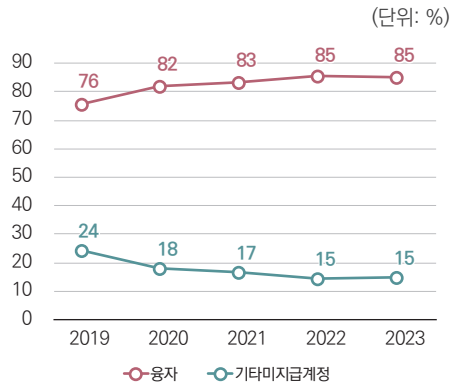


그림 15 부채 구성



출처: IMF Data Portal, 2025. 12.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 202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 학술장학·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 해외 공익법인 사업유형 분류 현황

01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총 4차) 결과 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을 위탁받아 2022년부터 매년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2024년 교육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심화교육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회계 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특수한 지분투자'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2025년부터 XBRL 기반 공공기관결산시스템(PIFRS)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실무교육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XBRL 및 PIFRS의 이해' 교육은 공공기관 결산담당자의 XBRL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와 기타공공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3회(서울 글로벌센터), 대전 1회(대전컨벤션센터) 총 4회(9~11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여 총 303명이 참여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대상기관인 26개의 공기업, 45개의 준정부기관에서 교육을 신청하였다. 또한 29개의 기타공공기관 및 5개의 공공기관 외 기관(농림축산식품부, 평택도시공사 등)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1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일정

(단위: 명)

차시	장소	일정		참석인원
		신청기간	교육기간	
1차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2025.8.18. ~ 2025.9.9.	2025.9.10. ~ 2025.9.12.	56
2차	서울 (글로벌센터)	2025.8.18. ~ 2025.9.16.	2025.9.17. ~ 2025.9.19.	91
3차	서울 (글로벌센터)	2025.8.18. ~ 2025.10.21.	2025.10.22. ~ 2025.10.24.	76
4차	서울 (글로벌센터)	2025.8.18. ~ 2025.11.4.	2025.11.5. ~ 2025.11.7.	80

교육과정은 K-IRFS 계정과목 해설 중심의 기초내용 교육, 정부보조금, 종업원급여, 연결재제표 및 법인세회계 등 이슈별 심화교육, 현금흐름표, XBRL 및 PIFRS의 이해 등 실무 교육으로 구성하여 사흘간 21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표 2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7.0H)	K-IRFS 계정과목해설 - 금융자산	09:00~10:30	-금융자산 표시, 측정, 회계처리
	K-IRFS 계정과목해설 - 부채&자본	10:30~12:00	-채권발행 및 이자비용 인식, 상환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회계처리 -자본의 세부 항목별 인식 및 측정
	K-IRFS 계정과목해설 - 수익	13:00~14:00	-수익인식모형 -수익인식 회계처리
	정부보조금	14:00~15:30	-정부지원 회계처리 -주요 오류사례 및 FAQ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15:30~17:00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2일차 (7.0H)	K-IRFS 계정과목해설 - 유무형자산 및 리스	09:00~12:00	-유무형자산 측정, 감가상각, 손상 -리스 회계처리 및 주요 오류사례
	종업원급여	13:00~14:00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주요 오류 사례
	연결재무제표	14:00~15:30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지분법 회계처리와의 차이 -연결 절차 실습 및 사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법인세회계	15:30~17:00	-법인세 회계개요 -법인세주석 작성 과정 실습 -법인세 관련 기관의 주요 이슈 사례 제시
3일차 (7.0H)	현금흐름표(작성실무)	09:00~12:00	-현금의 범위 및 현금흐름 구분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사례)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기관 작성 과정 오류 -주석공시의 비현금거래
	XBRL 및 PIFRS의 이해	13:00~15:30	-XBRL 도입배경 및 기본 개념 이해 -Taxonomy의 체계 및 특징 -PIFRS 작성기를 통한 결산서 작성실무
	결산서 작성방법(실무)	15:30~17:00	-회계처리, 결산, 주석 작성 유의사항

설문조사 결과 교육이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설명이 유익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반면 실무 및 사례 위주의 교육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25년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만족도

(단위: 점)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교육과정	4.44	4.56	4.46	4.48
교육환경	4.37	4.55	4.5	4.45
응답률	96.43%	94.51%	89.47%	95%

주: 5점 척도, 참여자(306명) 중 1차(54명), 2차(86명), 3차(68명), 4차(76명) 응답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회계교육을 통해 결산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차〉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2차〉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3차〉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4차〉

02 202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8일(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5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5개 기관(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4개, 국가회계기준 적용 3개 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회계·결산 실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의 당부와 격려로 시작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와 주요 변경사항,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제2부에서는 PIFRS 홈페이지 및 작성기 사용법 안내가 이뤄졌으며, 특히 2027년 도입 예정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의 주요 변화를 다뤄 향후 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표 1 2025회계연도 회계 및 결산교육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발 표 자
13:30~13:55	교육자 등록 및 입실	
13:55~14:00	인사 말씀	출자관리과장
14:00~15:20 (1h 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변경사항 -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작성 유의사항 	한소영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20~15:30	휴식	
15:30~16:30 (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FRS 홈페이지 사용방법 설명 - PIFRS 작성기 사용방법 설명 - 2025회계연도 주요 변경사항 	서동선 차장 (이지코드), 노지선 수석 (코오롱베니트)
16: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노영일 이사 (삼정회계법인)
17:00~17:30	질의 및 응답	

본 교육의 주요 내용이 수록된 교육 교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포털¹⁾에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2025. 12. 8.(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https://pear.kipf.re.kr/bbs/pedu_Resource_End_Edu.do;jsessionid=70562F7470F2587274DDFEE7ED30AC29

03 학술·장학·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공익법인은 6개의 공익사업유형(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으로 구분되고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내용²⁾을 선택하여 공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이 선택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호 교육·의료분야 재무분석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학술·장학과 기타분야 공익법인의 세부 사업유형별 분석 결과를 게시한다.

1. 학술·장학분야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

가.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현황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이 선택(중복선택 가능)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장학’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이 가장 많고, ‘학술연구’를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도 다수 있다.

표 1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내용 선택 현황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장학	1,820	1,855	1,878	1,909	1,991
학술연구	981	1,017	1,059	1,100	1,213
문화예술	162	179	175	174	197
기타사업	99	131	158	180	185
기타교육	130	121	128	150	165
사회복지	117	108	104	113	119

2) 공익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스포츠,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클럽,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 학술연구, 장학, 영유아보육, 병원 및 재활시설 요양원 정신건강 및 위기개입, 기타보건서비스, 사회복지, 긴급상황 및 구호, 소득 지원 및 보존, 환경, 동물, 경제·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주거, 고용 및 훈련, 시민 및 옹호단체, 법률 및 법률서비스, 정치단체, 배분(지원) 재단, 봉사증진, 모금활동, 국제활동,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비즈니스연합, 전문가연합, 노동조합, 기타 로 구성

표 1 의 계속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¹⁾	454	458	467	463	553
합계	3,763	3,869	3,969	4,089	4,423

주: 1. 중복 선택 가능

1) 세부 사업내용 중 '기타' 항목이 아닌 표에 기재된 세부 사업내용이 아닌 나머지 세부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을 지칭

학술·장학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장학'과 '학술연구'를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을 '학술·장학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을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 기준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2,726개 중 학술 및 장학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2,622개이고,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104개다.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주로 '문화예술', '기타사업', '기타교육' 등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표 2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 선택 공익법인 구분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학술·장학	학술연구	478	506	542	557	631
	장학	1,317	1,344	1,361	1,366	1,409
	학술연구 & 장학	503	511	517	543	582
	소계	2,298	2,361	2,420	2,466	2,622
학술·장학 외	105	95	89	92	104	
총계	2,403	2,456	2,509	2,558	2,726	

나.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부채 현황

2023년 학술·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산은 25조 6,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440억원(6.0%) 증가, 2019년 대비 5조 4,691억원(27.2%)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자산은 4,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9억원(242.4%) 감소, 2019년 대비 7,779억원(65.6%) 감소하였다.

학술장학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학)대양학원의 세부 사업 유형 변경효과(2021년부터)로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고 학술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산이 증가하였다.

표 3 학술·장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자산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술연구	44,394	55,823	68,526	65,596	70,327	4,731	7.2	25,933	58.4	
학 술 장 학	장학	76,987	83,022	83,295	88,621	94,640	6,019	6.8	17,653	22.9
학술연구 & 장학	80,023	83,861	83,623	87,437	91,128	3,690	4.2	11,104	13.9	
소계	201,404	222,706	235,444	241,655	256,095	14,440	6.0	54,691	27.2	
학술장학 외	11,865	11,420	5,846	5,405	4,086	△1,319	△24.4	△7,779	△65.6	
총계	213,269	234,126	241,290	247,059	260,180	13,121	5.3	46,911	22.0	

2023년 학술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부채는 3조 3,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0.1%) 감소, 2019년 대비 7,913억원(31.4%)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부채는 5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5억원(52.5%) 감소, 2019년 대비 1,322억원(72.1%) 감소하였다.

표 4 학술·장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부채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술연구	13,679	15,744	19,524	18,858	19,341	484	2.6	5,662	41.4	
학 술 장 학	장학	3,399	3,116	4,365	5,273	3,805	△1,467	△27.8	406	11.9
학술연구 & 장학	8,130	9,047	8,169	9,009	9,975	965	10.7	1,845	22.7	
소계	25,209	27,908	32,058	33,140	33,122	△18	△0.1	7,913	31.4	
학술장학 외	1,834	1,942	1,166	1,077	512	△565	△52.5	△1,322	△72.1	
총계	27,043	29,849	33,224	34,217	33,634	△583	△1.7	6,591	24.4	

다.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수익·비용 현황

2023년 학술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은 10조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644억원(10.6%) 증가, 2019년 대비 3조 5,415억원(54.6%)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수익은 3,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2억원(19.6%) 감소, 2019년 대비 2,485억원(39.8%) 감소하였다.

표 5 학술·장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수익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술연구	44,902	49,325	60,814	61,890	72,459	10,568	17.1	27,557	61.4	
학 술 장 학	장학	5,412	6,408	6,383	7,900	8,506	606	7.7	3,094	57.2
학술연구 & 장학	14,519	15,150	14,438	20,814	19,283	△1,531	△7.4	4,763	32.8	
소계	64,833	70,883	81,636	90,604	100,248	9,644	10.6	35,415	54.6	
학술장학 외	6,235	5,829	3,642	4,662	3,750	△912	△19.6	△2,485	△39.8	
총계	71,068	76,712	85,278	95,266	103,999	8,732	9.2	32,931	46.3	

2023년 학술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비용은 9조 4,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27억원(13.8%) 증가, 2019년 대비 3조 1,851억원(50.6%)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비용은 3,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억원(15.5%) 감소, 2019년 대비 2,732억원(43.5%) 감소하였다.

표 6 학술·장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비용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술연구	44,204	47,079	57,627	59,788	69,666	9,878	16.5	25,462	57.6	
학 술 장 학	장학	5,463	5,065	5,462	7,117	7,130	13	0.2	1,667	30.5
학술연구 & 장학	13,336	13,319	12,434	16,423	18,059	1,636	10.0	4,723	35.4	
소계	63,004	65,463	75,523	83,328	94,855	11,527	13.8	31,851	50.6	

표 6 의 계속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술장학 외	6,286	5,686	3,414	4,207	3,554	△653	△15.5	△2,732	△43.5
총계	69,290	71,149	78,937	87,535	98,409	10,874	12.4	29,119	42.0

라. 2023년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수익·비용 계정 현황

2023년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근거로 자산·수익·비용의 세부 계정 비중을 분석하였다.

1) 자산 계정과목 현황

세부 사업 구분과 상관없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주식및출자지분은 학술연구 및 장학 또는 장학을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술연구를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자산 주요 계정별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 & 장학	학술장학 외
토지	6,455 (9.2)	9,648 (10.2)	9,358 (10.3)	529 (13.0)
건물	6,921 (9.8)	3,574 (3.8)	6,068 (6.7)	271 (6.6)
주식 및 출자지분	4,739 (6.7)	24,133 (25.5)	27,839 (30.5)	310 (7.6)
금융자산	39,620 (56.3)	54,799 (57.9)	42,689 (46.8)	2,263 (55.4)
기타자산	12,592 (17.9)	2,485 (2.6)	5,174 (5.7)	713 (17.4)

계정과목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 & 장학	학술장학 외
총자산	70,327 (100.0)	94,640 (100.0)	91,128 (100.0)	4,086 (100.0)

2)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학술연구와 학술연구 및 장학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서 보조금수익의 비중이 높았고, 장학만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는 기타수익이 높아 세부 사업 구분에 따른 수익원천이 특징적으로 구분되었다.

표 8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 & 장학	학술장학 외
공익목적사업수익	55,120 (100.0)	4,117 (100.0)	11,661 (100.0)	3,101 (100.0)
기부금	1,717 (3.1)	2,422 (58.8)	1,870 (16.0)	119 (3.9)
보조금	36,632 (66.5)	486 (11.8)	7,494 (64.3)	581 (18.7)
회비	254 (0.5)	24 (0.6)	54 (0.5)	14 (0.5)
기타	16,516 (30.0)	1,184 (28.8)	2,242 (19.2)	2,386 (76.9)

3)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모두 사업수행비용의 비중이 높으나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사업수행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9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 & 장학	학술장학 외
공익목적 사업비용	53,569 (100.0)	4,639 (100.0)	12,470 (100.0)	2,897 (100.0)
사업수행비용	49,899 (93.1)	4,249 (91.6)	11,212 (89.9)	2,792 (96.4)
일반관리비용	3,666 (6.8)	350 (7.5)	1,226 (9.8)	104 (3.6)
모금비용	4 (0.0)	40 (0.9)	31 (0.2)	0 (0.0)

4)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장학만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분배비용의 비중이 6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술연구를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인력비용과 기타비용의 비중이 각각 26.5%, 58.7% 였고, 학술장학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는 기타비용의 비중이 69.5%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10 학술·장학분야 공익법인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학술연구	장학	학술연구 & 장학	학술장학 외
사업비용	68,119 (100.0)	5,272 (100.0)	15,844 (100.0)	3,519 (100.0)
분배비용	6,483 (9.5)	3,456 (65.6)	4,917 (31.0)	245 (7.0)
인력비용	18,082 (26.5)	509 (9.7)	2,717 (17.1)	697 (19.8)
시설비용	3,567 (5.2)	461 (8.7)	1,281 (8.1)	134 (3.8)
기타비용	39,987 (58.7)	846 (16.0)	6,929 (43.7)	2,444 (69.5)

2. 기타분야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

가. 기타분야 공익법인 현황

기타분야 공익법인이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기타’를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이 가장 많으며, ‘기타 교육’, ‘사회복지’, ‘학술장학’ 순으로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표 11 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내용 선택 현황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526	590	711	699	825
기타교육	300	314	332	339	404
사회복지	287	293	313	313	377
학술장학	273	292	300	287	303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233	234	254	243	277
환경	161	172	181	184	240
문화예술	164	163	179	183	227
장학	153	169	189	184	204
그 외 ¹⁾	1366	1407	1585	1566	1869
합계	3,463	3,634	4,044	3,998	4,726

주: 1. 중복 선택 가능

1) 세부 사업내용 중 ‘기타’ 항목이 아닌 표에 기재된 세부 사업내용이 아닌 나머지 세부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을 지칭

기타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 분야(교육, 의료, 학술장학, 문화, 사회복지)에 속하는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과 기존 분야에 속하지 않는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 기준 기타분야 공익법인 1,971개 중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1,189개이고, 기존사업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782개였다. 기존사업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주로 ‘기타’, ‘환경’,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등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표 12 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 선택 공익법인 구분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존 사업	기존사업	380	407	410	436	482
	기존사업&그 외	486	522	601	593	707
	소계	866	929	1,011	1,029	1,189
기존사업 외		658	659	718	691	782
총계		1,524	1,588	1,729	1,720	1,971

나. 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부채 현황

2023년 기존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의 자산은 8조 8,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923억원(33.3%) 감소, 2019년 대비 8,973억원(11.3%)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존사업 외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의 자산은 38조 8,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376억원(13.9%) 증가, 2019년 대비 31조 1,908억원(406.5%) 증가하였다.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선택한 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산림조합중앙회가 2023년부터 공시를 하지 않아 제외된 영향이 크다. 기존사업 외 세부 사업을 선택한 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부터 공시범위를 변경한 영향이 크다.

표 13 기타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자산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기 존 사 업	기존사업	27,624	27,412	34,260	39,132	34,227	△4,906	△12.5	6,603	23.9
	기존사업 &그 외	51,558	93,960	92,525	92,947	53,929	△39,018	△42.0	2,371	4.6
	소계	79,182	121,372	126,785	132,079	88,156	△43,923	△33.3	8,973	11.3
기존사업 외		76,724	259,143	355,377	341,255	388,632	47,376	13.9	311,908	406.5
총계		155,906	380,515	482,162	473,334	476,787	3,453	0.7	320,881	205.8

2023년 기존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의 부채는 1조 6,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884억원(69.2%) 감소, 2019년 대비 1,457억원(7.9%) 감소하였으며, 2023년 기존사업 외 세부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부채는 32조 4,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5,471억원(12.3%) 증가, 2019년 대비 30조 847억원(1,298.0%) 증가하였다.

표 14 기타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부채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기 존 사 업	기존사업	5,434	5,679	8,413	8,120	7,819	△301	△3.7	2,385	43.9
	기존사업 &그 외	12,903	53,555	44,161	46,644	9,061	△37,583	△80.6	△3,842	△29.8
	소계	18,337	59,234	52,573	54,764	16,880	△37,884	△69.2	△1,457	△7.9
기존사업 외	23,177	192,298	243,709	288,553	324,024	35,471	12.3	300,847	1,298.0	
총계	41,514	251,532	296,282	343,317	340,904	△2,413	△0.7	299,390	721.2	

다. 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수익·비용 현황

2023년 기존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의 수익은 6조 5,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8억원(7.4%) 감소, 2019년 대비 9,135억원(16.1%)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존사업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수익은 6조 8,62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66억원(9.2%) 증가, 2019년 대비 3조 1,515억원(84.9%) 증가하였다.

표 15 기타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수익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기 존 사 업	기존사업	28,276	21,780	28,832	34,485	31,092	△3,393	△9.8	2,816	10.0
	기존사업 &그 외	28,440	36,226	36,591	36,595	34,759	△1,835	△5.0	6,320	22.2
	소계	56,716	58,006	65,423	71,079	65,851	△5,228	△7.4	9,135	16.1

표 15 의 계속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기존사업 외	37,114	48,669	70,005	62,863	68,629	5,766	9.2	31,515	84.9
총계	93,830	106,674	135,428	133,942	134,480	538	0.4	40,651	43.3

2023년 기존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비용은 6조 3,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0억원(3.8%) 감소, 2019년 대비 8,051억원(14.6%) 증가하였으며, 2023년 기존사업 외 세부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비용은 6조 7,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3.3%) 감소, 2019년 대비 3조 3,596억원(98.1%) 증가하였다.

표 16 기타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비용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증감	%	증감	%	
기 존 사 업	기존사업	27,341	20,815	27,755	31,873	29,801	△2,073	△6.5	2,460	9.0
	기존사업 & 그 외	27,911	34,029	32,025	33,930	33,502	△427	△1.3	5,591	20.0
	소계	55,252	54,844	59,780	65,803	63,303	△2,500	△3.8	8,051	14.6
기존사업 외	34,245	43,416	56,677	70,153	67,840	△2,313	△3.3	33,596	98.1	
총계	89,497	98,260	116,457	135,956	131,144	△4,813	△3.5	41,647	46.5	

라. 2023년 기타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수익·비용 계정 현황

2023년 기타분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근거로 자산·수익·비용의 세부 계정 비중을 분석하였다.

1) 자산 계정과목 현황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은 금융자산과 토지를 포함한 주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기존사업에 속하지 않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

는 공익법인은 특히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유형 자산 비중이 매우 낮았다.

표 17 기타분야 공익법인 자산 주요 계정별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기존사업		기존사업 외	
토지	15,732	(17.8)	10,974	(2.8)
건물	12,066	(13.7)	8,060	(2.1)
주식 및 출자지분	4,730	(5.4)	6,891	(1.8)
금융자산	42,558	(48.3)	275,588	(70.9)
기타자산	13,069	(14.8)	87,117	(22.4)
총자산	88,156	(100.0)	388,632	(100.0)

2)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익 중 50.3%가 보조금이며, 기존사업 외 세부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기타수익(38.8%), 보조금(35.5%) 순으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18 기타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기존사업		기존사업 외	
공익목적사업수익	51,978	(100.0)	54,574	(100.0)
기부금	13,025	(25.1)	11,943	(21.9)
보조금	26,136	(50.3)	19,360	(35.5)
회비	626	(1.2)	2,095	(3.8)
기타	12,191	(23.5)	21,176	(38.8)

3)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과 기존사업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 모두 사업수행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19 기타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기존사업		기존사업 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공익목적사업비용	50,376	(100.0)	54,763	(100.0)
사업수행비용	42,964	(85.3)	50,433	(92.1)
일반관리비용	6,496	(12.9)	4,053	(7.4)
모금비용	916	(1.8)	277	(0.5)

4)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기존사업에 속하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과 기존사업에 속하지 않는 세부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모두 기타비용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20 기타분야 공익법인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기존사업		기존사업 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업비용	60,103	(100.0)	65,607	(100.0)
분배비용	14,827	(24.7)	17,030	(26.0)
인력비용	16,793	(27.9)	12,517	(19.1)
시설비용	2,979	(5.0)	2,447	(3.7)
기타비용	25,505	(42.4)	33,614	(51.2)

04 해외 공익법인 사업유형 분류 현황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시양식에 따라 6개의 공익사업유형(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으로 구분되고,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내용³⁾을 선택(33개 중 선택)하여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의 사업유형을 분류하는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분류체계 현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면세조직 관리를 위해 NTEE(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시스템을 사용하며, UN은 비영리조직의 데이터 비교를 위해 ICNP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1. NTEE(National Taxonomy of Exempt Entities)

NTEE는 국립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에서 비영리단체를 단체의 사명과 사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분류체계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면세단체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한다.

NTEE는 26개의 주요 그룹과 주요 그룹 하위의 64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A01'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어 첫 번째 알파벳이 주요 그룹을 의미하고 뒤의 숫자가 하위 세부 항목을 나타낸다. 26개 주요 그룹은 A부터 Z까지 알파벳으로 구성되고 하위 세부항목은 숫자와 알파벳 또는 숫자만으로 구성된다.

3) 공익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스포츠,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클럽,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 학술연구, 장학, 영유아 보육, 병원 및 재활시설 요양원 정신건강 및 위기 개입, 기타보건서비스, 사회복지, 긴급상황 및 구호, 소득 지원 및 보존, 환경, 동물, 경제·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주거, 고용 및 훈련, 시민 및 옹호단체, 법률 및 법률서비스, 정치단체, 배분(지원) 재단, 봉사 증진, 모금활동, 국제활동,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비즈니스연합, 전문가연합, 노동조합, 기타로 구성

표 1 NTEE 주요 그룹

주요 그룹 코드	설명
A	예술, 문화 및 인문학(Arts, Culture & Humanities)
B	교육(Education)
C	환경(Environment)
D	동물 관련(Animal-Related)
E	건강 관리(Health Care)
F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Mental Health & Crisis Intervention)
G	자발적 건강 협회 및 의료 분야(Voluntary Health Associations & Medical Disciplines)
H	의학 연구(Medical Research)
I	범죄 및 법률 관련(Crime & Legal-Related)
J	고용(Employment)
K	식품, 농업 및 영양(Food, Agriculture & Nutrition)
L	주택 및 보호소(Housing & Shelter)
M	공공 안전, 재난 대비 및 구호(Public Safety,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N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Recreation & Sports)
O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P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s)
Q	국제, 외교 및 국가 안보(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R	시민권, 사회 활동 및 옹호(Civil Rights, Social Action & Advocacy)
S	지역사회 개선 및 역량 강화(Community Improvement & Capacity Building)
T	자선, 자원봉사 및 보조금 지원 재단(Philanthropy, Voluntarism & Grantmaking Foundations)
U	과학 및 기술(Science & Technology)
V	사회 과학(Social Science)
W	공공 및 사회적 이익(Public & Societal Benefit)
X	종교 관련(Religion-Related)
Y	상호 및 회원 혜택(Mutual & Membership Benefit)
Z	기타(Unknown)

출처: IRS의 Form 1023, Form 1024(면세 인정 신청 양식)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국의 NTEE 분류체계와 우리나라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대부분 매칭되었으나 일부의 경우 매칭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의 NTEE에서는 의학 연구, 과학 및 기술, 사회 과학으로 구분되는 반면, 한국의 국세청 공시에서는 학술연구로 통합 관리되는 차이도 있다.

표 2 NTEE 주요 그룹과 국세청 공시 세부 사업 비교

NTEE 주요 그룹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예술, 문화 및 인문학(Arts, Culture & Humanities)	문화예술
교육(Education)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 장학, 영유아보육
환경(Environment)	환경
동물 관련(Animal-Related)	동물
건강 관리(Health Care)	병원 및 재활시설, 요양원, 기타보건서비스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Mental Health & Crisis Intervention)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자발적 건강 협회 및 의료 분야 (Voluntary Health Associations & Medical Disciplines)	
의학 연구(Medical Research)	학술연구
범죄 및 법률 관련(Crime & Legal-Related)	법률 및 법률서비스
고용(Employment)	고용 및 훈련, 노동조합
식품, 농업 및 영양(Food, Agriculture & Nutrition)	
주택 및 보호소(Housing & Shelter)	주거
공공 안전, 재난 대비 및 구호 (Public Safety, Disaster Preparedness & Relief)	긴급상황 및 구호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Recreation & Sports)	스포츠,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s)	사회복지, 소득 지원 및 보존
국제, 외교 및 국가 안보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국제활동

표 2 의 계속

NTEE 주요 그룹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시민권, 사회 활동 및 옹호 (Civil Rights, Social Action & Advocacy)	시민 및 옹호단체
지역사회 개선 및 역량 강화 (Community Improvement & Capacity Building)	경제·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자선, 자원봉사 및 보조금 지원 재단 (Philanthropy, Voluntarism & Grantmaking Foundations)	배분(지원) 재단, 봉사증진, 모금활동
과학 및 기술(Science & Technology)	학술연구
사회 과학(Social Science)	학술연구
공공 및 사회적 이익(Public & Societal Benefit)	
종교 관련(Religion-Related)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상호 및 회원 혜택 (Mutual & Membership Benefit)	
기타(Unknown)	기타
	정치단체, 비즈니스연합, 전문가연합

2. ICNP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ISIC)를 기반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발한 분류 체계로, 2003년 UN의 국민계정체계 내 비영리기관 핸드북(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소개되면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ICNPO를 활용한 비영리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CNPO는 12개의 그룹과 30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며, '1 100'과 같은 형태로 앞의 숫자가 12개의 그룹을 나타내며 뒤의 세자리 숫자가 30개의 하위 그룹을 나타낸다.

표 3 ICNPO 분류

그룹	코드	하위 그룹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Culture and recreation)	1 100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s)
	1 200	스포츠(Sports)
	1 3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사교 클럽 (Other recreation and social clubs)
2. 교육 및 연구 (Education and research)	2 100	초등 및 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2 20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2 300	기타교육(Other education)
	2 400	연구(Research)
3. 건강(Health)	3 100	병원 및 재활(Hospitals and rehabilitation)
	3 200	요양원(Nursing homes)
	3 300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Mental health and crisis intervention)
	3 400	기타 건강 서비스(Other health services)
4.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4 100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services)
	4 200	긴급 및 구호(Emergency and relief)
	4 300	소득 지원 및 유지 (Income support and maintenance)
5. 환경(Environment)	5 100	환경(Environment)
	5 200	동물 보호(Animal protection)
6. 개발 및 주거 (Development and housing)	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 개발 (Economic, social and community development)
	6 200	주거(Housing)
	6 300	고용 및 훈련(Employment and training)

표 3 의 계속

그룹	코드	하위 그룹
7. 법률, 옹호 및 정치 (Law, advocacy and politics)	7 100	시민 및 옹호단체 (Civic and advocacy organizations)
	7 200	법률 및 법률 서비스 (Law and legal services)
	7 300	정치 단체(Political organizations)
8. 자선증개자 및 자원 봉사 촉진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8 100	보조금 지원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8 200	기타 자선증개자 및 자원 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9. 국제(International)	9 100	국제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10. 종교(Religion)	10 100	종교 단체 및 협회 (Religious congregations and associations)
11. 사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Busines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unions)	11 100	사업 협회(Business associations)
	11 200	전문가 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11 300	노동조합(Labour unions)
12. 기타(Not elsewhere classified)	12 100	기타(Not elsewhere classified)

출처: UN,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23.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ICNPO는 우리나라 국세청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학분야를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

표 4 ICNPO 하위 그룹과 국세청 공시 세부 사업 비교

코드	ICNPO 하위 그룹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1 100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s)	문화예술
1 200	스포츠(Sports)	스포츠
1 3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사교 클럽 (Other recreation and social clubs)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클럽
2 100	초등 및 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초등 및 중등교육 영유아보육

표 4 의 계속

코드	ICNPO 하위 그룹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2 20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2 300	기타교육(Other education)	기타교육
2 400	연구(Research)	학술연구
3 100	병원 및 재활 (Hospitals and rehabilitation)	병원 및 재활시설
3 200	요양원(Nursing homes)	요양원
3 300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Mental health and crisis intervention)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3 400	기타 건강 서비스 (Other health services)	기타보건서비스
4 100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services)	사회복지
4 200	긴급 및 구호(Emergency and relief)	긴급상황 및 구호
4 300	소득 지원 및 유지 (Income support and maintenance)	소득 지원 및 보존
5 100	환경(Environment)	환경
5 200	동물 보호(Animal protection)	동물
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 개발 (Economic, social and community development)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6 200	주거(Housing)	주거
6 300	고용 및 훈련 (Employment and training)	고용 및 훈련
7 100	시민 및 옹호단체 (Civic and advocacy organizations)	시민 및 옹호단체
7 200	법률 및 법률 서비스 (Law and legal services)	법률 및 법률서비스
7 300	정치단체(Political organizations)	정치단체
8 100	보조금 지원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배분(지원) 재단

표 4 의 계속

코드	ICNPO 하위 그룹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8 20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 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봉사증진 모금활동
9 100	국제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국제활동
10 100	종교 단체 및 협회 (Religious congregations and associations)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11 100	사업 협회(Business associations)	비즈니스연합
11 200	전문가 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전문가연합
11 300	노동조합(Labour unions)	노동조합
12 100	기타(Not elsewhere classified)	기타
		장학

ICNPO는 2018년에 기존 비영리기관에 제3섹터 및 사회적 경제 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ICNPO/TSO(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and Third Sector Organizations)로 개편되었다. ICNPO/TSO는 12개의 섹션, 50개의 그룹, 97개의 하위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존 ICNPO의 12개 그룹을 ICNPO/TSO의 12개 섹션으로 변경하였고 ICNPO의 30개 하위 그룹을 ICNPO/TSO의 50개의 그룹으로 세분화 하고 97개의 하위 그룹을 추가하였다. 97개의 하위 그룹 중 상위에 별도의 그룹이 존재하는 하위 그룹은 65개이고,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역할을 같이 하는 32개가 존재한다.

ICNPO/TSO의 분류체계는 ‘A11’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앞의 알파벳은 12개 섹션을 나타내며 뒤의 두 자리 숫자 중 십의 자리는 50개의 그룹, 일의 자리는 65개의 하위 그룹을 나타낸다.

표 5 ICNPO/TSO 분류

섹션	코드	그룹
A: 문화, 통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Culture, communication and recreation activities)	A10	문화와 예술(Culture and arts)
	A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Sports and recreation)
	A30	정보통신서비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A90	기타 문화와 예술 (Culture and arts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B: 교육 서비스 (Education services)	B10	유치원, 초등 및 중등교육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2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B30	기타교육(Other education)
	B90	기타 교육서비스 (Education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C: 인간 건강 서비스 (Human health services)	C10	외래 진료 서비스 (Ambulatory health services)
	C20	병원(Hospitals)
	C30	요양 및 주거 돌봄 서비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services)
D: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D10	개인 및 가족서비스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D20	어린이 보육 서비스(Child day-care services)
	D30	긴급 및 구호서비스 (Emergency and relief services)
	D40	직업 재활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barriers to employment)
	D90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표 5 의 계속

섹션	코드	그룹
E: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 활동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activities)	E10	천연자원 관리 및 보호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tection)
	E20	동물 건강 및 복지 활동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ivities)
	E90	기타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 활동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activities not elsewhere classified)
F: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주거활동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ousing activities)	F10	주택 및 기반시설 건설 (Construction of housing and infrastructure)
	F20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활동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F30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 (Housing management and maintenance)
	F40	설비 및 폐기물 관리 (Utilities and waste management)
	F50	원주민 자치 (Indigenous people self-governance)
	F90	기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및 주거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ousing not elsewhere classified)
G: 시민, 옹호, 정치 및 국제활동 (Civic, advocac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G10	시민, 옹호 및 사회 참여 활동 (Civic, advo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G20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ies)
	G30	국제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G90	기타 시민, 옹호, 정치 및 국제활동 (Civic, advocac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not elsewhere classified)
H: 자선중개자 및 자원 봉사 촉진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H10	보조금 지급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표 5 의 계속

섹션	코드	그룹
	H9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 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I: 종교 단체 및 협회 (Religious congregations and associations)	I10	종교적 집회(Religious congregations)
	I90	기타 종교 단체(Other religious associations)
J: 기업, 전문가 및 노동조직 (Business, professional and labour organizations)	J10	기업 및 고용주 협회 (Business and employers associations)
	J20	전문가 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J30	노동조합(Labour unions)
	J90	기타 기업, 전문가 및 노동조직 (Business, professional and labour organizations not elsewhere classified)
K: 전문, 과학, 회계 및 행정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accounting and administrative services)	K10	과학 연구 및 테스트 서비스 (Scientific research and testing services)
	K20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K30	경영 및 행정 서비스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K90	기타 전문, 과학, 행정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and administrative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
L: 기타 활동 (Other activities)	L10	농업, 임업, 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L20	제조업(Manufacturing)
	L30	숙박, 케이터링, 식품 서비스 (Accommodation, catering and food services)
	L40	상업 활동(Trade activities)
	L50	운송 및 보관활동 (Transportation and storage activities)
	L60	금융 및 보험서비스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L70	부동산 활동(Real estate activities)

표 5 의 계속

섹션	코드	그룹
	L80	가계의 무급활동 (Unpaid activities of households)
	L90	기타 활동 (Activities not elsewhere classified)

출처: UN, "Satellite Account on Non-profit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Volunteer Work," 2018.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ICNPO의 12개 그룹과 ICNPO/TSO의 12개 섹션은 거의 유사한데 ICNPO의 법률, 옹호 및 정치와 국제 그룹이 ICNPO/TSO의 시민, 옹호, 정치 및 국제활동 섹션으로 통합되었으며, ICNPO/TSO에 전문, 과학, 회계 및 행정 서비스 섹션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표 6 ICNPO 그룹과 ICNPO/TSO 섹션 비교

ICNPO 그룹	ICNPO/TSO 섹션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Culture and recreation)	A: 문화, 통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Culture, communication and recreation activities)
2. 교육 및 연구 (Education and research)	B: 교육 서비스 (Education services)
3. 건강 (Health)	C: 인간 건강 서비스 (Human health services)
4.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D: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5. 환경 (Environment)	E: 환경 보호 및 동물 복지 활동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activities)
6. 개발 및 주거 (Development and housing)	F: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주거활동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ousing activities)
7. 법률, 옹호 및 정치 (Law, advocacy and politics)	G: 시민, 옹호, 정치 및 국제활동 (Civic, advocacy, political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9. 국제 (International)	

표 6 의 계속

ICNPO 그룹	ICNPO/TSO 섹션
8. 자선증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H: 자선증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10. 종교 (Religion)	I: 종교 단체 및 협회 (Religious congregations and associations)
11. 사업 및 전문가협회, 노동조합 (Busines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unions)	J: 기업, 전문가 및 노동조직 (Business, professional and labour organizations)
	K: 전문, 과학, 회계 및 행정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accounting and administrative services)
12. 기타 (Not elsewhere classified)	L: 기타 활동 (Other activities)

우리나라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과 기존 ICNPO 분류체계는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ICNPO/TSO의 분류체계는 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국세청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에 없는 항목도 존재한다.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과 ICNPO 및 ICNPO/TSO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과 ICNPO 하위 그룹 및 ICNPO/TSO 그룹 비교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ICNPO 하위 그룹		ICNPO/TSO 그룹	
	코드	설명	코드	설명
문화예술	1 100	문화와 예술 (Culture and arts)	A10	문화와 예술 (Culture and arts)
스포츠	1 200	스포츠 (Sports)	A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Sports and recreation)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클럽	1 3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사교 클럽 (Other recreation and social clubs)	A29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Sports and recreation not elsewhere classified)
초등 및 중등교육	2 100	초등 및 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10	유치원, 초등 및 중등교육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2 20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B20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표 7 의 계속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ICNPO 하위 그룹		ICNPO/TSO 그룹	
	코드	설명	코드	설명
기타교육	2 300	기타교육(Other education)	B30	기타교육(Other education)
학술연구	2 400	연구 (Research)	K10	과학 연구 및 테스트 서비스 (Scientific research and testing services)
장학				
영유아보육	2 100	초등 및 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10	유치원, 초등 및 중등교육 (Pre-primar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병원 및 재활시설	3 100	병원 및 재활 (Hospitals and rehabilitation)	C20	병원(Hospitals)
요양원	3 200	요양원 (Nursing homes)	C30	요양 및 주거 돌봄 서비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services)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3 300	정신 건강 및 위기 개입 (Mental health and crisis intervention)	C22	전문, 정신 및 약물 남용 병원 (Specialty, psychiatric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기타보건서비스	3 400	기타 건강 서비스 (Other health services)	C10	외래 진료 서비스 (Ambulatory health services)
사회복지	4 100	사회복지 서비스 (Social services)	D10	개인 및 가족서비스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긴급상황 및 구호	4 200	긴급 및 구호 (Emergency and relief)	D30	긴급 및 구호서비스 (Emergency and relief services)
소득 지원 및 보존	4 300	소득 지원 및 유지 (Income support and maintenance)	D30	긴급 및 구호서비스 (Emergency and relief services)
환경	5 100	환경 (Environment)	E10	천연자원 관리 및 보호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tection)

표 7 의 계속

국제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ICNPO 하위 그룹		ICNPO/TSO 그룹	
	코드	설명	코드	설명
동물	5 200	동물 보호 (Animal protection)	E20	동물 건강 및 복지 활동 (Animal health and welfare activities)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6 100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 개발 (Economic, social and community development)	F20	지역사회 및 경제 개발 활동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주거	6 200	주거 (Housing)	F10	주택 및 기반시설 건설 (Construction of housing and infrastructure)
고용 및 훈련	6 300	고용 및 훈련 (Employment and training)	D40	직업 재활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barriers to employment)
시민 및 옹호단체	7 100	시민 및 옹호 단체 (Civic and advocacy organizations)	G10	시민, 옹호 및 사회 참여 활동 (Civic, advo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법률 및 법률서비스	7 200	법률 및 법률 서비스 (Law and legal services)	K21	법률 및 중재 서비스 (Legal and mediation services)
정치단체	7 300	정치단체 (Political organizations)	G20	정치활동 (Political activities)
배분(지원) 재단	8 100	보조금 지원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H10	보조금 지급 재단 (Grant-making foundations)
봉사증진	8 20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H9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모금활동	8 20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H90	기타 자선중개자 및 자원봉사 촉진 (Other philanthropic intermediaries and voluntarism promotion)
국제활동	9 100	국제활동 (International activities)	G30	국제활동 (International activities)

표 7 의 계속

국세청 공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	ICNPO 하위 그룹		ICNPO/TSO 그룹	
	코드	설명	코드	설명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10 100	종교 단체 및 협회 (Religious congregations and associations)	I10	종교적 집회 (Religious congregations)
비즈니스연합	11 100	사업 협회 (Business associations)	J10	기업 및 고용주 협회 (Business and employers associations)
전문가연합	11 200	전문가 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s)	J20	전문가 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s)
노동조합	11 300	노동조합(Labour unions)	J30	노동조합(Labour unions)
기타	12 100	기타 (Not elsewhere classified)	L	기타 활동 (Other activities)

국가회계
재지통계



세미나



- 「IFRS 18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세미나
-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01 「IFRS 18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세미나

주 제: IFRS 18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4:00~15:00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층 중회의실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FRS 18 도입 전문가 세미나(2025. 12. 17.(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층 중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에 대비하여 회계기준 제정이 공공기관 재무제표와 경영평가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2025년 12월 17일(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IFRS 18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회계법인 노영일 이사가 IFRS 18 기준서의 제정 배경 및 진행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현행 IAS 1과 비교한 IFRS 18의 주요 변화와 예상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손익계산서 표시 체계의 변화, 성과 측정 지표 구조 개편 등 IFRS 18 도입에 따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연구센터도 참석하여 IFRS 18 도입에 따라 영업이익 등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변경될 경우,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센터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IFRS 18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공공부문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회계기준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제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02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결과 보고

가. 개요

주	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시에서 활용으로
일	시: 2025년 11월 5일(수) 14:00~18:00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팰트홀(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프
로
그
램

[개회]

(개회사)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 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조연설]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 Steffi Schuster, 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

[주제발표]

(세션1) 정부 정책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

- 좌장: 강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 발표: 합리적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패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세션2) 중앙·지방정부 정부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 좌장: 박정수 이화여대 부총장
- 발표: 재정데이터의 일관성과 분석
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이코노미스트
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이코노미스트
- 패널: Andrew Blazey OECD 공공거버넌스국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라운드테이블]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5일(수), 프레지던트 호텔 모잠트홀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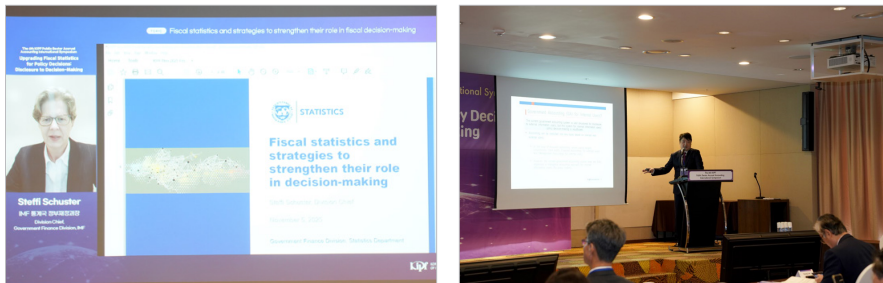
지난 202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여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 이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로 진행되었으며, 국제기구, 학계, 유관기관 및 회계·재정 전문가 등 총 151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올해는 심포지엄 주제를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사에서 활용으로」로 선정하여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주의 재정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관리회계와 재정정보 통합체계 도입을 통해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되어 Steffi Schuster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국 정부재정 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 및 축사 〉



〈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

먼저 기조연설에서는 Steffi Schuster 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 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GFS) 도입을 통해 재정데이터의 표준화와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가 간 재정통계 범위의 차이와 내부 시스템 및 역량 부족으로 정책적 활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정보와 관리시스템 간 연계 강화와 국제기준 도입 효과 및 재정통계 활용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는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등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합리적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재정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통계 산출 체계로서 ‘국가관리회계’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어서 국가관리회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의무지출 등 미래 지출과 상속세 등 미래 수입을 현가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는 경직된 기준보다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주로 내부 이용자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뒤이어 세션 2에서는 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재정데이터의 일관성과 분석’을 주제로 GFS 통합 프레임워크 활용 방안과 공공부문 대차대조표(PSBS)를 활용한 재정분석 사례를 공유하였다. GFS 통합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경우 대차대조표 분석을 비롯해 국가·기간별 정책성과 비교와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등 다양한 재정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PSBS 기준으로는 공기업 부채와 연금부채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위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이 국제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Andrew Blazey OECD 공공거버넌스국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및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재정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정보의 품질·적시성·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도 높은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회계·재정통계·정책 분석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재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정보 전달과 시스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재정데이터의 품질과 적시성 강화를 위해 예산·재무회계·정부재정통계(GFS)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통합 계정과목 체계 기반의 공공부문 재정데이터 구축, 실시간 및 예측 기반 데이터 체계 도입, 거래 단계의 원장 데이터 가공·분석,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강화, GFS 기반 패널 데이터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회계정보는 경제모형과 결합하여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효과 추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거시적 총량관리와 기능별 재정 배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한편 공공부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 라운드테이블 〉



〈 회의장 〉

웹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QNhmTbGSwco&t=14543s>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SECYuOzYajc&t=3023s>

나. 발표자료 주요 내용(요약)

[기조연설]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발제자 Steffi Schuster,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

» 주요 발표 내용

Steffi Schuster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은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GFS) 도입의 효과와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도전과제 및 2014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의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정부재정통계의 개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의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1986)」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GFSM 2001」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도입을 적극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 대부분은 정부재정통계(이하 ‘GFS’)를 산출하여 공식 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GFS는 표준화된 체계를 통해 재정통계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포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 활동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지원한다. GFS의 주요 산출물에는 수익, 지출, 재정수지,¹⁾ 재정상태표(정부순자산), 부채, 정부기능별분류(COFOG) 등이 포함된다.

GFS가 정책 수립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안정성과 성장 협약에 따른 재정준칙과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정부 관련 지표를 들 수 있다. EU는 재정준칙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UN SDGs의 정부 관련 지표에는 GDP 대비 총수익 비율(SDG 지표 17.1.1), GDP 대비 조세수익 비율(SDG 지표 17.1.2), 총지출 대비 필수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SDG 지표 1.a.2) 등이 포함된다.

1)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 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도입의 효과

먼저 GFS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정책결정자는 이를 활용하여 국가 간 및 부문 간 재정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GFS는 포괄적인 재정 분석을 지원하여 정부의 순자산 등 정부 전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저량과 유량의 연계를 기반으로 단기적인 재정운영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GFS는 부처, 의회, 시장,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구축을 지원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논의를 촉진한다. 아울러 정부기능별분류(COFOG) 등 공통의 분석 체계를 활용하여 시간 및 국가별로 교육, 보건, 기후 등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어, 국가 간 재정 지속가능성과 지출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GFS는 정책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지원한다. 재정승수, 공공투자 효과 및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등을 위한 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재정위험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FS는 국제 비교와 감시를 지원한다. GFS를 산출·제출하는 국가는 기준 준수 여부와 재정 성과에 대해 국제기구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재정 운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 GFS 수집 및 분석 관련 도전과제

(1) 국가 간 분석 관련 도전과제

국가 간 재정통계 비교·분석의 한계로는 국가별 데이터 범위의 불완전성과 회계 관행 및 평가 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먼저 국가별로 포괄하는 정부 범위가 상이하고, 예산 외 계정이나 대외원조 등 일부 거래가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국가 간 비교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일부 국가는 국제 기준이 아닌 자국의 회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의 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자산과 거래의 평가 기준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여, 시장가치 대신 명목가치나 역사적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 간 재정데이터의 직접적인 비교에 제약이 발생한다.

(2) 국가 차원의 도전과제

국가 차원에서 재정통계 활용이 미흡한 원인으로는 재정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활용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의 부재, 그리고 관련 역량과 자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과 전문 인력 및 기술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데이터 공유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장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통합재정 정보시스템(IFMIS)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재정정책 분석 역량이 미흡하며, 재정 투명성 제고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정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데이터의 산출 단계부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보시스템과 분석·보고 수단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데이터 관리 기관 간에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계정과목 등 분류체계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제도적·조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GFSM 2014 개정 작업

GFSM 2014의 개정 작업은 국민계정체계(SNA)와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지침(BPM) 등 다른 통계 매뉴얼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추가 지침 제공과 명확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개정 작업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GFS 작성 관련 이슈, 채무 및 금융 분야, 환경 관련 주제, 재정분석 및 의사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과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GFSM 2014 개정 관련 신규 연구 과제

GFS 작성 이슈	채무 및 금융 관련 주제	환경 관련 주제	재정분석 및 의사소통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의 범위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의 회계처리	천연자원의 회계처리와 GFS에서의 활용	공기업 데이터 작성 및 분석 관련 방법론적 지침
민관 파트너십 (PPPs)의 회계처리	채무 평가 이슈	인프라 자산의 기록 및 평가	재정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GFS 활용
사회보장제도	정부와 금융 공기업 간 범위	천연자원 관련 GFS 유량의 표시	GFS와 사용자 간 의사소통
정부의 연금 채무 인수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기록	기후 유지·유해 보조금 보조금과 기타 이전	GFS와 IPSAS 간의 관계
종업원 복리후생 - 확정급여제도	채무 인수 및 타인 대신 채무 상환		대차대조표 분석
자본이전과 경상이전 간의 범위	공기업의 자본		GFS 메타데이터의 표시 체계
예산외 단위의 정의 및 하위분류	대출의 평가 및 인식		조세지출, 과세이연 및 기타 유사 인센티브
정부 혹은 공공 비생명보험 제도	IMF 및 기타 지역·국제기구의 저량 및 관련 유량		공기업의 이익 잉여금 및 재정 분석에 미치는 영향
zakat ¹⁾ 의 회계처리	국부펀드(SWFs)의 거래 처리		
토착 정부 회계처리	민영화의 회계처리		

주: 1) zakat는 이슬람 신앙에 따른 의무적인 기부로 단순한 기부와는 상이함

● 결론

GFS 등 국제기준은 재정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분석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재정통계를 정책 수립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분석·보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데이터와 관리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결정자에게 국제기준 도입의 실질적 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재정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식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제발표] (세션 1) 합리적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구축 및 활용 방안

발제자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주요 발표 내용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합리적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가관리회계의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국가관리회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 사례 및 국가관리회계 구축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논의 배경

현재 국가회계는 대외 공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책결정자 등 내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회계적 접근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발생주의에 기반한 자산과 부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정·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래의 재정지출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를 발생주의 기반의 잠재적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부채 인식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공시 중심의 회계제도하에서 작성되는 재정통계에도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 국가관리회계 개념 도입

재정 의사결정자 또는 해당 의사결정에 조언을 제시해야 하는 내부 이용자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회계로서 국가관리회계의 개념을 제안한다. 국가관리회계의 핵심 요소는 산출되는 정보가 내부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높은 통계자료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발생주의를 포함한 기본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국가관리회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회보장 관련 지출

먼저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의무적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출을 제도 설계 당시의 가정이 아닌, 변화된 인구·경제 여건을 반영한 가정하에서 재추계할 필요가 있어 부채 규모 추정의 가치가 높다.

(2)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정부의 지출의무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간 지속된다면, 발생주의 관점에서 장래 지출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같이 향후 의무적 지출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은 법률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조정될 수 있으나, 제도의 성격상 대규모 삭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누적 지급액을 고려하여 이를 부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잠재세수

한편 미래 재원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여력과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 증가 가능성 등 향후 세수 확대 요인을 합리적인 가정하에 추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기존 추계 기반 부채 예시

기존에 추계된 부채의 사례로는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총당부채는 현행 국가회계체계상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결산보고서의 부록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재정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참고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신규 방법론 적용 사례

신규 방법론의 적용 사례로는 가상적 민간이전 재정지출 정책과 상속세 수입 추정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상적 민간이전 재정지출 정책의 예로 2022년부터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50년간 소요되는 재원을 산출할 수 있다. 단순 합계 기준으로는 총 2,37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

정되나, 이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물가연동 여부에 따라 필요 자원 규모는 약 561조원에서 88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대 간 부의 이전 확대에 따라 상속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상속세 수입 규모인 약 10조원이 도출되는 현실적인 자산 분포 파라미터를 역산한 후 이를 적용하여 미래 상속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상속세 수입은 2030년 14.05조원, 2040년 22.57조원, 2050년 34.7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정책 제언 및 결론

국가관리회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외 공시에 사용되는 경직된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정을 갖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즉 지출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출 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사회보장정책과 의무지출은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재정수입의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화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나 부적절한 국가 간 비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의 산출물은 재정당국과 정책연구기관 등 내부 이용자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효과적인 재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학·재정학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회계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공시 중심의 국가회계체계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성격을 보완적으로 도입한다면, 향후 보다 합리적인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션 1 토론] 국가관리회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관리회계정보는 기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원칙과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정보의 오용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를 갖추고 경제모형과의 결합을 통해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효과 추정에 활용될 필요

올바른 재정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한 회계정보가 필수적이며, 내부 구성원 간 정확한 국가관리회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재정 관련 의사결정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관리회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달리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친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회계의 원칙과 방법론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 자료가 분석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탄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가관리회계가 제공하는 재정 정보와 경제모형을 결합함으로써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치·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관리회계를 통한 정보 생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해당 정보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추어 볼 때 부차적인 문제에 그친다. 다만 분석 결과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보의 오용·남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 검증·관리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재무제표 중심의 정부회계 활용을 넘어 원장 수준의 기초데이터를 정책 맞춤형 정보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한편, 정부회계정보를 거시적 총량관리와 기능별 재정 배분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재무제표 중심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원장 수준의 개별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집단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듯이 정부 역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기금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회계 정보는 채무 관리, 자산 활용 및 지출 구조 결정 등 다양한 정책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사업 단위의 미시적 회계정보 활용에 그치지 않고, 거시적 총량관리와 기능별 재정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무지출, 투자지출, 복지지출, 산업지원 지출 등 기능별 재정 배분과 거시적 총량관리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자산의 매각 또는 보존 여부,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의 구분, 환경가치의 재정적 반영 등과 관련한 경제·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발표] (세션 2) 재정데이터의 일관성과 분석

발제자

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 주요 발표 내용

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재정데이터의 일관성과 분석'을 주제로, 재정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GFS 통합 프레임워크 활용 방안과 공공부문 대차대조표(PSBS)를 활용한 재정분석 사례를 공유하였다.

1. 재정데이터의 일관성: GFS 통합 프레임워크의 역할

● 재정사이클

재정정책의 목표를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체계인 재정사이클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예산집행보고서·잠정결산·특수목적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작성 ▲감사 ▲재정통계 산출 및 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구성된다.

● GFSM의 제도적 범위

GFSM은 거주성, 기관단위, 통제 여부, 시장·비시장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그 하위부문²⁾을 구분한다. 국제 비교에서는 일반정부 부문이 핵심 분석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기업 부문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GFS 데이터 산출의 목적은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 등 경제적 실질의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으므로 국가별 예산집행자료나 회계자료와는 범위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GFS 통합 프레임워크 활용 분석

GFS 통합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대차대조표 분석을 비롯하여 자료 품질 및 시계열 일관성 검증, 대규모 사건에 대한 일관된 통계 처리, 국가 간 재정지표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GFS 통합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재정분석을 지원하는데, 특히 재정정책 기초가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의 국내외 금융자산 활용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 범위 설정, 국가 간 및 기간별 정책성과 비교,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정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계정, 국제수지 및 금융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공공부문 대차대조표(PSBS)를 활용한 재정정책 분석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Public Sector Balance Sheet, PSBS)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하나의 포괄적인 재정상태표로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표면적인 국가채무 지표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기업 부채와 연금부채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대차대조표(이하, 'PSBS')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보다 포괄적인 재정위험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 55개국의 PSBS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241%, 총부채는 GDP 대비 22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116%, 연금부채는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 일반정부와 비금융·금융공기업

국가의 재정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부채 지표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활용 분석 사례

PSBS를 기반으로 대차대조표의 건전성과 금융시장 간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부채, 부채 및 자산, 순자산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부채는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반면, 자산과 순자산은 이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할수록 이자비용이 낮아지고,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력 또한 높아짐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의 PSBS를 합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금융 공기업과 정부 금융자산의 자산운용 성과를 국가 간 분포 기준 제25백분위수에서 75백분위수 순으로 개선할 경우, 매년 GDP 대비 최대 3% 수준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새로운 증세나 추가 차입 없이도 공공부문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공기업 부문 규모가 큰 한국의 경우 금융자산 운용 성과 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 2 토론] 중앙·지방정부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논의

▶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 재정데이터 품질·적시성 개선과 대차대조표 지표 활용의 중요성 및 양질의 재정 데이터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정책 효과성 제고

현재 재정데이터는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지연과 회계기준의 상이성 등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차년도 예산이 당해 연도에 편성되는 반면, 결산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시의성 있는 재정운용과 정책 대응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산출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수의 국가들은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차대조표 지표를 포함하여 재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자본적 지출 관

런 데이터를 재정통계에 반영함으로써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빈곤 감축 등 주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활용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데이터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 통합 계정과목 체계 기반의 공공부문 재정데이터 구축과 순자산 중심 대차대조표 활용을 통한 재정 의사결정의 필요성

정부회계는 데이터의 생산·취합·활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개별 재정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재무회계, 정부재정통계(GFS)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계정과목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계정과목 체계는 재정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중앙정부 수준을 넘어 기금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재정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며, 필요한 시점에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차대조표나 GFS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데이터 관리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 정보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재정 관리는 단순한 채무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순자산 중심의 재정관리 접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대차대조표는 재정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기반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대차대조표 검토 결과를 지출 검토와 연계하여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평가한 후, 필수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청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정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

▶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 재정 문해율 제고를 위한 대중 친화적 정보 제공과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OECD는 재정 데이터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재정 문해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응답자의 약 75%가 재무 관련 도표나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 정보는 보다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약 75%는 재무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태에 있으며, 신규 데이터 표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정보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데이터 표준화의 적용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앙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보고체계 강화와 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으로 인해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무 및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회계원칙에 기반한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정보의 적시성 확보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신속한 정보의 수집·가공·공표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가 권력화 되면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도덕적 당위의 제시에 그치기보다는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의 자동 연계·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ICT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재정데이터 적시성 강화와 GFS 기반 패널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재정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의 적시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구축, 예측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산출 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시차를 최소화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과 연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나아가 GFS 기반의 패널 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가 실제 분석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 활동의 특성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계정과목 체계 마련과 원장 기반 재정정보 활용·분석을 통한 정부회계 발전의 필요성

정부회계는 단순한 기록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과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회계정보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의사결정은 총량 관리, 자원 배분, 미시적 사업 관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산업정책·복지정책·인구정책과 같이 배분 중심의 정책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회계정보 체계가 요구된다.

한편 재무제표는 요약된 결과 정보에 불과하므로 정책 분석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 단계에서 기록되는 원장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 중심의 회계계정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활동의 특성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계정과목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적 활용 가능 자산'과 같은 계정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매각 가능 자산의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자산 관리의 체계화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회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지속가능성 분석과 장기 재정관리**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재정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부채 지표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장기재정 및 서비스 지속가능성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들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권고실무지침(RPG 1)에 따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 유지 관점을 반영한 장기 재정 전망을 추진할 경우, 회계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 가치 또한 한층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
재지통계